

研究報告 92-4

日本の 流通環境과 法制分析
— 都・小賣業關係法制를 중심으로 —

研究者：崔 星 根(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生産方式과 消費形態가 급속히 변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상품의 販賣競爭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生産과 消費를 연결시켜 주는 流通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流通環境의 변화에 적응한 流通構造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流通市場開放化 추세에 맞추어 수년내 完全개방을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國內流通市場開放計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통시장의 충격완화방안 및 금후 보다 확대될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流通環境下에서 우리나라의 流通構造는 規模의 零細性, 流通經路의 多樣複雜性, 少額資本 및 資本의 前近代性, 關係制度의 未備 및 商去來의 不當한 慣行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流通構造의 體質強化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결방안 중 상당부분은 法制度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 특히 流通構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한 關係法制는 이러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整備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報告書는 이러한 배경하에 關係法制의 整備를 통한 유통구조의 체질강화 및 국내유통시장의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外國法制研究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流通環境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 經濟狀況을 한 발 앞서 겪었던 日本의 流通關係法制를 都·小賣業關係法制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와 함께 최근 美·日貿易摩擦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진행되었던 美·日構造協議 중 流通部分에 관한 협의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

다.

日本の 流通關係法制에 관한 연구는 流通構造의 변혁에 대한 各계의 요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現시점에서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를 改善・補完함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企業이 日本의 流通市場에 진출함에 있어 法制資料로써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美・日構造協議에 관한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美國 등 先進國과의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經濟構造調整에 관한 協議를 대비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報告書가 關係部處, 研究機關, 學界, 業界의 流通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參考資料로 십분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한 研究者 및 자료제공・자문 등 협조를 아끼지 않은 關係者 여러분께 심심한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1992年 9月

韓 國 法 制 研 究 院
院 長 李 世 薰

目 次

第1章 序 論	9
第2章 流通關係法制的 基本構造	13
I. 流通의 概念 및 機能	15
1. 流通의 概念	15
2. 流通의 機能	17
II.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	18
1. 序 說	18
2. 流通活動의 自由保障—流通活動의 形式的 自由	19
3. 流通活動과 獨占規制—流通活動의 實質的 自由	20
4. 流通活動과 消費者保護	22
5. 都·小賣業 活動의 調整 및 振興	23
6. 流通活動과 商品의 特性	24
III.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	24
第3章 日本의 流通構造 및 關係法制	29
I. 日本의 流通構造의 現狀	31
1. 日本 流通産業의 變遷	31
2. 小賣業의 動向	32
3. 都賣業의 動向	33

6 目次

4. 商店街 등의 動向	34
5. 物流의 動向	35
II. 日本 流通構造의 特色	36
1. 流通業의 零細·過多性	37
2. 多段階性	38
3. 流通系列化	40
4. 去來慣行	40
III. 日本의 流通關係法制	43
1. 日本의 流通關係法制의 體系	43
2. 日本의 流通政策의 變化	47
3. 都·小賣業關係法制	49
第4章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	51
I. 都賣市場法	53
1. 序說	53
2. 都賣市場法의 成立背景	53
3. 都賣市場法의 主要內容	56
4. 都賣市場外 流通의 問題點	63
II. 大規模小賣店鋪法	64
1. 序說	64
2. 大規模小賣店鋪法의 成立背景	65
3. 大規模小賣店鋪法의 主要內容	68
4. 大規模小賣店鋪法의 問題點	72
III.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74
1. 序說	74

2.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成立背景	74
3.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主要內容	76
4.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問題點	77
IV. 中小小賣商業振興法	77
1. 序 說	77
2.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成立背景	78
3.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主要內容	79
4.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問題點	81
V. 商店街振興組合法	81
1. 序 說	81
2. 商店街振興組合法의 成立背景	82
3. 商店街振興組合法의 主要內容	82
4. 商店街振興組合法의 問題點	84

第5章 美・日構造協議와 日本의 流通關係法制 89

I. 美・日構造協議의 概要	89
1. 美・日構造協議와 슈퍼 301조	89
2. 美・日構造協議의 背景	90
3. 交渉內容의 變化	91
II. 美・日構造協議 중 流通部門	94
1. 美・日構造協議에 따른 兩國의 措置	94
2. 流通部門과 關聯한 日本側의 措置	96
III. 美・日構造協議에 따른 大規模小賣店鋪法 改正	98
1. 概 要	98
2.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改正內容	99

第 6 章 結 論	101
1.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	103
2.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	103
3. 우리나라의 都·小賣業關係法制	104
4. 우리나라 流通產業의 問題點 및 都·小賣業關係法制的 整備方向	104
5. 國內流通市場開放의 現況 및 問題點	105
6. 國內流通市場開放과 美·日構造協議의 示唆點	105
參考文獻	107
資 料	111
○都賣市場法	113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136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146
○中小小賣商業振興法	156
○商店街振興組合法	164
○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 중 競爭政策關聯部分	182
○美·日構造問題協議 第 1 回 年次報告 중 競爭政策關聯部分	192

第1章
序 論

第1章 序 論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경제의 원동력은 企業을 포함한 商人의 營業活動인 바, 이들 商人은 생산·유통·소비라고 하는 경제단계에 있어서 生産 및 流通의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오늘날과 같이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급속히 변화하고 國內外的으로 競爭이 激化되고 있는 經濟與件下에서는 생산보다 오히려 流通의 機能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流通構造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流通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國家의 干涉 즉, 관계법제를 통한 규제 또는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流通産業을 평가할 때, 규모의 영세성·유통구조의 복잡다양성·소액자본 및 자본의 전근대성·관계제도의 미비·상거래의 부당한 관행 등이 특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유통기관기능의 근대화, 유통조성기능의 활성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중 상당부분은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데,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 특히 유통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한 關係法制는 이러한 해결방안을 수용할 만큼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都·小賣業 關係法制는 소비자보호, 유통구조 합리화 또는 유통산업 근대화 및 국내유통시장의 개방이란 측면에서 개선 및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流通環境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經濟狀況을 한발 앞서 겪었던 日本의 都·小賣業 關係法制는 우리나라의 都·小賣業 關係法制를 정비함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1989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미·일무

역마찰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美·日構造協議는 國內流通市場開放의 대응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報告書에서는 우선 流通關係法制의 體系化에 터잡아 우리나라 流通關係法制를 개관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都·小賣業關係法制를 중심으로 日本의 流通關係法制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를 整備함에 있어 하나의 모델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企業이 日本의 流通市場에 진출함에 있어 사전에 주지하여야 할 法制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일본간에 첨예하게 문제화되었던 美·日構造協議의 배경,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등을 流通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겪게 될 개연성이 높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貿易摩擦로 인한 經濟構造의 調整에 관한 協議에 대비하고자 한다.

第2章

流通關係法制的 基本構造

- I. 流通의 概念 및 機能/15
- II.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18
- III.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24

第2章 流通關係法制的 基本構造

I. 流通의 概念 및 機能

1. 流通의 概念

經濟活動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計劃的인 活動을 말하며, 經濟活動이 서로 緊密한 유대關係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테두리를 全體經濟라 한다. 그리고 그 범위가 국가단위로 한정되는 경우를 國民經濟라고 하는데 통상 全體經濟와 동일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全體經濟는 어떠한 統一的 意思에 의해서가 아니라 全體經濟의 단위이자 구성체를 이루는 수많은 個別的인 實體들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이러한 하나 하나의 실체를 個別經濟라 한다.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個別經濟의 핵심은 企業을 포함한 商人의 經營(營業)活動인 바, 企業經營活動(商人의 營業活動)에서는 生産과 流通이 中樞機能(line function)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附隨機能(staff function)을 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國內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제여건하에서는 生産보다 流通의 機能이 보다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¹⁾ 經濟社會에서 흔히 '消費없이는 企業이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곧 消費가 生産의 전제가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生産과 消費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流通인 것이다.

流通이란 廣義로는 商品·貨幣·有價證券 등이 經濟主體들 사이에서 社會的으로 移轉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贈與나 公課와 같은 一方的의 流通과 賣買 또는 交換과 같은 雙方的 流通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商品

1) 한희영, 「마케팅원론」, 다산출판사, 1991, 3~4면.

流通과 資本流通으로 대별된다. 협의로 流通이라 하는 경우에는 商品의 流通만을 의미한다. 商品流通은 다시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로 所有權이 移轉되는가, 아니면 物理的 移動만 있는가에 따라 전자를 商的流通, 후자를 物的流通 이른바 物流라고 한다. 즉 商的流通은 賣買去來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으로서 都賣·小賣·仲介·代理·貿易 등이 이에 속하며, 物的流通은 財貨의 輸送·保管 및 荷役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으로서 運送·倉庫·荷役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商品이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까지 이르는 수직적인 연결과정 또는 통로를 流通經路라 하고, 流通經路上 流通活動을 수행하는 個別的인 流通業體(商人)를 流通機關이라 하며, 流通機關이 구성요소가 되어 일정한 지역을 전제로 유형·무형의 商品이 社會的으로 유통되게끔 垂直的·水平的 分業關係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社會的 構造體를 流通構造 또는 流通機構라 한다.

經營學의 마케팅론에서는 협의의 개념정의를 채용하여 流通의 실체를 商品流通으로 파악하고 있다.²⁾ 또한 商品流通에 있어서도 生産者와 消費者간의 商品의 흐름과정에 있어 그 購買와 販賣에 직접 관련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商的流通 중, 都·小賣業者를 중심으로 한 中間商을 流通의 핵심으로 보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³⁾ 요컨대 마케팅론상 流通이란 곧 商品流通을 뜻하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商品流通 중에서도 商的流通, 다시 그 중에서도 中間商(都·小賣業者)의 流通活動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流通經路란 商品이 生産者로부터 中間商을 거쳐 消費者에 이르는 루트를 말하고, 流通機關이란 곧 消費者와 生産者 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中間商을 말하며, 流通構造란 都賣業

2) 현행법상 직접 '流通'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는 없다. 다만 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은 제2조에서 '流通産業'이란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운송·보관·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의하여 流通의 실체를 商品流通으로 파악하고 있다.

3) 中間商은 다시 당해 유통기관이 직접 상품의 所有權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에만 관여하는가에 따라 商人中間商(merchant middleman)과 代理中間商(agent middleman)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상인중간상의 두가지 주요집단이 都賣業者와 小賣業者이다; 송용섭, 「현대마케팅론」, 법문사, 1991, 365~366면.

者나 小賣業者와 같은 中間商群을 의미한다.⁴⁾

이하에서는 經營學上의 流通概念을 원용하여 商的 流通 중 中間商 즉, 都·小賣業者의 流通活動을 중심으로 流通 및 關係法制를 고찰한다.

2. 流通의 機能

일반적으로 流通의 機能이란 流通機關으로서의 中間商의 機能을 말하며 商業機能이라고도 한다. ‘中間商은 배제할 수 있어도 그들이 수행하는 機能은 없앨 수 없다’는 마케팅의 격언에서도 보듯이 누군가는 流通機能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中間商이 아니라면 生産者나 消費者라도 이를 직접 담당하여야 한다.

中間商의 機能을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본다면, 우선 本質的 機能은 交換機能인 販賣와 購買로서 商品集中, 需要·供給의 均衡 및 數量分散이 그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中間商은 여러 生産者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수집 또는 집중시켜서 많은 수량을 고객이 원하는 양으로 분할시키고 여러가지 구색으로 수집하여, 이러한 구색을 消費者나 기타 需要者에게 분산시키는 機能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集中·均衡 및 分散의 機能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바, 이들이 中間商 즉 都賣業者와 小賣業者인 것이다.⁵⁾ 이외에도 中間商은 附隨的 機能으로서 運送이나 保管과 같은 物流機能을 비롯하여 金融·危險負擔·市場情報 標準化 등과 같은 助成機能을 담당하고 있다.⁶⁾

한편 이와 같은 流通의 機能을 提高시키고 流通構造의 合理化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流通近代化’라고 한다.⁷⁾ 즉 流通近代化란 經濟構

4) 한희영, 전게서, 10~22면; 송용섭, 전게서, 357~366면 참조.

5) William J. Stanton, *Fundamentals of Marketing*, 7th ed. McGraw-Hill Inc., 1984, pp.317~318; 송용섭, 전게서, 367면 재인용.

6) 한희영, 전게서, 224면.

7) ‘近代化’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는 진부한 감이 있는데 ‘流通近代化’란 말은 본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영어로는 똑같지 않지만 ‘Vertical Marketing System’(VMS)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流通構造의 現代化計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①流通機能擔當者의 役割強化, ②市場秩序의 整備, ③物的流通의 合理化 및 ④流通環境의 整備이다.⁸⁾

II.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

1. 序說

流通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法規는 去來를 직접 규율하는 民·商法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통이 생산과 소비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운송·통신·금융·보험·창고·무역 등의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공해·폐기물처리 등의 관계법령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의 流通關係法規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流通概念에 좇아 유통 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법규에 한정하여 유통활동에 대한 法的 規制를 개관한다.

流通活動을 직접 규제하는 法規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⁹⁾

- ① 유통활동의 實質的 自由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正競爭을 촉진하는 법규
- ② 유통활동과 관련하여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법규
- ③ 소규모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법규
- ④ 商品의 特性을 고려한 법규 등

이들 유통관계법규는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8)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에 제정된 '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이 있다.

9) 伊從寬, "流通問題に對する法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80. 2, 28頁.

궁극적으로는 消費者의 權利確保를 중심으로 한 消費者의 利益保護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기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¹⁰⁾

2. 流通活動의 自由保障

— 流通活動의 形式的 自由

流通産業 그 중에서도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한 商品流通에 대하여 어떠한 法規制가 구성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資本主義社會의 法的 構造, 특히 현재의 고도로 발달한 資本主義社會—獨占資本主義經濟社會—의 법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資本主義의 經濟構造에 대응하는 法原則들은 대체로 流通産業을 둘러싼 法制度의 측면에서도 원칙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商品의 자유로운 流通과 그것에 수반되는 競爭의 조화가 i) 市場에 있어서 일정한 機能을 遂行하고, ii) 經濟社會를 維持함과 동시에 iii) 市場에 관계를 갖는 자의 權利擁護를 도모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¹⁾ 그러므로 각각의 當事者 또는 消費者에게 去來의 自由를 保障함으로써 流通市場의 自由를 確保하는 것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流通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市民法的 自由의 保障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流通活動에 관하여 法制度上 지지되는 基本原則은 所有權의 保障을 전제로 한 契約의 自由와 所有의 自由의 혼합이다. 특히 契約의 自由와 所有의 自由의 혼합은 經濟活動의 自由에 대응하는 法的活動의 自由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流通活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法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流通活動의 自由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구체적인 법적 형태인 契約自由의 原則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의 조치가 필요한 바, 契約이 자유

10) 正田 彬, “流通産業に對する法規制の概要”, 「流通産業關係法概說」, 同文館, 1974, 12~13頁 參照.

11) 正田 彬, 前掲論文, 2頁.

로이 각각의 經濟的 目的과 합치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유로이 체결된 契約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流通活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계약의 내용이 대등한 거래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등이 民·商法 기타 特別法에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詐欺, 錯誤, 強迫 등에 의하여 契約이 체결된 경우에는 無效 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하고 契約自由의 原則이 그 실질을 잃은 경우에는 債務不履行으로서 履行을 強制하거나 損害를 賠償시키는 등의 法制度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예이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法原則은 당연히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資本主義社會가 전개됨에 따라 성립하여온 새로운 현상 즉, 經濟活動의 自由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契約의 自由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새로운 法制度가 요구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그 실체를 잃고 일방에게는 自由를, 타방에게는 不自由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사태를 전제로 한 法制度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¹²⁾

3. 流通活動과 獨占規制

— 流通活動의 實質的 自由

資本主義社會가 발달함에 따라 資本의 集中이 진행되고 大企業이 성립

12)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1, 46~49면 참조; 正田 彬, 前掲論文, 2~4頁 參照.

하게 되는 것은 競爭上 필연적인 결과이다. 流通產業의 경우도 물론 예외는 아니며 流通部門에 있어서 大企業이 성립함과 동시에 流通產業과 직접 관련을 갖는 生産業者도 大企業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去來力 또는 競爭力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去來가 어떠한 형태로든 競爭沮害 또는 競爭制限을 매개로 하여서는 대등한 형태로 행하여 질 수 없으며, 또 契約의 自由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當事者에게 實質的인 經濟活動의 自由를 보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여 獨占資本主義 단계에 고유한 法制度가 나타나게 된다.

競爭秩序의 維持를 목적으로 獨占規制法을 중심으로 한 經濟法制가 출현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經濟法制에 의하여 競爭秩序가 維持된다는 것은 競爭을 沮害하거나 競爭을 制限함으로써 去來上 支配的인 힘을 갖는 일부 大企業에 대하여 그 힘의 형성 및 행사를 沮止 또는 制限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去來活動의 自由를 전제로 한 競爭社會의 具體化를 의도한 것이다. 競爭秩序의 維持는 사업자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獨占規制法을 중심으로 한 經濟法制는 流通產業과 관련하여서는 流通活動의 自由를 실질적으로 保障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經濟法制는 구체적인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힘·지위 여하에 따라서는 形式的인 流通活動의 自由와 實質的인 그것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去來主體에 대하여 等質的으로 實質的인 流通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流通產業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資本主義社會를 지지하는 原則的인 制度—市民法的 制度—와 함께 一般的인 制度로서 競爭秩序維持를 위한 制度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市場에 있어서 支配力의 形成을 저지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去來上의 地位의 不當利用이 주로 문제된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①市場支配力의 形成沮止, ②구속적인 不公正한 去來方法의 禁止, ③유인적인 不公正한 方法의 禁止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할 수 있다.¹³⁾

4. 流通活動과 消費者保護

流通産業은 특히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본다면 去來의 相對方으로서 一般消費者가 등장하게 된다. 事業者間的 商品去來와는 달리 消費者가 去來의 相對方이 되는 경우에는 去來主體로서의 消費者의 特殊性이 去來秩序의 形成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去來主體로서 등장하는 消費者는 궁극적으로 약한 지위에 서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消費者를 相對方으로 하는 去來는 特殊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事業者는 商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商品을 판단할 수 있는데 대하여 消費者는 상품 자체를 판단할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에서, 事業者에 의한 표시에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이는 消費者의 去來上의 地位의 從屬性은 表示·廣告에 대한 法的規制 혹은 品質保證·計量과 관련한 法制度를 출현케 한다. 消費者가 去來의 客體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表示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再販賣價格의 維持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 消費者의 人間적 약점을 자극하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꾀하는 선전·광고에 의하여 품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서 소비자는 再販賣價格維持가 행하여지고 있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再販賣價格維持契約 등 大企業에 의한 價格維持政策은 流通機關의 자주적인 競爭機能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消費者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삼아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流通構造上 從屬的 지위가 부득이한 小規模小賣業者도 消費者와의 관계에서는 支配的인 地位에 설 수 있다.

消費者의 經濟力이 事業者에 비하여 약하다는 점, 消費者가 필요로 하는 商品은 결코 低價의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과 관련

13) 正田 彬, 前掲論文, 6頁.

하여, 消費者의 일시적인 資金面에서의 負擔을 輕減시킴으로써 消費者가 商品을 入手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措置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만 信用力이 없는 경우에는 去來上의 地位가 낮은 쪽이 問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消費者를 相對方으로 한 去來에 있어서는 消費者의 競爭力을 비롯한 去來上의 地位의 特殊性을 전제로 하여, 法制度에 의하여 消費者의 權利·利益이 부당하게 侵害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措置가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獨占規制法에 기초하여 適正한 商品의 選擇·安全 및 消費者의 團結 등에 관한 法制度가 마련되어 있다.¹⁴⁾

5. 都·小賣業 活動의 調整 및 振興

都·小賣業에 있어서도 大企業은 백화점 혹은 대규모수퍼마켓이라는 형태로 출현하여 오고 있다. 大規模小賣業者와 관련하여서는, 경쟁관계에서 中小小賣業者와의 關係가 문제되는 동시에 大規模小賣業者와 去來하는 都賣業者 특히 中小都賣業者와의 關係가 문제된다. 이는 大規模小賣店의 競爭面·去來面에서의 힘의 濫用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一般的으로 獨占規制法을 중심으로 한 一般的 規制를 內容으로 하는 法制度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며, 中小小賣業者를 보호하기 위한 法規가 마련되어 있다.

동일한 小賣業者라도 中小規模 특히 小規模小賣業者의 경우에는 競爭의 側面에서는 大規模小賣業者와의 관계가, 去來의 側面에서는 大規模都賣業者와의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生産業者와의 관계가 小規模小賣業者에게 從屬的인 地位를 부득이하게 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大規模企業에 대하여 힘의 濫用은 規制된다고 하여도 去來上·競爭上 規模에 의한 從屬性이 반드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小規模小賣業者로 하여금 大規模企業에 對抗하기 위한 힘을 확보하도록 하기

14) 伊從寬, 前掲論文, 29頁.

위한 法的 措置가 문제되는 것이다.

中小小賣業者 등 小規模流通業者에 관한 保護法規는 일반적으로 大規模流通業者에 대한 規制와 小規模流通業者의 近代化·協業化를 두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¹⁵⁾

6. 流通活動과 商品의 特性

流通産業 특히 都·小賣業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앞서 보아온 一般的인 制度를 일단의 전제로 하면서 그 취급상품에 따라 그 商品의 性格에 기초하여 일정한 特別規制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성격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 분류하여 본다면, i) 商品의 性格에 기초하여 직접 그 商品의 取扱에 관하여 規制를 가하는 경우와 ii) 政策的으로 그 流通過程에 介入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경우 競爭制限的인 性格을 포함하면서 행하여지고 있다. 商品의 性格에 기초한 것으로는 藥品, 프로판가스 등 商品이 가진 危險性과 관계하는 경우의 規制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 政策的인 것으로는 항상 農業의 基本的인 문제로 되어 오고 있는 糧穀管理 등에 기초하는 米穀의 流通統制가 基本的인 農業政策과 관련하여 우선 문제가 된다.

III.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

憲法上 우리나라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기업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第119條 2項),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와 財産權을 보장받고 있다(第15條, 第23條 2項). 따라서 모든 國民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에 의한 制限(第37條 2項)을

15) E. 바쯔아·鈴木 武, 「流通構造と流通政策—日本と西ドイツの比較—」, 東洋經濟新報社, 1984, 172~173頁 參照.

받는 이외에는 자유로이 都·小賣業, 運送業 등 제반 流通產業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流通產業에 종사함에 있어 관계당사자간에 발생하는 利害關係의 調整 및 流通秩序의 維持는 원칙적으로 民法, 商法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¹⁶⁾

그러나 憲法은 經濟秩序에 관한 基本原則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에 대하여 몇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憲法은 國家가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第119條 2項). 둘째, 헌법은 국가에 대하여 農業·漁業·落後地域·中小企業 등 經濟的·社會的 弱者를 保護·育成하며, 특히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第123條). 셋째, 健全한 消費生活을 유도하고 生産품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하여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로써 보장함과 동시에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第124條, 第127條 2項).

이러한 憲法上의 例外規定에 터잡아 流通產業의 近代化를 목적으로 流通構造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하고 있는 流通產業近代化促進法을 비롯하여, 유통활동에 대한 關係法制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流通은 生産과 消費間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供給과 需要가 교차하는 市場이며 거기에서 價格形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는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사업자가 활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獨占規制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物價安定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不正競爭防止法, 商品券法, 商標法 등이 마련되어 있다.

16) 김영추, “우리나라의 유통관계법제 개관”, 「법제」, 통권 제57호, 1981.9.10, 47~48면 참조.

둘째, 去來上 弱者의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消費者의 적정한 상품의 선택·안전 및 단결 등에 관한 법률로서 消費者保護法, 割賦去來에 관한法律,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食品衛生法, 藥事法, 計量法, 工產品品質管理法, 電氣用品安全管理法 등이 있다.

세째, 小規模流通業者를 보호하기 위한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법규로는 都·小賣業振興法,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기타 中小企業에 관한 法規 등이 있다. 이 중 都·小賣業振興法은 1980년 종래의 市場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 도·소매업관계법규로서 명칭은 진흥법이지만 영업장·시장 등의 개설허가·허가의 취소·제반 신고사항·사전협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당부분 規制的 性格을 띠고 있다.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은 1976년 農水產物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生産者 및 消費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특히 農水產物都賣市場 기타 共販場의 설치운영의 根據法律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小規模流通業者와 관련한 中小企業支援 차원의 법규로는 中小企業振興組合法,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에 관한特別措置法 등이 있다.

네째로, 商品의 特性 등을 고려한 流通關係規制法規로는 糧穀管理法,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을 비롯하여 農水產物流通公社法, 담배事業法, 人參事業法, 韓國담배人參公社法,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법률 이외에 流通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物資規制 및 價格規制에 관한 法規가 있다.

〈表〉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規 (물적유통부문 제외)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도	최종개정연도	비 고
1. 公正競争을 促進하기 위한 法規	· 獨占規制및公正去來 에 관한法律	1980	1990	<u>전문개정</u>
	· 物價安定및公正去來 에 관한法律	1975	1980	
	· 不正競争防止法	1961	1991	(1986년 전문개정)
	· 商品券法	1961	1973	<u>전문개정</u> (1973년 전문개정)
	· 商標法	1949	1990	
2. 消費者 保護 法規	· 消費者保護法	1980	1986	<u>전문개정</u>
	· 割賦去來에 관한法律	1991		
	· 訪問販賣등에 관한 法律	1991		
	· 食品衛生法	1962	1991	(1986년 전문개정)
	· 藥事法	1953	1991	<u>전문개정</u>
	· 計量法	1961	1981	
	· 工產品品質管理法	1967	1986	
	· 電氣用品品質管理法	1974	1989	
3.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法規	· 流通産業近代化 促進法	1980	1991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함. (1986년 市場法폐지) (1976년 農 水産物都賣 市場法폐지)
	· 都·小賣業振興法	1986	1991	
	· 農水産物流通및價格 安定에 관한法律	1976	1991	
	· 기타 中小企業에 관한 法規			

28 第2章 流通關係法制의 基本構造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도	최종개정연도	비 고
4. 商品의 特性 을 고려한 法規 등	• 糧穀管理法	1967	1989	
	• 農水產物流通및價格 安定에 관한法律	1976	1991	
	• 農水產物流通公社法	1967	<u>1986</u>	<u>전문개정</u>
	• 담배事業法	1988		
	• 人參事業法	1972	<u>1988</u>	<u>전문개정</u> (1986년 전문개정)
	• 韓國담배人參公社法	1988	1989	
	• 液化石油가스의安全 및事業管理法	1983	1991	
	• 기타 物資規制 및 價格規制에 관한 法規			

第3章

日本の流通構造 및 關係法制

- I. 日本の流通構造의 現狀/31
- II. 日本 流通構造의 特色/36
- III. 日本의 流通關係法制/43

第3章 日本의 流通構造 및 關係法制

I. 日本의 流通構造의 現狀

1. 日本 流通産業의 變遷

日本의 流通産業에 있어 1960년대 전반부는 이른바 ‘流通革命’이라 불리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기로, 高速交通네트워크의 整備, 체인스토아 등 大量販賣小賣業의 발달 등에 의하여 高度經濟成長時代의 大量生産·大量消費가 실현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零細小賣業者가 도태되고 유통경로가 단축되었으며, 신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大量生産體制로 정비한 消費財製造業體가 대량으로 상품을 팔기 위하여 製造業體 주도의 流通支配體制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流通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生活必需品の 買占 또는 賣惜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유통업자에 대한 信賴性 및 유통구조의 安定性에 의문이 던져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70년대 低成長 經濟下에서 經濟運營의 중점을 생산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流通의 效率化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일본의 경제가 安定成長으로 이행된 시기였던 만큼 i)經濟 전반에 걸쳐 國際化와 情報化가 進展되고 ii)消費者的 價値觀이 多樣化되었으며 iii)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대한 慾求가 고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流通構造는 小規模小賣店의 감소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規模擴大의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業態의 多樣化, 製品輸入에의 積極的 參與, 流通情報技術의 革新에 의한 상품관리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역동적으로 변모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國際競爭力水準이 높다는 점과 國民의 生活實態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世界經濟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國民의 價値觀은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인 생활방식과 다양한 선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外需에 크게 의존한 생산과 수출우선형의 경제구조를 內需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세계에 대하여 보다 개방된 經濟·社會體制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성과를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결부시켜 감과 동시에 國際經濟社會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은 현재 流通構造 및 이의 주된 담당자인 流通業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流通業이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풍요한 國民生活의 基本'이라는 전제하에, i)보다 개방된 流通構造의 구축에 의한 製品輸入의 확대·ii)消費生活의 가일층 다양화·iii)國際分業을 통한 세계경제발전의 기여를 목표로, 流通政策을 더욱 탄력적·기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90년대의 流通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¹⁾

2. 小賣業의 動向

小賣業界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상당한 규모로 參入·退出에 의한 新·舊交替가 발생하고 있었는 바, 특히 근래에는 退出店數가 參入店數를 상회하는 추세이며 그 결과 店舖의 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1982년 172만점, 1985년 163만점, 1988년 162만점)²⁾. 店舖數의 減少傾向은 종업원 1~2인의 小規模小賣店의 감소에 의한 것이 크고, 이러한 면에서 日本의 流通業에 構造的 變化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上記 小規模小賣店數는 1982년 104만점, 1985년 94만점, 1988년 87만

1) 通商産業省商政課, 「90年代の流通ビジョン」, 通常産業省商政課, 1989, 3~14頁 參照.

2) 1988년부터 조사의 대상범위에 추가된 구내사업소 및 무점포판매사업소를 제외하면 161만점이다(通商産業省商政果, 前掲書, 7頁).

점).³⁾

다른 한편 새로운 業態의 小賣店의 신장이 현저하다. 消費者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적응하여 편의점, 전문대량판매점, 통신판매 등이 연률 15%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消費者의 低價格指向 등을 배경으로 한 할인점이나 자동화의 진전에 따른 街路邊店舖(Roadside-store) 등도 급속한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中小專門店 중에도 '복합매장'(2이상의 상품판매라인을 조합시킨 점포)이나 '아이템매장'(하나의 상품라인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다양성을 추구한 점포) 등 업종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다.⁴⁾

3. 都賣業의 動向

都賣業界의 經營環境도 변모하고 있다. 都賣業의 商店數는 장기간에 걸쳐 증가를 계속하여 1988년에는 44만점이 되었다. 그러나 同年의 증가 요인은 生産·資本財와 관련한 都賣業의 증가, 多頻度小量配送에 대응한 事業所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小規模都賣店은 그 주된 거래처인 小規模小賣店의 감소에 따라 해마다 현상유지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근년의 統計에서도 都賣業의 반수 가까이를 점하는 小規模都賣店(從業員 1~4인 규모)의 수가 담보상태이며, 특히 종업원 1~2인 규모의 零細店의 占有率이 저하하는 등 都賣業界 내부에 있어서의 構造的 變化를 엿볼 수 있다.⁵⁾

都賣業은 流通에 있어서 需給結合, 危險負擔, 金融, 物流 등 중요한 기능을 달성하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 消費財分野를 중심으로 製造業이 都賣機能을 겸하거나 小賣業이 製造段階와 직결된 거래를 늘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면에서는 流通經路의 短縮化가 이루어지고 있

3) 出處: 通商産業省, 「商業統計表」, 各年號; 조병택·이영준,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3, 37면 참조.

4) 通商産業省商政果, 前掲書, 7~8頁.

5) 出處: 通商産業省, 「商業統計表」, 各年號; 조병택·이영준, 前掲書, 40면 참조.

다. 또한 物流業 중에도 都賣業分野에 참입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都賣業體는 이러한 새로운 사태에의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都賣業은 그 存在意義의 명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화기기의 도입, 수입의 확대 등에 의한 小賣店의 支援·開發 등의 기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共同化나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共同輸入組織을 만들거나 온라인 受·發注의 VAN會社를 운영하는 등 그 活動基盤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일부에서 보여주고 있다.⁶⁾

4. 商店街 등의 動向

商業地區間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消費者의 購買行動半徑의 擴大 등을 배경으로 商業地區間의 競合範圍가 확대하였지만, 近代化 추세에 부응하여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한 商店街, 大都市의 超廣域商店街, 교외에 간선도로변의 新商業地區 등에는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충실한 것도 있어서 비교적 순조롭게 번영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또한 승계자가 없는 商店에서도 店舖 등의 처분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점포의 교체가 순조롭기 때문에 점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른바 ‘齒拔狀態’의 문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도시중심부의 상점가에서는 地價仰騰, 교통혼잡,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停滯感이 강한 지역도 적지 않다.⁷⁾ 즉 商店街를 구성하는 小規模小賣店의 轉·閉業의 결과 상점 대신에 임대빌딩이 건설되거나 폐점한 채로 점포가 방치되어 상점가 등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商業地區로서의 매력력이 한층 감소하고 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상점가가 협동하여 근대화 노력하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組合活動이 활발치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다.

6) 通商産業省商政課, 前掲書, 8頁.

7) 생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시장 등에서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 報告書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넓은 의미에서의 商店街로 취급한다.

한편 쇼핑센타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쇼핑센타는 소매업·요식업·서비스업 등을 계획적으로 집합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의 기능을 달성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그 수가 10년전의 2배이상인 1,300개에 달하였다. 쇼핑센타에 있어서도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구입 이외에 여러가지 기능을 조합시킨 공공성 또는 오락성이 근년들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오락시설이나 스포츠·레저 등의 서비스시설을 결합한 미래형 商業地區의 건설이 시도되고 있다.⁸⁾

5. 物流의 動向

物流은 상품의 配送·保管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기능을 통하여 유통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최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의 진전이 유통업의 구조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등에 의하여 다품종상품의 제공이 요구되는 결과, 재고의 최소화가 불가결하게 되고 있으며 물류부문에 있어서도 다품종·소량의 재고 및 소량·다빈도·정시의 수주·배송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제어에 의한 자동창고, 자동분류컨베이어 등이 개발되고, 이러한 것을 조합시킴으로써 소량·다빈도·신속한 이른바 Just-in-Time의 고도의 物流體制가 구축되고 있다. 선진적인 都賣業은 物流를 중요한 經營戰略의 하나로서 정착화시키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Just-in-Time에 대응한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物流分野에 있어서는 Just-in-Time 物流에의 對應, 交通體系의 整備, 物流技術의 進歩 등을 배경으로 물류거점의 입지·규모 등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製造業을 비롯한 流通의 흐름에 있어서는 情報化의 진전이 在庫管理의 일원화를 가능케 하고 분산·배치

8) 通商産業省商政果, 前掲書, 9頁.

되어 있던 물류센터의 集約化를 달성하도록 한 것도 있으며, 物流據點을 綜合集約化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都賣業의 경우에는 판매처와의 시간거리를 보다 단축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물류거점을 다수 설치하는 움직임도 보여지는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物流의 效率化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物流共同化에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製造業 간에 있어서는 특정한 그룹기업에 의한 물류의 共同化 이외에 동질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交換出荷나 積載效率의 향상을 위한 운송수단의 공동이용(돌아갈 짐의 운송수단 확보) 등의 共同化에의 노력이 활발하다. 小賣段階에서는 대량판매점이 건설된 대규모유통센터를 거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대량판매점의 주도하에 商品群別로 지정된 거래기업이 일괄수주하여 다수의 다른 거래기업의 상품을 小賣店舖에 일괄납품하거나, 또는 物流業이 거래기업의 상품을 집하하여 각 소매점포에 일괄배송·납품하는 등 물류시스템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왕성하다. 物流의 共同化는 Just-in-Time 物流下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적재효율의 향상, 교차운송의 회피 등을 통하여 物流의 效率化에 기여한다.⁹⁾

II. 日本 流通構造의 特色

어느 나라의 유통구조도 그 나라의 歷史的·社會的·文化的인 배경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다소의 고유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의 流通構造와 去來形態 또는 去來慣行은 구미제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이 실제로 외국제품 또는 외국유통업체의 參入障壁이 되고 있는가 어떤가는 차치하고라도, 日本流通構造의 특수성이 제외국에 여러가지 우려나 오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외국에 비하여 일본의 국내상품가격이 높은 원인으로서는 특유의 유통구조가 지적되어 온 것과 관련하여 그 실태가 어

9) 通商産業省商政課, 前掲書, 9~11頁.

떠한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의 유통구조에 대하여는 流通業體의 集中化·零細流通業者의 도태·製造業體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 流通業者의 발달 등이 歐美 만큼 철저하지 못하였고, 零細小賣業者의 수가 많은 것·流通經路가 다수의 유통업자의 介入에 의하여 多段階로 되고 있는 것 등이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¹⁰⁾

1. 流通業의 零細·過多性

우선 유통업자의 零細·過多性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小賣構造는 구미의 선진제국에 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의 점포수 즉, 점포밀도가 높고, 더구나 영세한 점포가 많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1988년 조사에서는 일본의 小賣店舖數가 162만점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약 2배인 미국의 점포수가 160만점인 것을 볼 때, 국토의 넓이를 감안한다면 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食料品店의 수를 본다면, 일본에서는 162만점의 42%에 달하는 70만점이 식료품점이었다. 이는 미국의 식료품점의 수가 25만점인 것과 비교할 때, 일본쪽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매점 1점포당 판매액, 종업원수에 있어서 일본은 각각 미국의 3분의 1, 2분의 1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流通構造는 일본의 流通業이 역사적·문화적으로 製造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多頻度·少量購入’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購買行動이나 섬세한 서비스, 소매점의 最近接性 등을 중시하는 消費者의 性向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中小小賣店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중소소매점이 지역 밀착형이며 소비자욕구의 파악이나 섬세한 대응에 배려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일본의 大量販賣店이 반드시 저가격·소량구입형은 아니었다는

10) 矢部丈太郎, “マーケティングと競争政策”,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40~45頁 參照.

것, 製造業體가 中小小賣店의 보호·육성에 노력한 것, 大規模小賣店鋪法에 의한 大型店의 出店抑制나 販賣免許制에 의한 新規參入의 抑制 등 각종의 法制度가 中小小賣店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1988년의 조사결과 都賣店數는 44만점으로 절대수는 구미제국에 비하여 많지만 이는 小賣構造에 대응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며, 多頻度小規模去來가 주로 행하여진다는 것 이외에 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사정도 있다.

근래 이와 같은 流通構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는 小賣業者의 수는 退出店數가 參入店數를 상회하는 상황이고, 그 결과 店鋪의 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2년의 점포수는 172만점이었으나 1988년에는 162만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 1~2인의 零細規模小賣店의 감소가 현저하다(1982년 104만점, 1988년 87만점). 이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나 자동차의 진전에 적응하여 콤비네이션 스토어, 전문양판점, 통신판매, 할인매장, 가로변점포 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小規模小賣店이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라 小規模都賣店의 占有率도 저하하고 있는 한편, 小賣業·都賣業 공히 中規模 이상의 상점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로서 본다면 規模擴大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¹¹⁾

2. 多段階性

다음으로 流通經路의 실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流通經路가 길다고 하는 것은 生産者로부터 最終消費者에게 상품이 흘러가는 사이에 개재하는 流通業者의 수가 많고, 이러한 유통업자간에 去來되는 회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業者間 去來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小賣業者의

11) 矢部丈太郎, 前掲論文, 40~41頁.

賣出額에 대한 都賣業者의 賣出額의 比率(W/R비율)이 사용된다. 1988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는 都賣業의 賣出額이 小賣業의 賣出額의 3.9배인데 대하여, 미국은 1.7배, 프랑스, 영국, 서독은 약 1.4배 내지 1.5배로 나타나서 일본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응 都賣가 多段階로 이루어지는 만큼 都賣賣出額이 중복계산되어 W/R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W/R비율이 높은 것은 都賣의 多段階性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綜合商社로 대표되는 大規模都賣業者의 존재나 返品制度에 기초하는 流通在庫가 많다고 하는 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요컨대 日本의 都賣業의 특징으로서 商品流通에 대한 都賣業의 介入이 다른 선진제국보다 많으며, 유통기구의 迂廻性이 강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生産財는 都賣業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消費財도 대부분 도매업자를 거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大規模小賣店에서 판매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도매와 2차도매, 경우에 따라서는 3차도매가 수직적으로 중복되는 복잡한 流通經路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주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유 등 전통적인 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다. 그 밖에 일본의 都賣業者는 상품별로 세분하여 分業을 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中間流通 즉 都賣의 多段階性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小賣流通構造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多頻度·小量購入이라고 하는 소비자행동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소매업자도 多頻度·少量購入이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는 이상, 小賣業者가 製造業體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流通費用은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國民經濟的으로도 損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¹²⁾

12) 矢部丈太郎, 前掲論文, 42頁.

3. 流通系列化

日本의 流通構造가 구미제국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에서는 寡占的 大企業이 주도하는 이른바 流通系列化가 일부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통계열화현상은 195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消費財産業의 大量生産體制를 감당하기 위한 유통부문이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製造業體에서는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유통채널의 형성을 필요로 하였다. 이 때문에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중반에 걸쳐 製造業主導의 유통계열화 구축이 자동차, 가전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의 消費財分野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고 후속적으로 다른 업종에도 파급되었다.¹³⁾

또한 일본의 製造業體의 유통계열화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製造業體가 都賣部門에 해당하는 販賣會社에 資本參加 내지는 任員派遣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와의 관계가 보다 長期的이고 繼續的인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근래에는 大量販賣店의 성장, 정보네트워크화의 진전 등 流通系列化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¹⁴⁾

4. 去來慣行

流通構造가 국가에 따라 반드시 동질적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去來形態 去來慣行도 또한 국가에 따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去來慣行에 있어서는 人間關係를 重視한 去來慣行, 返品の 慣行, 支給基準

13) 矢部丈太郎, 前掲論文, 43頁; 김재철, 「日本의 유통구조와 대일 마케팅전략」, 신한종합연구소, 1988. 3, 28~33면 참조.

14) 流通系列化는 流通의 近代化 合理化의 促進, 品質管理·에프터서비스의 충실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流通系列化의 수단이나 제조업체의 시장에서의 지위 여하에 따라서는 流通經路의 閉鎖, 販賣業者間的 경쟁의 감쇄 등의 단점이 크게 나타나며 公正한 競爭을 阻害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불명료하고 복잡한 리베이트制, 賣買基準價格制 등 일본만의 독특한 거래관행을 볼 수 있다. 거래관행의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극히 불명료한 요소가 다분히 남아 있는 문제이며, 유통근대화의 그늘에 숨겨진 영역이기도 하다.¹⁵⁾

1) 人間關係重視의 去來慣行

일본은 종종 '非契約書社會'라고 일컬어진다. 去來에 있어서 契約書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작성되어도 단순한 형식이거나 계약서에 去來條件의 전부가 명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관계에 있어서도 去來條件과 함께 個人的인 信用이 중시된다. 일단 거래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의 관행으로하여 장기·계속적인 去來關係가 유지되는 것이 통례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歐美에 있어서는 去來形態 또는 去來慣行이 短期的인 契約意識에 기초한 것인데 대하여, 일본에서는 長期的인 去來關係를 염두에 두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責任이나 危險負擔 등에 彈力性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返品의 慣行

일본에서는 일부업종에 있어서 小賣業者나 都賣業者가 일단 구입한 상품을 구입처에 되돌리는 이른바 返品의 慣行이 일반화되어 있다. 歐美에서도 返品은 있지만 그것은 消費者로부터의 返品이며, 불량품도 결함상품도 아닌 것을 팔다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製造業者나 都賣業者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返品의 慣行은 新規商品에 대하여 市場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면서 商品의 需給調整을 달성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5) 矢部丈太郎, 前掲論文, 43~45頁; 조병택·이영준, 전게서, 69~90면 참조.

첫째는 返品이 사회적 관행으로서 확립된다면 제조업체는 返品에 따른 위험부담분을 사전에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最終小賣價格이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返品의 慣行이 확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市場價格이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返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팔다 남은 상품은 시장에서 할인되어 판매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返品이 관행화됨으로써 소매업자의 경영자세가 안이하게 되고 소매업자의 경영노력이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품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자는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동향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잘팔릴 만한 상품을 구입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 리베이트制

일본에서 리베이트는 여러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급되는 多面的인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割引으로서의 효과를 갖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축적인 價格形成을 촉진하는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시장의 상태나 리베이트의 지급목적 등에 따라서는 販賣業者의 事業活動을 制限하는 것이 되어 獨占禁止法上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리베이트에는 ①판매업자의 거래액 중 특정 제조업자(또는 도매업자)의 상품의 販賣額의 比率에 따라 지급되는 占有率리베이트, ②특정 제조업자의 상품의 販賣額에 따라 累進的으로 지급되는 累進리베이트, ③제조업자의 販賣政策에 부응하는 노력의 정도에 응하여 지급되는 忠誠度리베이트 등이 있다.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市場構造가 競爭的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되는가 등에 따라 競爭政策上的 評價가 나뉜다. 리베이트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支給基準이 불명확하고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리베이트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4) 賣買基準價格制

일본의 消費財分野에 있어서는 제조업체 등이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希望小賣價格을 설정하면서 도·소매업자간의 거래에도 희망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賣買基準價格을 설정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매매 기준가격제는 한편으로는 개개의 판매업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설정 목표가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베이트제와 더불어 제조업자의 價格決定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유통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약화시키고 최종소매가격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II. 日本의 流通關係法制

1. 日本의 流通關係法制的 體系

일본은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럼 憲法上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¹⁶⁾ 일본에서는 流通關係法制的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유지·소비자보호·소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상품의 특성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社會的·經濟的 理由를 근거로, 시장에의 참입·설비투자·생산수량·상품가격 등을 직접 規制하거나 안전·위생·환경보전·화재방지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質과 事業活動에 관한 一定한 基準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¹⁷⁾ 일본의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 規制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公正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는 私的獨占의禁止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不正競爭防止法, 不當景品類 및 不當表示防止法 등이 있다.

둘째,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법규로는 消費者保護基本

16)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의 憲法上 根據規定으로서 제119조 내지 제127조의 經濟에 관한 條項을 두고 있다.

17) 松山隆英, “流通に關する政府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346~347頁.

법을 필두로, 우선 적정한 상품의 선택에 관한 법규로서 위에서 언급한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이외에 割賦販賣法,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無限連鎖販賣의防止에 관한法律, 特定商品등의預託등去來契約에 관한法律 등 消費者의 適正한 商品選擇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計量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등 適正한 規格 및 表示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다음으로 消費者의 安全에 관한 법규로는 食品衛生法, 藥事法, 有害物質을含有하는家庭用品의規制에 관한法律 등이 있으며, 消費者의 團結에 관한 법규로는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등이 있다.¹⁸⁾

세째, 小規模流通業者를 보호하기 위한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법규로는 都賣市場法,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小賣業의調整에 관한法律(이하 '大規模小賣店舖法'이라 한다),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中小小賣商業振興法, 商店街振興組合法 등이 있다. 또한 中小企業支援 차원에서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中小企業등協同組合法, 中小企業團體의組織에 관한法律 등이 있다.¹⁹⁾

네째, 商品의 特性을 고려한 流通活動規制法規로는 米穀의 유통에 관한 食糧管理法 및 農產物價格安定法을 비롯하여 식품·약품 기타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食品衛生法, 藥事法, 家庭用品品質表示法, 有害物質을含有하는家庭用品의規制에 관한法律, 液化石油가스의安全確保및去來의 適正化에 관한法律, 揮發油販賣業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일부 物資規制法規와 價格規制法規가 유통활동에 대한 規制法規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18) 長谷川古·伊從 寬,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80, 30頁.

19) E·バツツァ·鈴木 武, 「流通構造と流通政策—日本西ドイツの比較—」, 東洋經濟新報社, 1985, 160~167頁 參照.

<表> 日本의 流通關係法規(물적유통부문 제외)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도	최종개정연도	우리나라와의비교
1. 公正競爭을 促進하기 위한 法規	• 私的獨占의禁止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1947	1990	• 獨占規制및公正 去來에 관한法律
	• 不正競爭防止法	1934	1975	• 不正競爭防止法
	• 不當景品類및不當 表示防止法	1962	1972	• 商品券法 • 商標法
2. 消費者 保護 法規	• 消費者保護基本法	1968	1983	• 消費者保護法
	• 消費生活協同組合 法	1948	1989	
	• 割賦販賣法	1961	1988	• 割賦販賣에 관한 法律
	• 訪問販賣등에 관한 法律	1976	1988	• 訪問販賣등에 관한法律
	• 無限連鎖販賣의 防止에 관한法律	1978	1988	
	• 特定商品등의預託등 去來契約에 관한法律	1986		
	• 食品衛生法	1947	1990	• 食品衛生法
	• 藥事法	1960	1990	• 藥事法
	• 計量法	1951	1986	• 計量法
	• 家電用品品質表示法	1962	1984	• 電氣用品品質 管理法
• 有害物質을含有하는 家庭用品의規制에 관한法律	1973	1985		
3.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法規	• 都賣市場法	1971	1986	• 流通産業近代化 促進法
	•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小賣業의 事業活動의調整에 관한法律	1973	1991	• 都·小賣業振興 法 • 農水産物流通및 價格安定에 관한

분 류	법 률 명	제정연도	최종개정연도	우리나라와의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 中小小賣商業振興法 • 商店街振興組合法 • 流通業務市街地の整備에 관한法律 • 기타 中小企業에 관한 法規 	1959	1978	法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 • 1973 • 1936 	1981	1991	1981
				• 기타 中小企業에 관한 法規
4. 商品の特性을 고려한 法規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食糧管理法 • 農産物價格安定法 • 食品衛生法 • 藥事法 • 家電用品品質表示法 • 有害物質을含有하는 家庭用品의 規制에 관한法律 • 液化石油가스의 安全確保및 去來의 適正化에 관한法律 • 揮發油販賣業法 • 기타 物資規制 및 價格規制에 관한 法規 	1942	1987	1978
		1953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糧穀管理法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法律 • 農水産物流通公社法 • 食品衛生法 • 藥事法 • 電氣用品品質管理法
		1947	1990	
		1960	1990	
		1962	1984	
		1973	1985	
		1967	1991	• 液化石油가스의 安全및 事業管理法
		1977	1983	
				• 기타 物資規制 및 價格規制에 관한 法規

2. 日本의 流通政策의 變化

일본경제의 國際化의 진전, 國際的 地位의 향상 및 貿易摩擦의 확대에 따라 일본의 流通産業에 대하여는 市場開放 또는 自由化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사업자는 해외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流通分野에 있어서는 參入規制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외국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개방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國民生活의 向上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품가격이 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일본의 物價水準, 특히 家計消費에 관계되는 물가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른바 內外價格差別化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內外價格差別化가 나타나는 배경의 하나로 流通分野에 있어서의 參入規制 등에 의하여 사업자간에 경쟁이 충분히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비효율적이고 한계적인 사업자가 계속 존재하며 소비자에게 있어서 사업자선택의 이익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보다 풍요한 국민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종래 공급측면에서의 事業者重視의 자세로부터 수요자측면에서의 消費者重視의 자세로 經濟運營의 觀點을 전환하고, 시장메카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原則的 自由·例外的 規制의 기본적 입장에서 現行의 規制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⁰⁾

한편 規制下에서는 사업자간의 협조적 행동이 초래되기 쉽다. 規制가 事業의 일정부분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事業者는 規制에 대하여 業界를 중심으로 橫的인 意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업계의 협조적 체질이 원인이 되어 規制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競

20) 松山隆英, 前掲論文, 347頁.

爭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쉽다. 특히 行政當局이 需給調整에 관계되는 參入規制를 행함에 있어 新規參入事業者에 대하여 既存事業者나 그 단체에 직접 설명을 하게 하고 參入에 대한 사실상의 양해를 얻는 것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事業者團體 등에의 資金的 協力, 營業活動의 制限 등 각종의 조건이 붙어서 參入을 저지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업자간에 參入의 가부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은 일종의 카르텔에 지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의 설비 투자조정과 마찬가지로 競爭制限의性格이 강한 것이며 가격이나 광고 등 營業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獨占禁止法에 위반될 우려가 크며 이러한 參入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規制 중에는 法令 등에 의하여 그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行政指導에 의하여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적지 아니하다. 法律上 根據가 없는 行政指導에 의한 규제는 규제를 받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규제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고 예상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危險負擔이 높아지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대비용을 지울 수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規制와 行政指導에 대하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日本政府는 향후 流通關聯規制를 완화함과 동시에 獨占禁止法을 엄정하게 운용할 것이라 한다. 이는 規制 援化를 통하여 일본국내시장개방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한편, 기업의 경쟁촉진과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함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獨占禁止法의 엄정한 운용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²¹⁾

21) 上掲書, 348~351頁 參照.

3. 都・小賣業關係法制

일본에서 소규모유통업 즉 中小都・小賣業의 사업활동에 관한 법규는 주로 保護法規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법규에는 都・小賣業에만 적용이 되는 법규와 中小企業保護의 일환으로 도・소매업에 적용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중 都・小賣業을 직접 調整 또는 振興하기 위한 법규로는 都賣市場法, 大規模小賣店鋪法, 小賣商業特別措置法, 中小小賣商業振興法 및 商店街振興組合法이 있다. 이 중 都賣市場法은 생선식품 등의 거래의 적정화・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매시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규이고 나머지 법률들은 中小小賣業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들이다. 일본의 中小小賣業 保護法規는 크게 ①中小小賣業者를 보호하기 위한 大規模小賣店의 規制와 ②中小小賣業者의 近代化・協業化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²²⁾ 大規模小賣店鋪法과 小賣商業特別措置法이 전자에 해당하며, 中小小賣商業振興法과 商店街振興組合法이 후자에 해당한다.

都・小賣業의 調整 또는 振興과 관련한 5개 법률에 대하여는 성립배경,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第4章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22) E・バツツァ・鈴木 武, 前掲書, 172~173頁.

第4章

日本の都・小賣業關係法制

I. 都賣市場法/53

II. 大規模小賣店鋪法/64

III.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74

IV. 中小小賣商業振興法/77

V. 商店街振興組合法/81

第4章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

I. 都賣市場法

1. 序說

生鮮食料品은 그 생산이 자연조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보존이 어려우며 生産地와 消費地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간에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선식료품의 生産者나 小賣業者는 일반적으로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流通 그 자체에 仲介機關이 필요한 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전문시장이 都賣市場이다.¹⁾

일본의 都賣市場法은 都賣市場(中央都賣市場 및 地方都賣市場)의 開設 및 都賣市場에서의 都賣 기타 去來에 관한 규제, 都賣市場의 整備 促進 및 運營의 適正性·健全性 확보를 통하여 생선식료품 등의 去來의 適正化와 그 生産 및 流通의 圓滑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7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3차례 (1978년, 1980년 및 1986년)의 改正을 거쳤으며, 總82條 附則10條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都賣市場法の 成立背景, 主要內容 및 問題點을 살펴본다.

2. 都賣市場法の 成立背景

1) 警察·稅務行政에서 産業政策으로의 轉換

都賣市場에 대한 최초의 法的 規制는 舊幕府時代의 특권이 폐지된 후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警察·稅務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1877년 東京府는 '魚·鳥·靑果物市場 및 都賣業例規細則'을 공포하여 시장의 위치를 한

1) 田島義博, 「流通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87, 107~108頁.

정하고, 都賣業者에게 許可證을 주어 組合을 만들도록 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租稅(賣出額의 1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1897년 이러한 例規에 더하여 위생·교통상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食品市場團束規則’이 제정되고, 시장의 관할도 그때까지의 府租稅課 혹은 郡區役所로부터 警視廳으로 이전되었다. 이 規則에서는 ‘식품시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시장의 위치·도면·상품의 종류 등을 구비하여 경시청에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 함’이라고 정하는 외에 통행방해의 금지·청소·악취의 제거·불속부패물품의 매매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다른 府縣도 거의 마찬가지이며, 1920년대 후반 食品市場團束規則을 제정한 道府縣이 40여개 있었다).²⁾

1910년을 전후하여 도시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행정에 있어 産業經濟政策이라는 관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農商務省 生産調査會에서 이른바 ‘魚市場法案要綱’을 심의한 바 있는데, 이는 ‘1地區 1市場 1營業者主義’를 취하고 업자난립의 폐해를 법률로 통제하도록 의도된 것이었지만 생산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法制化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 中央都賣市場法の 制定

그 후 1918년의 米穀騷擾를 계기로 대도시에 公設小賣市場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설소매시장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선시켜야한다는 점이 일반에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22년 內務省 社會事業調査會가 ‘中央市場設置要綱’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으며, 農商務省에서 전국의 주요도시에서의 일상필수품 배급기관의 정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中央都賣市場法案을 입안하여 1922년 제46회 帝國議會에서 성립시켰다. 中央都賣市場法の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鷺野 宏, “市場關係法—都賣市場法—”, 「流通産業關係法概說」, 同文館, 1974, 173~174頁.

- ①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 또는 인구 15만 이상의 市)가 농림대신의 인가를 받아 개설한다.
- ②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는 농림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條例에서 중간도매업자의 설치를 정할 수 있다.
- ④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도매는 원칙적으로 委託販賣·競賣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의 업무,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개설도시의 條例에 상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둔다.
- ⑥ 국가는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市場施設整備費를 보조한다.

中央都賣市場法下에서 1927년 京都市를 시발로 순차적으로 주요도시에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戰後에는 지방의 기간도시에서의 개설 움직임이 왕성해졌다.³⁾

3) 都賣市場法の 制定

中央都賣市場法은 기간도시의 거점적 역할을 하는 公營市場의 運營과 去來에 관한 準則을 정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의 도시화의 진전, 식생활수준의 향상, 생산 유통분야의 변혁,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의식의 향상 등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은 물론 종래 중앙도매시장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타 도매시장에 대하여 도시기능과 인구동태에 대응한 개설·정비 및 생산자·소비자 쌍방의 요청에 따른 市場流通의 合理化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제도의 발본적인 개정이 계획되었다. 수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0년 봄 국회에 ‘都賣市場法案’이 제안되어 1971년 국회에서 都賣市場法(1971년 法律 第35號)이 성립되기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中央都賣市場法은 폐지되었다.

3) 上掲論文, 174~175頁.

都賣市場法の 주요 골자는 ① 중앙도매시장제도에 관하여는 구법의 근간을 답습함과 동시에 廣域市場行政을 전개하고, 거래규제를 실정에 부응하도록 조화시키고, 국가의 造成機能을 강화하며, ② 여타 도매시장에 있어서 統一的인 法制(중앙도매시장 이외의 일정규모 이상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업무에 대한 都道府縣知事の 許可制 등)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다.

3. 都賣市場法の 主要內容

1) 對象市場의 範圍

이 法에서 '都賣市場'이란 ①야채, 과일, 어류, 육류 등 생선식료품 등의 ②도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③도매시장, 자동차 주차장 기타 생선식료품 등의 거래 및 하역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④계속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第2條 2項). 都賣市場에서는 競賣로 거래되는 것이 많지만, 경매여부는 판매방법의 문제이며 도매시장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주문배달에 의한 不定期去來를 주로 하거나 창고, 도축장과 같은 거래 또는 하역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거래는 도매시장거래라고 할 수 없다.

都賣市場은 ①중앙도매시장 ②지방도매시장 ③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이 중 '中央都賣市場'은 구법의 그것과 성격이 동일한 것이고(第2條 3項), '地方都賣市場'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의 면적이 일정규모(청과시장 330평방미터, 수산시장 200평방미터, 식육시장 150평방미터, 화훼시장 200평방미터)(施行令 第2條) 이상인 것을 말한다(第2條 4項).

都賣市場은 態樣이 가지각색이고 또 수도 매우 많으며 소규모인 것은 개개의 都賣業者와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 전부에 대한 법제적 파악은 현저하게 곤란하므로, 都賣市場法에서는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만을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타 도매시장에 관하여는 地方公

共團體가 條例로 개설 내지 업무에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대형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2) 中央都賣市場에서의 賣買去來

中央都賣市場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都道府縣, 인구 20만인 이상의 市 또는 일부 事務組合이다(第8條). 이러한 지방공공단체는 개설구역(東京市場의 경우는 東京郡 일원)에서 농림수산대신의 認可를 얻어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수 있다.

都賣市場法과 이에 기초한 개설도시의 事務規程은 중앙도매시장에서의 都賣去來에 관하여 상세하고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이 점은 商品去來所法,⁴⁾ 證券去來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법령은 당해 去來所가 개설하는 시장 외의 類似施設의 개설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都賣市場法은 명칭제한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공영시장인 중앙도매시장에서 유통업자는 公的施設의 전속이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보증을 받는 한편, 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업무상의 책임과 거래의 안전·능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의 준수를 요구받는다.

중앙도매시장의 去來規則의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⁵⁾

(1) 公正하고 安定的인 去來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도매거래는 競賣 또는 入札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실정에 맞추어 相對賣買에 의할 수 있다(第34條 참조).

① 일정한 규격 또는 저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공급사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품(예를 들면, 감자, 우엉, 토란, 콩나물, 홍당무, 양파, 감귤, 감, 사과, 바나나, 냉동수산물, 소와 돼지의 부분육, 수입식육등)을 도매하는 경우

4) 商品去來所란 상품 또는 상품지수에 대한 先物去來에 필요한 시장의 개설을 주된 목적으로 商品去來所法(1950년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를 말한다(同法 第2條 참조). 商品去來所는 그 자체가 유통업자는 아니지만 주된 기능의 하나로서 현물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5) 鷺野 宏, 前掲論文, 178~185頁 參照.

② 품목, 품질이 특수하기 때문에 수요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상품(예를 들면, 새끼나물, 애오이, 산채류, 유자류, 은행, 매실, 담수어류, 복어, 패류, 왕새우, 성게, 해삼, 상어 등)을 도매하는 경우

③ 재해의 발생, 입하의 지연, 도매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 잔품을 도매하는 경우, 사전에 예약한 것을 도매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선취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매하는 때

(2) 中央都賣市場外에 있는 商品의 都賣의 適正化

도매업자에 대하여는 市場外에 있는 물품의 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第35條). 이는 생산식료품을 현물로서 적정하게 평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인 바, 예외적으로 도매업자는 物類合理化에 부응한 장외보관장소의 확대 등의 취지에서 개설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개설구역 주변지역의 일정한 장소에 있는 물품을 도매할 수 있다.

(3) 差別的 取扱 등의 禁止

中間都賣業者 또는 賣買參加者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정당한 이유없이 出荷者로부터의 販賣의 委託를 거절할 수 없다(第36條).

(4) 都賣의 相對方 制限

도매업자는 원칙적으로 中間都賣業者 및 開設者의 승인을 받은 賣買參加者 이외의 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第37條). 도매업자가 시장외의 大規模需要者, 다른 시장의 도매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이른바 ‘轉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입하가 많거나 또는 품목·품질이 특수하기 때문에 당해 시장에서는 殘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잔품이 발생한 경우, ③동일개설구역내의 시장간에 입하량을 조정하는 경우, ④당해 중앙도매시장으로부터 출하를 받지 아니하면 집하할 수 없는 도매시장(그 다수는 대도시주변의 영세시장)에 도매하는 경우 중, 개설자가 그 시장의 中間都賣業者나 매매참가자의 매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轉送’이 허용된다. 이는 중간도매업자의 직접집하의 적정화와 더불어 都賣·中間都賣業者의 협조하에 각 시장의

실정에 맞추어 중앙도매시장 전체로서의 집하·판매기능의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치이다.

(5) 中間都賣業者의 業務制限

中間都賣業者는 ①스스로 판매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 ②당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第44條). 이는 都賣業者·中間都賣業者·小賣業者의 3자간의 機能分擔과 去來秩序維持를 위한 취지의 조치인데, 종래에는 都賣業者와 中間都賣業者間的 집하·판매능력의 균형, 장외도매업자와의 판매경쟁력, 특수물품의 취급 등의 문제 때문에 舊中央都賣市場法下에서도 거래질서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탄력적 취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現行法에서는 각 중앙도매시장의 실정에 따라 당해 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개설자가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中間都賣業者가 직접 집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第44條 단서).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 이외의 者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집하와 상대매매에 의한 판매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委託販賣·競賣去來는 출하자·소비자의 쌍방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개적인 가격형성방법이고 짐처리가 신속하고 판매비용도 적게 드는 잇점이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과물에 관하여는 당해 상품의 특성과 출하자의 행태로 보아, 상품의 규격화·생산의 계획화·수급정보의 정비 등에 결함이 있는 相對賣買가 생산자와 소매업자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거래방법의 주체를 점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다. 현행 都賣市場法이 구법의 원칙에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더하면서도, 委託販賣 競賣를 去來上 基本原則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다.

3) 都賣業者의 數

中央都賣市場制度는 유럽의 중앙시장(파리의 알 샹트랄, 런던의 스피

탈필드청과물시장, 프랑크푸루트의 청과물시장 등)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재지의 기존의 도매업자·중간도매업자는 재편·통합되어, 단일 혹은 소수 복수의 회사로서 중앙도매시장에 수용되었다. 이는 都賣市場法の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다수의 동업자가 시장에서 무용한 경쟁을 반복하고 生産者와 消費者 양자가 모두 영세·분산적이었던 法制定 당시의 流通實態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競賣原則의 導入에 따라 고려된 행정상의 방침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미의 시장에서는 시장수용에 따른 도매상의 재편·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다수의 도매업자가 시장내에서 일본의 中間都賣業者의 점포 정도의 부스에서 相對賣買를 하고 있다(때에 따라 대규모로 평가가 곤란한 상품이 입하된다면 專門競賣會社에 신고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도매시장의 도매업자의 單復의 문제에 있어서는 單一制가 집하력 강화·대량집중거래, 複數制는 경쟁원리의 도입과 서비스향상이라는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후 中央都賣市場 기타 都賣市場의 都賣業者의 合併 또는 營業讓受와 관련한 獨占禁止法의 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하나는 單一制의 시장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의 업무의 특수성, 시장상 호간의 생산지에 대한 집하경쟁, 매입측의 조직적인 체크시스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도매업자의 新規參入의 가능성, 거래분야의 유동성(교통사정, 인구분포 등의 변화, 동종의 도매업자의 참입 등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거래분야는 간단하게 변화할 수 있음)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품질, 수량 기타 제반조건을 좌우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가져올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매시장의 거래분야가 주로 소매업자가 모여 있는 소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매업자 및 물자의 교류가 적은 폐쇄적인 지역의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사업규모의 대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2억円の 都賣統合計劃으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으로 판단될 위험이 강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경우 각종 流通産業의 合理化를 위한 規模의 經濟가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도매시장만을 합리화의 물결로부터 떼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⁶⁾

4) 中央都賣市場의 中間都賣業者의 機能

舊中央都賣市場法은 가능한 한 중간에 개입하는 仲介機關을 생략한다는 趣旨下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中央市場設置要綱은 중개기관의 비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中央都賣市場法 제정시에는 중간도매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며, 同法 施行規則에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간도매업자를 매매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취지만 정하고 있었다(第33條 1項 참조). 그 후 1956년 法改正에서 이러한 취지가 법률상 규정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로 개장한 대도시의 중앙도매시장에는 중간도매업자가 설치되고 있다. 현재 중앙도매시장중에서 중간도매업자를 두고 있지 아니한 시장은 모두 규모가 적어 중간도매업자의 分荷機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예외적으로 食肉中央都賣市場에서 중간도매업자를 두는 시장은 시장규모가 食肉 특히 큰 東京 뿐이며 다른 시장은 중간도매업자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식육은 물품수도 적고 저장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내에 특별한 分荷機構를 둘 필요성이 적으며, 대형식육점이 시장의 매매참가자가 되어 자기의 점포 주변의 식육점에 대하여 중간도매행위를 하는 유통형태가 일반적이다.

중앙도매시장의 中間都賣業者의 機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2次都賣機能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소매상, 백화점, 슈퍼 등의 구입업무의 대행 ②대규모 물자의 分荷·選別 및 分介 ③원격지의 대규모수요자에 대한 품목선택 및 배송 ④소매업자에 대한 신용의 공여 등을 행하고 있다. 그 업무는 거래의 중개 알선을 행하는 이른바 Broker의 역할이 아니라 현물을

6) 上掲論文, 185~189頁 參照.

시장에서 매수하여 分荷・調製하여 販賣하는 미국시장의 Jobber에 가까운 것이다.⁷⁾

이와 같이 실제적인 설치상황과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구법의 입법당시의 취지는 어떻든간에 中間都賣業者를 불필요한 기관으로 보는 것은 이미 적당치 아니하다. 中間都賣業者의 機能은 시장유통권의 광역화, 출하단위의 대형화, 품목선택의 다양화, 소매업의 근대화 등에 따라 소매기능의 일부 분담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요코하마市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의 경우를 보면, 전시의 통제를 계기로 中間都賣制度를 폐지하였는데 유력한 매매참가자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여 장내에서 중간도매유사행위를 하게 되어 거래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1973년부터 中間都賣制度를 부활시켰다.

수퍼마켓의 경우 중앙도매시장의 매입참가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일의 구입을 오로지 中間都賣業者를 통하여 행하고 있다. 경매참가에 필요한 숙련노동력의 확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시장의 현금거래(정확하게는 3일 내지 4일째 지급) 등을 고려한다면, 中間都賣業者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한다. 통상은 구입전일에 예약주문하고 당일 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며, 결제는 월 2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취하여지고 있다.

現行 都賣市場法이 중앙도매시장에서 중간도매업자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개설자가 시장의 취급규모・취급품목의 성질・거래의 상황 등에 비추어 중간도매업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이다(第33條).

5) 地方都賣市場

일본에서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는 '지방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이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중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政令이

7) 上掲論文, 190頁.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을 말한다(第2條 4項).

都賣市場法에서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업무는 都道府縣知事の許可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第55條 내지 第60條). 이와 함께 都賣市場法은 許可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상의 기본원칙으로서 ①출하자·매입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第61條), ②경매 또는 입찰의 원칙(第62條), ③입하수량·도매가격 등의 공표(第63條)에 관한 것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都賣市場法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시장에 대하여는 지역유통의 실태에 따라 都道府縣 條例에 기초하여 탄력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第68條).

4. 都賣市場外 流通의 問題點

都賣市場의 體系化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流通經路의 확대는 유통의 총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의 개척 및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 市場流通의 合理化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물품수가 많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품질의 변화가 크며 규격이 다양하고 하루하루 수급사정이 유동적인 청과물이나 어패류를 大都市消費者의 일상의 수요에 충족하도록 주문에 따라 배급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를 다수의 산지와 다수의 소매점 내지 소비자단체간의 다원적인 직결루트로 매일 집하한다면, 계약·물품의 배송대금의 지급·클레임처리 등으로 순식간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유통경로의 중간에 品目の 選擇, 評價, 分介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기관이 필요하며, 그 시설이 불특정의 外部者에의 分荷·販賣를 위한 상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명칭과 거래방법의 여하에 관계없이 '市場流通'과 다르지 아니하다.

요컨대 특정한 자간의 계속적인 배송시설로서 본래의 의미의 '市場外

流通'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퍼 내지 소비생활협동조합 등 대규모체인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지가수준·도시구조·교통사정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중앙도매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기업차원에서 대규모의 집배시설을 건설하고 그것을 관리·운용한다는 것은 부동산투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적다 할 것이다.⁸⁾

II. 大規模小賣店鋪法

1. 序 說

일본의 小賣業에 대한 調整法規로는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이하 '大規模小賣店鋪法'이라 한다)'과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이 있다. 이 중 大規模小賣店鋪法은 消費者의 利益保護와 함께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소매업의 事業活動을 조정함으로써 주변의 中소소매업의 事業活動의 기회를 확보하고 소매업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法은 1973년에 制定되어 현재까지 3차례(1978년, 1983년, 1991년)의 改正을 거쳤으며, 總21條 附則5條로 되어있다.

이 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大規模小賣業者에 대한 규제법규로는 舊百貨店法(1937년부터 1947년까지 시행)과 新百貨店法(1956년부터 1973년까지 시행)이 있었는데, 이들 법률은 百貨店과 中小小賣業者의 대립관계를 中소소매업자 보호차원에서 조정하는 백화점에 대한 규제법규였다.

이하에서는 대규모소매점포법의 成立背景, 主要内容 및 問題點을 살펴본다.

8) 上掲論文, 192~194頁 參照.

2.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成立背景

1) 舊百貨店法과 新百貨店法

大規模小賣店の 출점에 대한 規制는 1937년 8월에 制定된 舊百貨店法에서 시작되었다. 舊百貨店法은 1,5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를 가진 多品種商品의 小賣業을 영위하는 점포의 新·增設 등의 許可, 폐점시각·휴업일수의 制限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許可制라고 하는 原則的 禁止를 解除하는 法體系로 되어 있었다.⁹⁾

舊百貨店法은 종래 고급포목점이라는 이미지에서 출발한 백화점이 일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취급하게 되어, 중소소매점·전문점 등과 경합하여 마찰이 격화함에 따라 百貨店の 營業活動을 規制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戰後 경제가 황폐화하여 舊百貨店法을 비롯한 제반 經濟統制立法이 規制의 意義를 상실하고 또 財閥의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舊百貨店法은 1947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그 후 6·25사변의 特需를 전후한 不況下에서 백화점과 중소소매상과의 경쟁도 격화되어 1956년 6월에 新百貨店法이 제정되었다. 新百貨店法은 매장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백화점의 영업 및 점포의 新·增設의 許可, 폐점시각 휴업일수의 제한, 특정한 영업행위의 중지권고 등을 규정한 구백화점법과 마찬가지로의 百貨店規制法이었다.¹⁰⁾

2) 大規模小賣店鋪法の 制定

新百貨店法 제정 이후 1960년대부터 슈퍼마켓의 출점이 잇달았으며 中小小賣業者으로부터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産業合理化審議會 流通部會에서는 슈퍼마켓에 대한 새

9) 正田 彬, “大規模小賣店の規制”, 「流通産業關係法概說」, 同文館, 1974, 216頁.

10) 松山隆英, “流通に關する政府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351~352頁.

로운 법적 규제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제출하였지만, 그 후에도 슈퍼마켓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出店과 관련한 所在地 小賣業者와의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百貨店法이 企業主義(1기업단위의 매장면적에 따라 규제대상여부를 결정)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同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건물전체의 매장면적이 규제대상으로 되는 경우 각 층마다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기업단위의 매장면적을 규제대상 이하로 만드는 행위가 횡행하였다. 이러한 擬似百貨店 문제에 대하여는 중소소매상으로부터 規制強化, 기존백화점으로부터는 不平等是正의 요구가 제기되었는바, 정부는 1968년 6월 의사백화점에 대하여도 百貨店法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行政指導를 행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産業構造審議會 流通部分에서 백화점법 개정문제가 검토되어 1973년 9월 ‘大規模小賣店鋪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정당시의 ‘大規模小賣店鋪法’과 ‘百貨店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의 목적으로서 ‘中小小賣業의 事業活動의 機會確保’ 뿐만 아니라 새로운 ‘消費者利益保護’를 추가한 점.
- ② 許可制를 개정하여 事前申告制로 하고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중소소매업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체제로 한 점.
- ③ 동일건물 내의 점포면적이 1,500평방미터(政令 지정도시 등은 3,0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를 大規模小賣店鋪로 하고, 이에 入住하고 있는 모든 소매업을 규제대상으로 한 점(企業主義로부터 建物主義로의 전환).

3)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改正

(1) 規制의 強化

‘大規模小賣店鋪法’ 제정 이후에도 대규모 슈퍼마켓의 신규출점공세는 쇠퇴하지 아니하고 대도시로부터 도시교외와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었으며, 또 ‘大規模小賣店鋪法’의 대상면적 미만의 중형점에 있어서도 소재지 중소소매상과의 분쟁이 다발하였다. 이 때문에 1978년 8월 ‘大規模小賣店鋪法’이 개정되어 점포면적 1,500평방미터 이하의 중형점 중 500평방미터

를 초과하는 것을 第2種大規模小賣店鋪로서 ‘大規模小賣店鋪法’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그 조정권한을 都道府縣知事が 갖도록 하였다.¹¹⁾ 또한 1982년에는 行政指導를 통하여 出店者에 대하여 事前説明을 의무화하였으며, 인구가 적은 市·町·村 등에서의 申告自肅指導의 실시 등 대규모 소매점포의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더우기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강화와 아울러 197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소매점 등의 출점·확장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제를 행하는 地方公共團體가 증가하였다.¹²⁾

(2) 規制緩和要請의 高潮 및 美·日構造協議

이상과 같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大規模小賣店鋪法の 운용과 관련하여 建物設置者에 의한 申告에서 비롯되는 法律上の 調整節次에 들어가기전에 大規模小賣店과 所在地 小賣業者間의 실질적인 조정이 행하여 지도록 되어 있는데(第3條 참조), 이러한 조정이 불투명하게 장기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法制定 이후 10여년을 경과하면서 경제·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大規模小賣店鋪法과 經濟現實 간의 괴리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규제강화방침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무역불균형 등을 배경으로 한 일본시장에의 접근문제로서 일본의 유통문제에 대하여 강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각국으로부터 大規模小賣店鋪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유통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수차례 계속되었다.¹³⁾

이 중 1989년부터 1990년 6월까지 행하여진 美·日構造協議의 結果, 大規模小賣店鋪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

11) 沈炳燮 譯,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및 小賣商業 調整特別措置法の 改正法律”, 「최근외국입법동향」, 제34호, 法制處, 1979.8, 30~45면 참조.

12)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流通産業課, “大店法關連五法”, 「法律のひろば」, Vol.44 No. 8, ぎょうせい, 1991. 8, 24頁.

13) 鹽見 讓, “大店法の改正と小賣商業の將來展望”, 「法律のひろば」, Vol.44 No.6, ぎょうせい, 1991.6, 30~31頁 參照.

의되었는 바,¹⁴⁾ 이에 따라 1991년 5월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改正이 있었다.

① 제 1 단계는 ‘規制緩和를 위한 措置(運用適正化措置 등)’로서 출점조정처리기간의 1년 6개월 이내로의 단축, 100평방미터 이하의 수입품매장의 증설에 관하여는 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조치 등의 도입, 폐점시각·휴업일수에 관한 조정대상범위의 완화 등을 신속히 행할 것 등이다.

② 제 2 단계는 ‘次期定期國會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는 法律改正事項’으로서 수입확대를 위한 출점조정절차에 있어서의 수입품매장에 관한 특례조치의 도입, 출점조정처리기간의 단축(1년 정도), 출점조정절차 및 기관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규제 억제 등이다.

③ 제 3 단계는 ‘大規模小賣店鋪法 改正 이후의 改善’으로서 제 2 단계 조치에 의한 개정으로부터 2년 후에 다시 대규모소매점포법의 개선점을 검토한다.

3. 大規模小賣店鋪法の 主要內容

1) 規制對象

百貨店法이 일정기준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진 店鋪를 가진 ‘企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데 대하여, 大規模小賣店鋪法은 ‘建物’을 단위로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者를 規制의 對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특징이 있다. 즉 大規模小賣店鋪法에서는 하나의 건물내의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포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基準面積— 이상이고, 3,000평방미터(都의 特別區 및 地方自治法 第252條의 19第1項의 指定都市區域內에서는 6,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通商産業大臣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그 建物所在地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신고하여 통신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그 申告된 建物에 있어서의 小

14)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流通産業課, 前掲論文, 25頁. 大規模小賣店鋪法 改正의 상세한 내용(1991년 5월 24일 改正)은 第5章에서 설명한다.

賣業의 事業活動에 대하여 調整이 行하여진다'는 趣旨의 公示를 한 건물 이 '大規模小賣店鋪'로 되며, 이 點포에 있어서의 小賣業이 규제의 대상으로 된다(第3條 1項, 2項). 企業主體의 餘하, 法人格이 같은가 다른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동일건물내에 있어서의 소매업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大規模小賣店鋪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營業을 하는 모든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大規模小賣店鋪에는 擬似百貨店 등을 비롯하여 일부 地下街도 포함된다. 그와 동시에 종래 百貨店法의 규제대상이었던 백화점이 갖는 소형점포는 큰 건물의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營業開示의 規制

우선 大規模小賣店鋪를 新設하거나, 建物の 床面積의 변경 또는 建物の 用途의 변경에 의하여 大規模小賣店鋪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기 위한 조치를 强구하는 자 및 그 건물의 일부를 小賣店鋪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 -大規模小賣店鋪設置者-는 通商産業省令에서 定하는 대규모 소매점포라는 취지의 표시를 揭示함과 동시에 姓名 또는 名稱, 法人의 대표자의 姓名 및 住所建物の 名稱, 所在地 建물의 延床面積, 店鋪面積 및 構造 建物の 點포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豫定日(施行規則 第4條)을 通産大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第3條).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 通商産業大臣은 그 신고에 관계되는 건물에서의 소매업의 事業활동에 대하여 調査가 行하여진다는 취지의 公示를 하도록 하고 있다(第3條 2項).

이러한 公示 이후가 아니라면 大規模小賣店鋪設置者는 기준면적을 넘어서 소매점포로서 營業을 할 수 없고, 공시후 7개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러한 大規模小賣店鋪에서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7개월을 경과한 후부터 매장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第4條). 요컨대 大規模小賣店鋪의 新設 등의 경우에는 申告→公示→7개월의 營業 禁止期間→營業開始라고 하는 것이 된다.

大規模小賣店鋪法은 위에서 기술한 건물을 중심으로 한 규제외에 大規

模小賣店舖에 있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개의 소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개시 등을 포함하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관련소매업자는 大規模小賣店舖의 所在地에서 영업개시일 5개월전까지 ①姓名, 名稱 및 住所, 法人의 代表者名 ②大規模小賣店舖의 住所地 ③開店日 ④店舖面積을 通商産業大臣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또 大規模小賣店舖의 公示時點에 그 점포에서 영업하고있는 자는 공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上記 ①, ②, ④의 사항을 通商産業大臣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第5條). 이러한 소매업자가 점포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개월전에 신고하도록 의무지워져 있다(第6條).

요컨대 大規模小賣店舖에서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소매업자 및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점포면적을 증가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는 누구라도 開店 또는 店舖擴張의 5개월전까지 신고하도록 의무지워져 있다.

이러한 소매업자로부터의 신고가 있는 경우 通商産業大臣은 당해 '大規模小賣店舖의 주변의 人口規模 및 그 推移, 中小小賣業의 近代化의 전망, 다른 大規模小賣店舖의 배치 및 당해 다른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소매업의 現象 등을 고려하여' 신고된 소매업자의 영업개시 또는 店舖擴張이 '그 주변의 중소소매업자에게 상당정도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의 의견을 들어서 신고수리의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①開店日의 延期 또는 ②店舖面積의 減少 등을 勸告할 수 있다(第7條). 심의회는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大規模小賣店舖의 소재지가 그 지구내에 있는 商工會議所, 商工會, 消費者, 消費者團體, 小賣業者, 小賣業者團體 기타의 자가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第7條 2項). 당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이러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中小小賣業者가 현저하게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하여 申告受理日로부터 5개월 이내에 권고와 관련한 개점일의 연기 또는 점포면적의 감소를 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第8條). 이러한 命令違反에는 300만圓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第18條).

3) 營業活動에 대한 規制

大規模小賣店鋪法은 大規模小賣店鋪의 小賣業者의 營業활동과 관련하여 開店時각·휴업일수에 關於 申告·變更申告·變更命令, 顧客의 送迎 기타 營業에 關於 行爲의 改善勸告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小賣業者는 開店일까지 通商産業省令에서 定하는 時각(오후 6시) 이후를 閉店時각으로 하는 자 및 通商産業省令에서 定하는 日數(월 4일) 미만을 휴업일수로 定하는 자는 閉店時각 及 휴업일수를 通商産業代新에 對 申告하여야 하고, 閉店時각의 延長 及 휴업일수의 감소가 위의 기준을 未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第9條).

이러한 申告에 關하여는 前술한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者의 營業에 關係되는 申告에서 定하고 있는 變更勸告 及 變更命令制度가 準用되어 ‘閉店時각을 단축하거나 휴업일수를 증가시킬 것’을 勸告하거나 命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百貨店法에 있어서 政令이 定하는 時각 이후의 營業의 금지 及 휴업일의 설정이 의무지워져 있었던 것에 대응하는 것 이지만, 제도로서는 상당히 彈力性을 갖게 되었다. 이는 수퍼마켓의 종래의 營業活動을 전제로 하여 이와의 調整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者의 顧客의 送迎 기타 營業에 關於 行爲가 ‘그 주변 의 中 小 小賣業의 事業活動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中 小 小賣業의 維持·育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通商産業大臣은 ‘그 營業에 關於 行爲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가 된 때’에는 곧 公表하도록 하고 있다(第10條). 이러한 제도는 百貨店法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通商産業代新의 前述적 權限에 속하는 勸告權을 定한 것이다.

본래 中 小 小賣業에 影響을 미치고, 中 小 小賣業의 維持·育成을 위하여 특히 規制가 必要하다고 判定되는 行爲는 ‘公正한 競爭을 阻害할 우려가 있는 行爲’로서 성격지워지며, 일반적으로 獨占禁止法上 이른바 ‘不公正한 去來方法’에 해당하는 行爲로 된다. 大規模小賣店鋪法은 형식적으로는 中 小 企業保護라고 하는 견지에서의 規制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獨占禁止法에 의한 規制와 중복되는 部分이 많다고 하겠다.

이 제도에 의한 극히 광범위한 規制權限은 한편으로 消費者의 利益保護에 대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쟁제한적인 방향으로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규제차원에서 행사될 필요가 있다.¹⁵⁾

4. 大規模小賣店舖法の 問題點

수퍼마켓, 擬似百貨店과 종래의 백화점을 포함하여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大規模小賣店舖法은, 백화점과 擬似百貨店 간의 規制側面에서의 不均衡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百貨店法에서 보여졌던 경쟁제한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참가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희석시켜 주고 있다. 大規模小賣店舖라고 하는 것이 顧客誘引의 중요한 동기요인이며, 또한 그것이 경쟁상 우위로 이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中小企業의 保護가 필요하다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大規模小賣店舖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소매업자 특히 고객이 감소하는 소매업자라고 한다면, 상권의 확대와도 관련하여 사전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일응 大規模小賣店舖가 경쟁의 장에 있어서 달성하는 기능과 大規模小賣店舖法이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大規模’라고 하는 개념요건으로서 ‘企業規模’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大規模小賣店舖 자체가 갖는 문제의 하나는 경영규모이다. 예를 들어 개개의 점포는 크지 않더라도 그 지점망을 관리함으로써 용이하게 中小小賣商에게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대규모소매업자의 힘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法에서는 일단면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競爭의 場의 秩序와 관련하여 이른바 市場支

15) 正田 彬, 前掲論文, 224~225頁.

配力과의 관계이다. 카르텔적 혹은 트러스트적 결합의 경우에는 獨占禁止法에 의한 一般的 規制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매업계에 관하여는 경영규모가 큰 것 그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中小小賣業者의 保護의 문제인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競爭秩序의 문제인 것이다.

競爭秩序는 적어도 현실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實態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소매업계에 있어서의 시장 -競爭의 場-이 일정한 지역과 결합하고 소규모소매업자를 構成因子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역적인 경쟁의 장에 있어서의 경쟁질서를 우선적인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각각의 小賣市場은 지방에 따라 또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장의 성격에 대응한 경쟁질서를 전제로 하여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은 大規模小賣業者가 각각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그 경영규모의 여하에 따라 경쟁상 우위에 서는 것은 小賣業界의 特殊性에 비추어 상당히 蓋然性이 높다는 점도 競爭制限과 결부하여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지역 시장을 전제로 하여 競爭秩序의 維持와 經營規模의 擴大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무작정 보호되고 특히 소규모 경영이 그대로 온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大規模小賣業者와 中小專門店 및 生業的 小規模小賣業者는 서로 뒤엎혀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지만, 流通産業의 發展方向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규모의 사업자가 어떠한 형태로 서로 뒤엎히든 간에 競爭秩序의 維持가 그 전제로 되어야 하며, 경쟁질서유지를 위하여 소매업자의 규모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大規模小賣業者가 개개의 地域市場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유지하고자 經營規模를 확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市場支配的 小賣

業者로서 성격지워지는 경우 경영규모의 확대에 대한 저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시장에 있어서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經營主體의 힘이 문제가 되며, 경쟁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店舖의 新設·擴張 등에 대하여 規制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즉 일정한 점포의 크기, 경영규모, 점포의 수 등이 당해 지역시장과의 관계에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競爭秩序維持의 입장에서 경영규모(점포의 크기, 수 등을 포함) 자체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⁶⁾

III.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1. 序 說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은 小賣業者의 사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小賣商業의 정상적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中小小賣商業의 調整法規이다. 이 法은 1959년에 制定되어 현재까지 6차례 (1962년, 1973년, 1977년 6월 3일, 1977년 6월 25일, 1978년 7월, 1978년 11월)의 改正을 거쳤으며, 總25條 附則12條로 되어 있다.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은 1959년에 百貨店法 문제가 일응 결착된 후 購買會, 小賣市場 등과 中小商業者와의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法은 여타의 中小小賣業關聯立法이 中小小賣業者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行政廳의 介入에 의한 紛爭解決을 피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2.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成立背景

第2次 世界大戰 후 경제가 황폐화하여 經濟統制立法이 規制의 意義를 상실함과 동시에 財閥의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舊百貨店法이 폐지되었으

16) 正田 彬, 前掲論文, 225~228頁.

나, 6.25特需를 전후로 百貨店과 中小小賣業者의 경쟁이 격화되어 1956년 新百貨店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中小小賣業者와 관계된 문제로서 小賣市場의 問題, 製造業者·都賣業者 등 다른 사업분야로부터의 參入問題, 소비생활협동조합·農協·購買會 등과의 摩擦問題 등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¹⁷⁾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제정후 약20여년이 지나는 가운데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대형수퍼마켓 등 大規模小賣店舖의 출현 증가 및 中小都市으로의 진출로 상대적으로 경제조건이 열세에 있는 中小小賣業者가 경영상 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 大規模小賣店舖 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중소소매업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에 大規模小賣店舖法의 개정과 아울러 小賣商業調整特別法の 개정이 있었던 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¹⁸⁾

① 第3條의 許可制의 대상이 되는 소매시장의 정의를 종래 ‘하나의 건물내에 店舖面積이 50평방미터 미만의 10이상의 소매업자에 대하여 店舖用으로 제공되는 것’에서 ‘하나의 건물내에 店舖面積의 대부분이 50평방미터 미만의 10이상의 소매업자에 대하여 店舖用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통상 3분의 2 이상)’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소매시장의 실태를 반영함.

② 大企業者の 소매업의 개시 또는 확대에 관한 조사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에 商店街振興組合, 商店街事業協同組合, 小賣市場內小賣商業協同組合(각각 연합회 포함)을 추가하여 종래의 업종별 분쟁 뿐만 아니라 수퍼마켓 등 각종 販賣業者와 주변의 상점가 등과의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함(第16條의 2 내지 第16條의 7).

17) 松山隆英, 前掲論文, 352頁.

18) 沈炳燮 譯, 전계논문, 45~49면 참조.

3.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主要內容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은 小賣業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고 小賣商業의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購買會事業의 規制(第2條), 小賣市場의 規制(第3條 내지 第13條), 製造業者·都賣業者의 小賣業兼業禁止(第14條) 및 中小小賣業者와 기타의 者間의 紛爭處理(第15條 내지 第18條)를 규정하고 있다.

1) 購買會事業의 規制

都道府縣知事は 購買會에 대하여 외부자이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부수적인 措置들을 취하도록 命할 수 있다(第2條).

2) 小賣市場의 規制

여기에서 말하는 小賣市場이란 하나의 建物內에 店鋪面積의 대부분이 50평방미터 미만 10이상의 小賣業者에 대하여 店鋪用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第3條).

小賣商業調整特別法에서는 政令이 指定하는 區域(全國 45個市)內의 建物에서 小賣市場을 開設하거나 小賣業者에게 賃貸·讓渡하는 床面積 또는 賃貸讓渡條件을 變更함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製造業者·都賣業者의 小賣業兼業의 規制

製造業者 또는 都賣業者가 政令이 指定하는 物品에 대하여 政令이 指定하는 地域에서 小賣業의 兼業을 開始 또는 廢止하는 경우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第14條).

4) 中小小賣業者와 기타의 者(小賣市場內의 中小小賣業者

포함)間의 紛爭處理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은 都道府縣知事が 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의 申請에 의하여 同種의 物品을 販賣하는 製造業者나 都賣業者 기타 中小小賣商 이외의 자와 中小小賣業者間에 또는 당해 小賣市場內의 中小小賣業者와 開設者 또는 주변 지역의 中小小賣業者間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斡旋, 調整 또는 勸告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4.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問題點

中小小賣業者와 大規模小賣業者 등 기타의 자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기타의 자가 보다 효율적인 經營形態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競爭原理의 尊重과 中小小賣業者를 위요한 混亂의 防止라고 하는 두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항상 해결하기 곤란한 과제로 남는다.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の 내용은 제정당시 百貨店法 問題에 대한 世人의 관심이 아직 식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競爭制限的 色彩가 강하다. 다만 그 후에 消費者物價의 上昇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등의 事情變更에 의하여 비교적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中小小賣業者를 위요한 분쟁은 地域社會次元의 정치적 분쟁으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명확하고 합리적인 解釋指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⁹⁾

IV. 中小小賣商業振興法

1. 序 說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은 1970년대를 전후한 政府의 유통시스템화정책에 따라 商店街의 整備, 店舖의 集團化, 共同店舖 등의 事業 실시를 원활히 하고 中小小賣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촉진함으로써 中小小賣商業의 振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中小小賣商振興法規이다.

19) 兵岡平一, “中小商業關係法”, 「流通産業關係法概說」, 同文館, 1974, 212頁.

이 法은 1973년에 制定되어 1991년에 처음으로 改正된 바 있으며, 總16條 附則 4條로 되어 있다.

중래에는 中小小賣商業만을 대상으로 하는 立法例(大規模小賣店鋪法, 小賣商業特別措置法, 商店街振興組合法)는 비교적 적었고 中小企業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立法措置(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中小企業團體의組織에 관한法律, 中小企業近代化促進法 등)가 中小小賣商業에도 적용되는 예가 많았다. 이에 대하여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은 中小小賣商業 전반을 대상으로 그 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立法例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²⁰⁾

2.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成立背景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政府의 流通政策이 1960년대 이전의 保護政策에 이은 近代化政策에서 시스템化로 전환되면서,²¹⁾ 中小小賣商業에 대하여도 종합적·체계적인 近代化를 실행하기 위하여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1960년대의 中小小賣商業에 대한 近代化政策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化, 즉, 종합적·체계적 振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中小小賣商業振興法 제정후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비자의 취향의 다양화 등 유통산업을 위요한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1991년 5월 綜合的인 流通對策을 마련하면서 大規模小賣店鋪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5個法을 制定 및 改正한 바 있다.²²⁾ 이 중 中小小賣商業振興法에 대하여는 최근의 유통업

20) 兵岡平一, 前掲論文, 197頁.

21) 田島義博, 「流通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87, 217~221頁 參照.

22) 세부적인 制定 및 改正 내역을 보면, 먼저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法律, 民間事業者의 能力의 活用에 의한 特定施設의 整備의 促進에 관한法律 및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의 一部改正이 있었고, 輸入品專門賣場의 設置에 관한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法律의 特例에 관한法律 및 特定商業集積의 整備의 促進에 관한特例法이 새로이 制定되었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소매상업자의 근대화·고도화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의 改正이 있었다. 1991년도 改正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²³⁾

(1) 支援對象 高度化事業計劃의 擴充

- ① 신규로 설립되는 상점가를 지원하는 “店鋪集團化計劃”의 신설
- ② 현행 店鋪共同化計劃에 상업기반시설 등의 정비 및 출자자가 입주하는 공동출자회사의 공동점포의 정비를 추가하는 “共同店鋪 등 整備計劃”의 확충
- ③ 조합 또는 공동출자회사가 행하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지원하는 “電子計算機利用 經營管理計劃”의 신설
- ④ 市·町·村 등도 참가한 상점가 등의 정비를 추진하는 “商店街整備 등 支援計劃”의 신설

(2) 高度化事業에 대한 支援策의 追加

- ① 設備近代化資金의 상환기간의 연장
- ② 中小企業信用保險의 별도 신설

3.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主要內容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은 中小小賣商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振興指針의 策定(第3條), 高度化事業實施의 圓滑化(第4條), 中小小賣商業의 經營近代化를 위한 施策의 擴充(第5條 第10條), 特定連鎖化事業의 運營의 適正化(第11條)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振興指針의 策定

通商産業大臣은 中小小賣商業의 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指針(振興指針)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第3條). 振興指針에는 經營近代化의 目標, 經營管理의 合理化, 施設 및 設備의 近代化, 事業의 共

23)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流通産業課, 前掲論文, 23, 30~31頁.

同化, 從事者의 福利厚生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진다.

2) 高度化事業 實施의 圓滑化

商店街整備事業, 中小小賣商業者의 店舖의 共同化事業 및 連鎖化事業에 대하여는 中小小賣商業者를 주된 構成員으로 하는 組合 등이 計劃을 작성하고 都道府縣知事 또는 主務大臣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第4條). 승인을 받은 高度化事業計劃에 따라 실시되는 高度化事業에 대하여는 金融上·稅制上 특별한 조치가 부여된다. 우선 金融面에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확보에 노력할 것이 정하여지며, 이에 근거하여 中小企業振興事業團 등의 融資에 特例가 부여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된다. 또한 稅制面에서는 일정한 資産에 대하여 特別償却이 인정됨과 동시에 特別土地保有稅의 課稅對象에서 제외된다.

3) 中小小賣商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위한 施策의 擴充

中小小賣商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小賣商業의 實態를 조사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꾀하기 위하여 研修事業의 實施 등에 노력할 것, 필요한 指導 및 助言에 노력할 것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訓示規定으로 정하여져 있다.

4) 特定連鎖化事業의 運營의 適正化

特定連鎖化事業이란 連鎖化事業 중 加盟者에게 商標나 商號를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加盟에 즈음하여 金錢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른바 프렌차이즈체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²⁴⁾ 中小小賣商業의 振興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特定連鎖事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本部事業者에 대하여 加盟契約前에 重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加盟豫定者에게 교부할 것 등을 의무지운 것이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主務大臣이 勸告 및 公表를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第11條).

24) 兵岡平一, 前掲論文, 213頁.

4. 中小小賣商業振興法の 問題點

中小小賣商業關係法規 전반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中小小賣商業의 近代化·合理化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政府의 助成措置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곤 하였다. 이와 아울러 中小小賣商業振興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결함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中小小賣商業振興法上 강구되고 있는 助成措置는 商店街의 整備, 店舖의 共同化事業 및 連鎖化事業 뿐이며, 同法上的 振興指針에 따라 中小小賣商業 전체의 合理化·近代化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同法을 주축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²⁵⁾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하여는 1991년의 改正에 의한 지원대상 고도화사업계획의 확충, 고도화사업에 대한 지원책의 추가 등으로 어느 정도 시정이 예상된다.²⁶⁾

V. 商店街振興組合法

1. 序 說

商店街振興組合法은 商店街가 공동구입, 공동보관, 공동선전, 상품권의 발행 등의 共同經濟事業 또는 아케이트 주차장의 설치 등의 환경정비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政府의 助成機能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法規이다. 이 法은 1962년에 制定되어 현재까지 4차례(1965년, 1974년, 1980년, 1981년)의 改正을 거쳤으며, 總94條 附則 16條로 되어 있다. 이 法은 다른 업종에 걸친 組合의 設立을 인정하고, 政府의 助成機能을 法으로 定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타의 법규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25) 上掲論文, 213~214頁.

26) 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流通産業課, 前掲論文, 23頁 參照.

商店街振興組合의 活動상황을 보면, 共同經濟事業에서는 福利厚生, 勞務問題 등이, 環境整備事業에서는 가로등, 아케이트의 설치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政府에 의한 商店街振興組合의 助成規定에 기초하여 1969년부터 全國聯合會가 행하는 商店街近代化를 위한 研究, 研修 등에 政府의 補助金이 지급되고 있다.

2. 商店街振興組合法의 成立背景

日本의 流通關聯政策의 展開를 보면 1960년까지는 中小商業者에 대한 保護政策 일변도였고, 1960년대에는 中小小賣業者의 近代化에 역점이 두어졌었으며, 1970년 이후 현재까지는 近代化의 추진과 병행하여 유통의 시스템화와 競爭秩序의 維持가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²⁷⁾ 1960년 전후의 流通政策 변화를 보면, 中小小賣商業의 일방적인 보호가 中小小賣業者의 經濟的 機能을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中小小賣業者의 經營體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共同化·協業化를 진흥·추진하고 中小小賣業者에 대한 指導 및 助成金의 支給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轉換이 中小小賣業者에 대하여 가시화된 것이 바로 商店街振興組合法인 것이다.²⁸⁾

3. 商店街振興組合法의 主要內容

商店街振興組合法은 中小小賣業者의 共同化·協業化를 추진하고 政府의 助成機能을 제고하기 위하여 商店街振興組合 및 그 聯合會의 設立 認定(第2條, 第34條~第41條), 商店街振興組合 및 그 聯合會의 設立要件 등(第3條~第12條 第20條~第33條), 商店街振興組合의 事業內容(第13條~第19條), 政府의 助成措置(第79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7) 田島義博, 前掲書, 209~224頁 參照.

28) 上掲書, 213~214頁.

1) 商店街振興組合 및 그 聯合會의 設立 認定

商店街振興組合法은 單位組合으로서의 商店街振興組合과 그 聯合會의 設立을 인정하고 있다(第2條).

2) 商店街振興組合의 設立要件

商店街振興組合은 商店街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小賣業 또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者(中小小賣商에 한하지 아니함)를 중심으로 하는 人的 結合體이다(第8條). 事業者 이외의 자(예를 들면 그 지역에 위치하는 不動產의 所有者)도 組合員資格이 있다.

商店街振興組合의 地區로 하여야 할 區域은 市 또는 都의 區域에 속하는 지역이어야 하고, 町·村의 區域에 속하는 지역을 그 地區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要件은 町·村에 있어서의 商工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指導組織으로서 존재하는 商工會와의 組織上 運營上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강구된 조치이다.²⁹⁾ 聯合會에 대하여는 市の 구역 전부 또는 商工會議所의 區域 전부를 地區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외에는, 특별한 地區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第11條).

3) 商店街振興組合의 事業內容

商店街振興組合의 事業은 共同購入, 共同保管, 共同運送, 共同宣傳, 티켓商品卷의 發行 등의 共同經濟事業과 아케이드, 주차장의 設置 등의 環境整備事業이다.

4) 政府의 助成措置

商店街振興組合法은 政府가 組合事業의 維持·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을 支給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第79條).

29) 兵岡平一, 前掲論文, 212頁.

4. 商店街振興組合法의 問題點

商店街振興組合은 商店街라고 하는 地域集團에 주목하였다는 특색이 있지만, 현재의 活動상황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金후 商店街間의 競爭 혹은 商店群間의 競爭이 한층 격해져 가는 것을 고려할 때, 健全한 政府補助金을 바탕으로 하여 商業機能 및 서비스 機能의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³⁰⁾

〈表〉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規

業態	法律名	制定 및 改正年度	制定目的	主要內容	備考
都賣業	都賣市場法	· 1971年 制定 · 1978年, 1980年 및 1986年 改正	· 都賣市場의 整備를 촉진하고 적정 健全한 運營 確保 · 生鮮食料品 등의 去來의 適正化 및 生産·流通의 원활화 도모	· 基本方針 · 中央都賣市場 · 地方都賣市場 ·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	
小賣業	大規模小賣店 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 活動의 調整에 관한法律	· 1973年 制定 · 1978年, 1983年 및 1991年 改正	· 消費者利益의 保護 · 大規模小賣店의 活動 制限 · 中小小賣商의 活動領域 確保	· 大規模小賣店鋪의 小賣業 活動 調整	調整 法規
	小賣商業調整 特別措置法	· 1959년 制定 · 1962年, 1973年, 1977年 6月 3日, 1977年 6月25日,	· 小賣商의 事業活 動機會 確保 · 小賣商業의 秩序 沮害要因 除去	· 販賣事業의 規制 · 小賣市場의 許可	

30) 上掲論文, 208頁.

業態	法律名	制定 및 改正年度	制定目的	主要內容	備考
		1978年 7月, 1978年 11月 改正			
	中小小賣商業 振興法	• 1973年 制定 • 1991年 改正	• 商店街의 整備, 店舖의 共同化 등 사업실시 원 활화 • 中小小賣業者의 經營近代化 促 進	• 振興指針 制定 • 高度化事業에 관한 助成 • 特定連鎖化事業 의 運營 適正化 • 기타 振興策 (訓示規定)	振興 法規
	商店街振興組 合法	• 1962年 制定 • 1965年, 1974年, 1980年 및 1981 年 改正	• 商店街에서 小賣 商 등이 協同하 여 經濟事業을 행하고 당해 지 역 환경의 整備 • 改善을 도모 하기 위한 사업 을 행함에 필요 한 組織 등에 대하여 정함		

第5章

美・日構造協議와 日本の 流通關係法制

- I. 美・日構造協議의 概要/89
- II. 美・日構造協議 중 流通部門/94
- III. 美・日構造協議에 따른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改正/98

第5章 美・日構造協議와 日本의 流通關係法制

I. 美・日構造協議의 概要

1. 美・日構造協議와 슈퍼 301條

美・日構造協議는 構造的 障壁에 관한 發議(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s ; SII)의 통칭으로서, 1989년 7월 와루소정상회담 때의 美・日 首腦會談에서 그 開始가 合意되었다.

美・日構造協議가 개시되게 된 것은 미국이 1988년에 성립한 綜合通商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서 신설된 슈퍼 301조(정확하게는 1974년 通商法 第310條)에 기초하여 일본을 '優先적으로 交渉할 나라'의 하나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슈퍼 301조는 美國通商代表部(USTR)에 대하여 相對國에 貿易自由化를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나라 가운데 교섭대상국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1989년 및 1990년의 두 해에 걸쳐 '外國貿易障壁年次報告書'를 의회에 제출하며, 당해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美國의 輸出增大를 저해할 현저한 潛在力이 있는 주요한 장벽 및 무역왜곡관행을 포함한 우선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慣行' 및 '우선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나라'를 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外國貿易障壁年次報告' 자체는 매년 작성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으며 특별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USTR는 지정된 나라나 관행에 대하여 1974년 通商法(이하 '美國通商法'이라 함) 제302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하며, 지정된 나라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사개시후 3년 이내에 우선적 관행을 철폐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補償하는 것 또는 3년의 기간에 걸쳐 당해 價行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協定の 締結을 교섭할 것이 의무지워져 있다(美國通商法 第310條(c)(1)).

1989년 4월에 발표된 USTR의 外國貿易障壁年次報告에서는 일본에 대하여 34개 항목의 貿易障壁을 지적하였는데, 이 중에는 ‘流通制度, 마케팅規制, 大規模小賣店鋪法’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5월에 USTR은 슈퍼 301조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교섭할 나라’로서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함께 일본을 지정하였다. 한편 일본에 있어서 ‘不公正한 貿易慣行’으로 지정된 것은 인공위성, 슈퍼컴퓨터, 목재제품의 3항목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항목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어 미국정부로서도 대응에 고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貿易不均衡의 원인은 미국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고, 설사 일본측에 市場接近沮害要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불균형의 시정책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본적인 商慣行의 존재는 역사적·문화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일본시장에서는 동일한 條件下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강하였다. 그러므로 쌍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전술한 3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한 슈퍼 301조의 적용을 유보함과 동시에, 슈퍼 301조의 範圍外에서 美·日雙方이 相對國에 대하여 構造的 障壁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그 개선에 노력한다고 하는 構造協議方式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¹⁾

2. 美·日構造協議의 背景

美·日間에는 60년대부터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품목에 대한 협상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무역마찰과

1) 上杉秋則, “日·美構造協議と日本の流通への問題指摘”,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52~53頁; 松下滿雄, “日·美構造問題協議と經濟制度調整”, 「ジュリスト」, No. 965, 1990. 10. 15, 15~17頁.

관련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별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美·日 兩國政府가 교섭하는 형태로 행하여져 왔다. 그 때문에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이 輸出自主規制를 중심으로 한 管理貿易의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향이 많았다. 요컨대 종래 미·일 무역마찰과 관련한 협상은 일본으로부터의 특정제품의 對美輸出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특색이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일본의 대미수출에 있어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는데, 예컨대 반도체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迂廻貿易의 용이성으로 인한 제 3국 경유, 수량제한, 제 3국에의 수출가격 뿐만 아니라 일본의 세계 반도체시장의 賣出占有率目標가 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特定分野選別(Market Oriented Sector Selective ; MOSS)協議라고 불리우는 방식이 도입되어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분야만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교섭이 이루어지는 構造協議方式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²⁾

3. 交渉內容의 變化

미·일무역마찰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미국측 대응방식을 본다면, 미국측은 대미수출에 있어서의 덤핑, 수출보조금, 수입급증 등을 이유로 한 回避條項(Escape-Clause)의 發動과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되는 일본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시장에 不公正한 手段을 사용한 대미수출에 대하여 事後的으로 制裁를 과하는 전통적인 GATT體制下的 방식으로부터 진일보하여 貿易相對國에 있어서의 不公正貿易의 원인이 되는 慣行 자체를 事前에 문제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不公正手

2) 上杉秋則, 前掲論文, 53~54頁.

段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변화하고 있다. 經濟의 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순수한 國內問題로 취급되어 왔던 부분들이 國際問題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制裁의 방식도 변화하여 왔다. 전통적으로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수출한 品目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利益相當分만 關稅의 賦課라고 하는 형태로 相計하면 족하였다. 즉 덤핑이나 輸出補助金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덤핑마진이나 輸出補助金相當分에 대한 關稅를 納付하고 競爭力이 있다면 수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貿易相對國 자체의 不公正한 貿易慣行은 이와 같은 相計方式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는 報復措置를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복의 대상은 이른바 '交叉品目', 요컨대 당해 품목이 아니라 보복수단이 될 수 있는 한 어떠한 對美輸出品目도 가능하다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貿易相對國에서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채용되고 있는 경우 利益相當分の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복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당해 相對國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는 충분한 抑制效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본래 違法行爲가 있다면 行爲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利益相當分에 대하여는 關稅를 賦課하는 것이 輸出에 있어서 涉外的 性格을 감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은 행위에 涉外性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조치를 후퇴시킬 수 없을 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슈퍼 301조에 근거하는 조치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특정의 품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流通이라는 制度까지 문제삼고 있으며 100%의 輸入關稅 등 일방적 보복조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여 온 데는 GATT에 근거한 전통적인 구제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미국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 첫째, 덤핑에 대하여 덤핑마진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是正措置로서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사고방식이다. 相計라고 하는 방식은 덤핑이

인정되는 경우 수출가격을 시정한다면 곧바로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을 인정하여도 특별한 손해는 없다. 즉 미국측 견해로는 덤핑이라고 하는 위법행위 또는 국제적인 룰에 반하는 행위의 존재가 인정된 후에 이를 시정하여 국내출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덤핑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시장메카니즘下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외의 不當한 혹은 不公正한 원인에 의한 廉價販賣를 모두 덤핑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

둘째, 어떠한 형태의 덤핑이라도 덤핑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다른 市場에서 얻어진 利潤을 당해 市場에 주입하거나 政府로부터 有形·無形의 利益을 부여받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사실상 그렇지 아니하다면 조직적인 덤핑은 불가능하다. 相計關稅는 수출보조금부수출에 대하여 그 금액을 상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이것도 정부가 일종의 덤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출보조금이나 타시장에서 얻어진 이익만이 덤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의 카르텔이익, 수출에 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여되는 補助金, 각종의 企業優待措置 등 자기의 경영노력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획득하는 이익은 모두 광의의 덤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가 행하여진다면 貿易相對國 등에서 이에 대항한 조치를 채택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經濟의 國際化가 진전함에 따라 종래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효과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고려되어 왔던 産業育成措置나 弱者救濟行爲가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의 國際化에 따른 공정한 貿易慣行을 확립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이유로 美·日兩國에 있어서의 競爭規則의 共通化가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³⁾

3) 上杉秋則, 前掲論文, 54~56頁.

II. 美·日構造協議 중 流通部門

1. 美·日構造協議에 따른 兩國의 措置

美·日構造問題協議는 형식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美·日共同作業 그룹이 일본 및 미국에 있어서의 무역을 저해하는 構造要因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보고서를 각각 부시 미국대통령과 海部 일본수상에게 제출하고, 양국 首腦들이 國內적으로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美·日 政府間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國際協定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國際協定 違反이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政治的 波及效果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對日制裁法案이 美議會에 제출되거나 Super 301조의 연장 또는 Regular 301조외 발동이 행하여지는 등의 사태가 예상된다.⁴⁾

美·日構造問題協議는 '貿易收支의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貿易과 國際收支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構造問題를 선별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양국이 취한 조치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1차년도에 3회, 2차년도에 年 2회 檢討를 행하고 3차년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兩國이 취하기로 한 조치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⁵⁾

1) 日本側의 措置

(1) 貯蓄·投資패턴

일본의 저축율이 높아 소비가 적다는 것, 사회간접자본이 불충분하다는 것, 공공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었으며, 이에 대한

4) 松下滿雄, 前掲論文, 17頁.

5) 數中三十二, "日·美構造問題協議 - その今日的意義·特色及び法的地位づけ", 「ジュリスト」, 第965號, 1990.10.15, 49~50頁; 松下滿雄, 前掲論文, 17~18頁.

대책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430조円의 공공투자를 행하도록 함.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정비 등 생활관련시설의 정비 등 8개 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을 상회하는 정비계획을 책정하는 것 등을 대책의 내용으로 함.

(2) 土地利用

지가의 양등에 의하여 택지의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취득이 곤란하며 이것이 소비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토지이용의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이러한 대책중에는 土地收用制度의 적극적인 활용, 借地借家法 개정, 市街化地域內 농지의 택지화의 추진 등이 포함됨.

(3) 流 通

수입관련사회간접자본의 확대, 통관절차·수입절차의 신속화 추진, 유통관계규제의 완화, 상관행의 개선 등.

(4) 排他的 去來慣行

이 분야에 있어서의 대책으로는 獨占禁止法의 강화, 행정지도 등 정부관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민간기업에 대한 내외무차별적인 조달활동의 장려, 특허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비롯한 특허심사처리의 촉진 등이 포함됨.

(5) 系列關係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이 일본에서의 거래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한 獨占禁止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公正去來委員會는 사업자간 거래관행의 계속성과 배타성에 대한 指針(Guide-line)을 책정하도록 함. 이와 함께 外換管理法상의 외국기업의 대일투자에 대한 事前申告制를 국가안전보장 및 OECD자본자유화규약상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事後申告制로 변경할 것을 검토함.

2) 美國側의 措置

(1) 貯蓄·投資패턴

연방재정적자의 축소 및 저축률 증대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적극 노력함.

(2) 企業의 投資活動

공동개발·공동생산에 대한 美國獨占禁止法上 3배배상제도의 적용 배제, 제조물책임제도의 개선 등.

(3) 企業行動

연방정부의 미국기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책정·장려 등.

(4) 政府規制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 ; COCOM) 규정에 근거한 수출규제의 완화 및 철강수출자주규제 등의 점진적 폐지.

(5) 研究開發

민생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확충.

(6) 輸出振興

수출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출관계정보 제공 등.

(7) 勞動力 教育 및 訓練

미국 노동력의 교육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조치의 강화.

2. 流通部門과 關聯한 日本側의 措置

日本의 措置 중 流通과 關聯된 措置로는 輸入關聯社會間接資本(空港, 港灣, 道路整備計劃 등) 擴充, 通關節次 輸入節次의 迅速化 推進, 流通關係規制의 緩和 및 商慣行의 改善 등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에 의하여 상향조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강매당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일본의 유통문제에 관한 요구는 이미 일본에서 일찌기 제기되었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중 制限의 去來環境과 反競爭의 行爲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는 다음과 같다.⁶⁾

1) 制限的 去來環境

過剩的인 政府規制가 수입절차와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시장에의 신규참입비용을 증가시키며 참입기회를 좁힌다는 미국측의 지적 및 이에 대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1995년까지 수입절차와 유통에 관한 제한적인 법률 및 규제의 제한완화계획의 제시가 이러한 요구의 주요 골자였다.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으로 트럭운송업의 과잉규제의 폐지, 酒稅法 등에서 보여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잡한 규제의 폐지 및 大規模小賣店鋪法에 의한 규제의 단계적 폐지이다. 이 중 大規模小賣店鋪法의 완화는 美·日構造協議에 있어 특히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미국측은 大規模小賣店鋪法을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대의 障礙要因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대하여, 일본측은 중소소매업자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特例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하여 일본은 大規模小賣店鋪法上的의 출점조정처리기간의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조치를 즉각 실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하고 나아가 개정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大規模小賣店鋪法의 존속을 전제로 하면서 특정지역에 관한 규제의 철폐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2) 反競爭的 行爲

미국측은 反競爭的 行爲에 관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일본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판매촉진의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차별적 제품표준을 두도록 하

6) 小島康裕, “市場法, 商事契約法および消費者保護法”, 「法學」, 第54卷, 1991, 1030~1035頁; 數中三十二, 前掲論文, 50頁 參照.

며 경쟁업자의 제품을 유통경로로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급업자와 계약한 유통업자에 대한 공급정지, 리베이트 또는 반품의 악용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이러한 점은 법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며 법개정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미·일 공통의 인식하에, 신규참입에 대하여 不當景品類및不當表示防止法과 公正競爭規約에 기초한 경품규제 및 광고규제 등이 과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운용함과 동시에, 상관행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도록 獨占禁止法の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토록 하였다.

III. 美·日構造協議에 따른 大規模 小賣店鋪法の 改正

1. 概 要

美·日構造協議 중 유통부문에 있어서 일본정부규제의 상징적인 것으로 大規模小賣店鋪法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1990년 6월에 완성된 최종보고서에서는 大規模小賣店鋪法에 대하여 현재의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유통업의 활성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점포의 개점을 위한 원활한 절차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규제완화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규제완화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채택되었다.⁷⁾

① 大規模小賣店鋪의 출점조정절차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신규점포의 개점 및 기존점포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부터 다음의 운용적정화조치를 실시한다.

7) 松山隆英, “流通に關する政府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356~357頁.

- i) 출점조정처리기간의 단축(1년반 이내)
 - ii) 수입품매장에 대하여는 점포면적의 일정증가(100평방미터 이하)는 조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iii) 점포면적의 일정증가(현점포면적의 10% 또는 50평방미터중 작은 면적의 범위) 등은 조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iv) 개점시간, 휴업일수 등에 관한 규제대상범위의 완화
 - v) 출점조정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심의내용의 개시 등)
- ② 지방공공단체의 독자규제에 관하여는 ①의 조치와 아울러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③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배려, 절차의 신속성·투명성의 확보, 수입확대에 관한 국제적 요청에 대한 배려 등의 관점에서 大規模小賣店鋪法을 개정하고 나아가 개정 2년 후에 다시 재검토한다.

2. 大規模小賣店鋪法の 改正內容

전술한 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에 입각하여 大規模小賣店鋪法の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1991년 5월에 성립하였다. 法改正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⁸⁾

- ① 출점조정처리기간을 1년이내로 단축한다(第4條 내지 第6條 참조).
- ② 절차의 명확성·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업활동조정협의회(상조협)를 폐지하고, 大規模小賣店鋪審議會에서 조정을 행한다(第7條).
- ③ 대형점에 있어서의 수입품매장의 신·증설에 관하여 점포면적 1,000평방미터까지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족하도록 하고 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독자규제의 억제를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법적조치를 강구한다(第15條의 5).

8) 上掲論文, 357~358頁.

- ⑤ 第1種大規模小賣店鋪와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와의 境界面적을 1,500 평방미터(정령지정도시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동 6,000평방미터)로 인상한다(第3條 第1項).
- ⑥ 改正法の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재검토를 행한다(附則 第2條).

第6章

結 論

1.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103
2. 日本의 都·小賣業者關係法制/103
3. 우리나라의 都·小賣業關係法制/104
4. 우리나라 流通産業의 問題點 및 都·小賣業
關係法制의 整備方向/104
5. 國內流通市場開放의 現況 및 問題點/105
6. 國內流通市場開放과 美·日構造協議의 示唆點/105

第 6 章 結 論

1.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規制

流通活動에 대한 法的 規制는 유통활동의 實質的 自由를 보장하기 위한 公正競爭의 촉진, 消費者의 特殊性을 고려한 消費者保護, 小規模流通業者를 보호하기 위한 都·小賣業 활동의 調整 및 振興 기타 商品의 特性에 대한 고려 등의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 중 都·小賣業關係法規는 유통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中間商 즉, 都·小賣業의 調整 및 振興에 관한 法規로서 유통관계법제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2.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

日本의 都·小賣業 고유의 關係法規로는 먼저 都賣業과 관련하여서는, 都賣市場法이 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시장에서의 도매 기타 거래에 관한 규제, 도매시장의 정비 촉진 및 도매시장 운영의 적정성 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생선식료품 등의 거래의 적정화와 그 생산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小賣業에 대하여는 調整法規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규모소매점의 활동을 제한하여 중소소매업자의 활동영역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大規模小賣店鋪法과 중소소매업자의 사업활동기회를 확보하고 소매상업의 질서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이 있다. 그리고 振興法規로는 상점가의 정비·점포의 공동화 등 사업의 실시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소매업자의 경영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中小小賣商業振興法과 상점가에서 소매업자 등이 협동하여 경제사업을 행하고 당해 지역 환경의 정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직 등을 정하고 있는 商店街振興組合法이 있다.

3. 우리나라의 都·小賣業關係法制

우리나라의 都·小賣業 高유의 關係法規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과 도·소매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都·小賣業振興法이 있다. 이 중 農水產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은 일본의 都賣市場法과 유사한 법률로서 農水產物을 거래하는 都賣市場의 開設 및 運用 등에 관한 規制措置를 정하고 있으며, 都·小賣業振興法은 舊市場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 법률로서 도·소매업 전반에 걸친 規制 및 支援措置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都·小賣業關係法規는 消費者保護, 流通構造合理化 또는 流通產業近代化 및 國內流通市場의 開放이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 및 보완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4. 우리나라 流通產業의 問題點 및 都·小賣業關係法制的 整備方向

우리나라 流通產業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規模의 零細性, 流通經路의 多樣複雜性, 低資本 및 資本의 前近代性, 關係制度의 未備 및 商去來의 不當한 慣行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단계를 한발 앞서 겪었던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는 우리나라 도·소매업관계법제의 개선·보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都賣業의 경우 도매시장의 정비촉진 및 도매시장 운영의 적정성·건전성 확보, 小賣業의 경우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소매점의 조정 및 중소소매업의 진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관계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이러한 요구들을 法制度의 측면

에서 비교적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日本의 都·小賣業關係法制를 하나의 주요한 先例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國內流通市場開放의 現況 및 問題點

國內流通市場의 開放要求와 관련하여 政府는 1984년 7월 제1단계로 유통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작년 7월 제2단계의 유통시장개방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1993년에는 매장면적과 점포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措置와는 별개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이 타결되거나 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개방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해올 것은 자명하다. 流通市場의 開放은 물론 ①새로운 업태의 도입 촉진 및 이와 관련한 지식 및 노우하우의 습득, ②국내상품 공급업체의 상품공급의 원활화 및 이윤 증가, ③산업의 경쟁촉진으로 인한 효율성의 제고, 원가절감 및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 ④유통관련산업의 성장 촉진, ⑤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 반면에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개방된다면 ①국내의 영세한 소규모유통업자의 도산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 ②외국소비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사치성 소비 및 문화적 공해의 유발, ③대규모외국유통업자의 국내진출로 인한 독점이윤과 개발이윤의 발생 등 否定的인 側面이 앞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아니하다.

6. 國內流通市場開放과 美·日構造協議의 示唆點

국내유통시장의 개방에 있어,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는 美國 등으로부터 賣場面積과 店鋪數에 대한 制限 및 開放例外品目에 대한 規制緩和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都·小賣業振興法上的의 流通市場參入制限 철폐,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의 엄격한 適用

등 現行 流通關係法規의 改正 및 運用에까지도 要求를 확대할 可能性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最近 美·日貿易摩擦 解決方案의 일환으로 進行되 었던 美·日構造協議에 관한 報告書는 우리나라가 곧 직면하게 될 미국 等 先進국과의 本格적인 經濟構造의 調整에 관한 協議에 대비하여 미국 等 先進국의 要求事項을 예측하고 우리의 對應措置를 준비함에 있어 요 긴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I. 國內文獻

1. 單行本

- 金基洪·申鉉秀, 「UR/서비스協商과 都·小賣業市場開放」, 產業研究院, 1991. 4
- 宋瑢燮, 「現代마케팅論」, 法文社, 1991.
- 安台鎬, 「마케팅 原論」, 法文社, 1991.
- 林鐘仁·宋世煥, 「韓·美·日 流通産業의 構造分析—流通環境 變化에 따른 發展方案—」, 產業研究院, 1988.
- 趙炳澤·李永俊, 「日本の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水產物流通構造改善對策白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2. 5.
- 韓義泳, 「마케팅 原論」, 茶山出版社, 1991.
- 黃迪仁·權五乘, 「經濟法」, 法文社, 1991.

2. 論文·資料

- 金永秋, “우리나라의 流通關係法制 概觀”, 「법제」, 통권 제57호, 법제처, 1981. 9. 10.
- 南逸聰, 「流通市場開放의 展望과 對應課題」, KID 分期別 經濟展望, 韓國開發研究院, 1991. 4. 4.
- 申瑛澈,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法制資料」, 第121輯, 法制處, 1981. 12.
- 沈炳燮 譯,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및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의 改正法律”, 「최근외국입법동향」, 제34호, 法制處, 1979.

韓功植, “流通産業開放擴大에 따른 影響과 그 對應方案”, 「立法調査月報」, 國會圖書館, 1992. 5.

II. 日本文獻

1. 單行本

金澤浪雄, 「經濟法」, 法律學全書 52-I, 有斐閣, 1980.

令本成和外, 「註解 經濟法(上)・(下)」, 青林書院, 1985.

流通經濟研究所, 「流通ハンドブック」, 日本經濟新聞社, 1972.

E. バッツア・鈴木 武, 「流通構造と流通政策 -日本と西ドイツの比較-」, 東洋經濟新報社, 1984.

長谷川古・伊從 寛,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80.

田島義博, 「流通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87.

通商産業省商政課, 「90年代流通ビジョン」, 通商産業省商政課, 1989.

2. 論文・資料

建林正彦, “小賣流通政策の形成過程(一)・(二)”, 「法學論叢」, 第129卷 第536號, 1992. 1, 2.

浜岡平一, “中小商業關係法”, 「流通産業關係法概説」, 同文館, 1974.

上杉秋則, “日・美構造協議と日本の流通への問題指摘”,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小島康裕, “市場法, 商事契約法おとび消費者保護法”, 「法學」, 第54號, 1991.

松山隆英, “流通に關する政府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出版, 1992.

松下滿雄, “日・美構造問題協議と經濟制度調整”, 「ジュリスト」, No. 965, 1990. 10. 15.

- 數中三十二, “日・美構造問題協議 —その今日的意義・特色及び法的地位
づけ, 「ジュリスト」, 第965號, 1990. 10. 15.
- 矢部丈太郎, “マーケティングと競争政策”,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
際商業出版, 1992.
- 鹽見 讓, “大店法の改正と小賣商業の將來展望”, 「法律のひろば」, Vol.44
No.6, ぎょうせい, 1991. 6.
- 伊從 寛, “流通問題に對する法規制”, 「流通問題と獨占禁止法」, 國際商業
出版, 1980.
- 正田 彬, “大規模小賣店の規制”, 「流通産業關係法概説」, 同文館, 1974.
_____, “流通産業に對する法規制の概要”, 「流通産業關係法概説」, 同文
館, 1974.
- 鷺野 宏, “市場關係法 —都賣市場法—”, 「流通産業關係法概説」, 同文館,
1974.
- 通商産業省産業政策局流通産業課, “大店法關連五法”, 「法律のひろば」,
Vol.44 No.8, ぎょうせい, 1991. 8.

資 料

- 都賣市場法/113
-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小賣業의事業活動의調整에 관한法律/136
-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146
- 中小小賣商業振興法/156
- 商店街振興組合法/164
- 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 중 競爭政策關聯部分/182
- 美・日構造問題協議 第1回 年次報告 중 競爭政策關聯部分/192

都賣市場法

1971年 4月 3日 制定 法律 第35號
1978年 7月 5日 改正法律 第87號
(農林省設置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附則 第17條에 의한 改正)
1980年 3月 31日 改正法律 第9號
(租稅特別措置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附則 第32條에 의한 改正)
1986年 12月 26日 改正法律 第109號
(地方公共團體의 執行機關이 國家機關으로서 行하는 事務의 整理 및 合理化에 관한 法律 第29條에 의한 改正)
1991年 5月 2日 改正法律 第59號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附則 第3條에 의한 改正)

目 次

- 第1章 總則(第1條~第3條)
- 第2章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등(第4條~第6條)
- 第3章 中央都賣市場
 - 第1節 開設(第7條~第14條)
 - 第2節 都賣業者 등(第15條~第33條)
 - 第3節 都賣去來(第34條~第47條)
 - 第4節 監督(第48條~第51條)
 - 第5節 雜則(第52條~第54條)
- 第4章 地方都賣市場
 - 第1節 開設 및 都賣業務에 관한 許可(第55條~第60條)
 - 第2節 業務에 관한 規制와 監督(第61條~第66條)
 - 第3節 雜則(第67條~第69條)
- 第5章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第70條~第71條)
- 第6章 雜則(第72條~第76條)
- 第7章 罰則(第77條~第82條)
- 附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都賣市場의 整備를 計劃의 으로 촉진하기 위한 措置, 都賣市場

의 開設 및 都賣市場에서의 都賣 기타 去來에 관한 規制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都賣市場의 整備를 촉진하며 그 適正하고 건전한 運營을 確保함으로써, 生鮮食料品 등에 대한 去來의 適正화와 그 生産 및 流通의 圓滑化를 도모함과 동시에 國民生活의 安定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生鮮食料品등”이라 함은 野菜, 果實, 魚類, 肉類 등의 生鮮食料品 기타 一般消費者가 日常生活에서 使用하는 食料品(一般消費者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기타 農畜水産物로서 政令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이 法에서 “都賣市場”이라 함은 生鮮食料品 등의 都賣를 위하여 開設되는 市場으로서 都賣場, 自動車駐車場 기타 生鮮食料品 등의 去來 및 入荷한 物品의 處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치하여 계속적으로 開場되는 것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 및 消費上 特別히 중요한 都市 및 그 周邊地域에서의 生鮮食料品 등의 圓滑한 流通을 確保하기 위하여 生鮮食料品 등에 대한 都賣의 中核의인 據點이 됨과 동시에 當해 지역외의 廣域에 미치는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의 改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第8條(開設의 認可)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 開設되는 都賣市場을 말한다.

④이 法에서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 이외의 都賣市場으로서 그 施設이 政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인 것을 말한다.

第3條 (名稱의 制限) ①中央都賣市場 또는 地方都賣市場의 名稱 중에는 中央都賣市場 또는 地方都賣市場이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②都賣市場에 있어서 中央都賣市場 또는 地方都賣市場이 아닌 것의 名稱 중에는 中央都賣市場 또는 地方都賣市場이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章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등

第4條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①農林水産大臣은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의 整備를 도모하기 위한 基本方針(이하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事項을 정한다.

1. 生鮮食料品 등의 需要 및 供給에 관한 長期展望에 의거한 都賣市場의 適正한 配置의 目標
2. 近代의인 都賣市場의 立地 및 施設의 種類, 規模, 配置 및 構造에 관한 基本的 指標
3. 都賣市場에서의 去來 및 物品의 荷役, 處理 및 保管 등의 合理化에 관한 基本的事項
4. 都賣業務(都賣市場에 出荷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그 出荷者로부터 都賣를

위한 販賣의 委託을 받거나 買受하여 당해 都賣市場에서 都賣하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하는 자의 經營規模의 擴大, 經營管理의 合理化 등 經營近代化의 目標

5. 기타 都賣市場의 整備에 관한 重要事項

③農林水産大臣은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流通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農林水産大臣은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5條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 ①農林水産大臣은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都賣市場의 整備를 도모하기 위한 計劃(이하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事項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1.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 및 消費上 특별히 중요한 都市로서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것의 名稱 및 그 取扱品目の 適正化 또는 그 施設의 改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中央都賣市場의 名稱

2. 取扱品目の 設定 또는 變更에 관한 事項

3. 施設의 改良, 造成 또는 取得에 관한 事項

4. 기타 中央都賣市場의 整備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

③農林水産大臣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流通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關係地方公共團體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農林水産大臣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한다.

⑤前3項의 規정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의 變更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6條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 ①都道府縣은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都道府縣에서의 都賣市場의 整備를 도모하기 위한 計劃(“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事項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 및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1. 그 區域 또는 그 區域을 分割하여 정하는 區域別의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事情에 적합한 都賣市場의 適正한 配置의 方針

2. 그 區域의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事情에 적합한 近代的인 都賣市場의 立地 및 施設의 種類, 規模, 配置 및 構造에 관한 指標

3. 都賣市場에서의 去來 및 物品의 荷役, 處理 및 保管 등의 合理化에 관한 事項

4. 기타 都賣市場의 整備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

③都道府縣은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都道府縣의

區域內的 地方自治法 第252條의 19(指定都市의 特例) 第1項의 指定都市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都道府縣은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農林水産大臣에 提出함과 동시에 그 內容을 公表하여야 한다.

⑤前 3項의 규정은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의 變更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 3 章 中央都賣市場

第 1 節 開 設

第 7 條 (開設區域) ①農林水産大臣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서 정하여진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都市 및 그 周邊地域에 있어서 그 區域內에서의 生鮮食料品 등의 流通事情에 비추여 그 區域을 일체로서 生鮮食料品の 流通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일정한 區域을 中央都賣市場開設區域(이하 이 章에서는 “開設區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農林水産大臣은 開設區域을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流通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關係地方公共團體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前 2項의 규정은 開設區域의 變更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 8 條 (開設의 認可)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地方公共團體는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 開設區域에서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할 수 있다.

1. 都道府縣 또는 政令에서 정하는 數 이상의 人口를 가지고 있는 市이며,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서 정하여진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都市 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管轄하는 것

2.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의 관한 事務를 共同處理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地方自治法 第284條(組合의 種類 및 設立)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一部事務組合이며, 前號에 계기하는 都道府縣 또는 市の 1 이상이 加入하고 당해 開設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管轄하는 地方公共團體만이 組織하는 것

第 9 條 (認可의 申請) ①前條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地方公共團體는 同條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事務規程 및 事務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申請書에 添附하여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事務規程에는 적어도 다음 각號에 계기하는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中央都賣市場의 位置 및 面積
2. 取扱品目
3. 開場의 期日 및 時間
4. 都賣業務에 관계되는 都賣去來의 決濟方法
5. 都賣業務를 행하는 자에 관한 事項

6. 都賣業務를 행하는 자 이외의 關係事業者에 관한 事項(이 章에서 業務規程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된 事項에 限한다)

7. 施設의 使用料

③第1項의 事業計劃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取扱品目別 供給對象人口 및 取扱하는 數量과 金額의 豫想
2. 施設의 種類, 規模, 配置 및 構造
3. 開設에 소요되는 費用 및 그 財源과 償却에 관한 計劃

第10條 (認可의 基準) 農林水産大臣은 第8條(開設의 認可)의 認可申請이 다음 各號에 제기하는 基準에 適合한 경우가 아니라면 同條의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申請에 관계되는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이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 適合한 것 일 것
2. 당해 申請에 관계되는 中央都賣市場이 그 開設區域에서의 生鮮食料品 등의 都賣의 中核的인 據點으로서 적절한 場所에 開設되고 상당한 規模의 施設을 가지는 것 일 것
3. 業務規程의 內容이 法令에 違反하지 아니하고 業務規程에 규정하는 前條 第2項 第3號 내지 第7條에 제기하는 事項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業務의 適正·健全한 運營을 確保한다는 견지에서 보아 適切하게 규정되고 있을 것
4. 事業計劃이 適切하고 그 수행이 확실하다고 認定되는 것일 것

第11條 (業務規程에 규정하는 事項 등의 變更) ①第8條의 認可를 받은 地方公共團體(이하 이 章에서는 “開設者”라 한다)는 第9條(認可의 申請) 第2項 各號에 제기하는 事項 또는 同條 第3項 第2號에 제기하는 事項의 變更(政令에서 정하는 경미한 變更은 除外한다)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條의 규정은 前項의 認可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12條 (開設促進 등의 勸告) 農林水産大臣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의 적정·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사전에 都賣市場審議會의 意見을 들어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서 정하여진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都市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管轄하는 地方公共團體 또는 당해 都賣의 周邊地域을 管轄하는 地方公共團體에 대하여,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을 촉진하고 일체로서의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거나 開設된 中央都賣市場의 位置, 規模 등에 관한 調整을 꾀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勸告할 수 있다.

第13條 (中央都賣市場開設運營協議會) 第8條(開設의 認可)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地方公共團體 또는 開設者는 中央都賣市場의 開設 또는 그 業務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調査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條例로써 中央都賣市場開設運營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協議會의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 協議會를 設置하는 前項의 地方公共團體 또는 開設者가 委囑한다. 이 경우 당해 地方公共團體 또는 開設者는 당해 中央都

賣市場에 관계되는 開設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管轄하는 다른 地方公共團體와 協議하여, 당해 다른 地方公共團體의 代表者 또는 職員을 協議會의 委員으로 委囑할 수 있다.

③前2項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協議會의 組織 및 運營에 필요한 事項은 協議會를 設置하는 第1項의 地方公共團體 또는 開設者가 條例로 정한다.

第14條 (廢止의 認可) ①開設者는 中央都賣市場을 廢止하려고 하는 때에는 農林水產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農林水產大臣은 中央都賣市場의 廢止에 의하여 一般消費者 및 關係事業者의 利益이 侵害될 우려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가 아니라면 前項의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節 都賣業者 등

第15條 (都賣業務의 許可) ①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農林水產大臣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項의 許可는 農林水產省令에서 정하는 市場(이하 이 章에서는 “市場”이라 한다) 및 農林水產省令으로 정하는 取扱品目の 部類(이하 이 章에서는 “取扱品目の 部類”라고 한다)別로 행한다.

第16條 (許可의 申請) 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各號에 記기하는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開設者를 經유하여 農林水產大臣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2. 法人인 경우에는 資本額 또는 出資額 및 任員의 姓名
3. 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아 都賣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市場 및 取扱品目

②開設者는 前項의 申請書를 受理한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者가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하는 것에 관한 意見을 添附하여 그 申請書를 農林水產大臣에 送達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申請書에는 農林水產省令에서 정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17條 (許可의 基準) ①農林水產大臣은 第15條 第1項의 許可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同項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申請者가 破產者로서 復權이 될 수 없는 者인 때
2. 申請者가 禁錮 이상의 刑에 처하여진 者 또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罰金의 刑에 처하여진 者로서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起算하여 3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인 때
3. 申請者가 第49條(監督處分)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받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起算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인 때
4. 申請者가 第49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받은 法人의 그 處

分을 받은 原因의 된 事項이 發生한 당시 그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으로서 在任한 者(당해 事項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者로서 그 趣旨을 疏明한 者는 除外한다) 또는 同項 第3號의 규정에 의한 解任命令을 받은 法人의 당해 命令에 의하여 解任되어야 할 者로서 이러한 處分日로부터 起算하여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인 때

5. 申請者가 法人이며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
6. 申請者가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가 아닌 때
7. 申請者의 純資産額이 그 申請에 관계되는 取扱品目の 部類에 대하여 第19條(純資産額)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純資産基準額(그 者가 다른 取扱品目の 部類에 대하여 第15條 第1項의 許可를 받고 있거나 申請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取扱品目の 部類 및 당해 다른 取扱品目の 部類에 대하여 第19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純資産基準額을 合算한 額)에 未達하는 때
8. 業務規程으로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하는 者의 數의 最高限度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許可를 함으로써 第15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이 章에서는 “都賣業者”라 한다)의 數가 당해 最高限度를 超過하는 때

②農林水産大臣은 第15條 第1項의 許可申請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同條의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申請者가 第25條(許可의 取消)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許可의 取消을 받고 그 取消日로부터 起算하여 1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인 때
2. 申請者가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開始하는 때에는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 間に 過度한 競争이 行하여지고 그 결과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의 適正하고 건전한 運營이 沮害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

③第1項 第7號의 純資産額은 資産의 合計金額으로부터 負債의 合計金額을 控除하여 얻은 額으로 하고 農林水産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다.

第18條 (處分節次) 農林水産大臣은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 또는 許可拒否處分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開設者의 意見を 尊重하여야 한다.

第19條 (純資産額) ①都賣業者의 純資産基準額은 取扱品目の 部類別로 中央都賣市場의 業務規模, 都賣業務를 행하는 者의 數의 最高限度 기타 事情을 고려하여 農林水産大臣이 정한다.

②農林水産大臣은 都賣業者의 純資産額이 그 者가 都賣業務를 행하는 取扱品目の 部類에 대하여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純資産基準額(그 者가 都賣業務를 행하는 取扱品目の 部類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各取扱品目の 部類에 대하여 同項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純資産基準額을 合算한 額)에 未達하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당해 都賣業者に 대하여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

를 命할 수 있다.

③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日로부터 起算하여 6月 이내에 당해 處分을 받은 자로부터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純資産額이 同項에서 規定하는 純資産基準額 이상의 額이 되었다는 趣旨의 申請이 있는 경우 그 申請이 상당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④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한 경우 그 處分을 받은 자로부터 前項의 期間內에 同項의 申請이 없는 때 또는 당해 期間內에 당해 申請이 있더라도 農林水産大臣이 이를 상당하다고 認定하지 아니하는 때(당해 期間內에 2 이상의 申請이 있었던 때에는 그 申請 전부에 대하여 農林水産大臣이 상당하다고 認定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期間經過 후 지체없이, 그 者에 관계되는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⑤農林水産大臣은 第2項 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處分の 相對方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을 두고 期日, 場所 및 處分の 原因이 된 이유를 通知하여 公開의인 聽聞을 행하며 그 者 또는 그 代理人이 證據를 提示하고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第17條(許可의 基準) 第3項의 規定은 第2項 및 第3項의 純資産額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20條(同前) ①都賣業者는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農林水産大臣에 대하여 그 純資産額을 報告하여야 한다.

②第17條(許可의 基準) 第3項의 規定은 前項의 純資産額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21條(營業의 讓渡, 讓受 및 合併) ①都賣業者가 營業(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都賣業務에 관계되는 것에 限한다)을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讓渡人 및 讓受人이 讓渡 및 讓受에 대하여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讓受人은 都賣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都賣業者인 法人의 合併의 경우(都賣業者인 法人과 都賣業者가 아닌 法人이 合併하여 都賣業者인 法人이 존속하는 경우를 除外한다) 당해 合併에 대하여 農林水産大臣이 認可를 받은 때에는 合併 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都賣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를 경유하여 申請書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第16條(許可의 申請) 第2項 및 第3項, 第17條(許可의 基準) 및 第18條(處分節次)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認可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第16條 第2項 중 “前項의 申請書”는 “第21條 第3項의 申請書”로, “申請者”는 “그 申請에 관계되는 讓受人 또는 合併 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으로, 同條 第3項 중 “第1項의 申請書”는 “第21條 第3項의 申請書”로, 第17條 第1項 및 第2項 중 “第15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認可의 申請”은 “第21條 第1項 또는 第

2項의 認可의 申請”으로, “申請者”는 “그 申請에 관계되는 讓受人 또는 合併 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으로, 第18條 中 “第15條 第1項의 許可 또는 許可의 拒否處分”은 “第21條 第1項이나 第2項의 認可 또는 認可의 拒否處分”으로 한다.

⑤第29條(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法律의 適用除外) 第1項의 認可를 받은 營業讓受에 관계되는 營業의 讓渡 및 讓受는 第1項의 규정의 適用에 대하여는 同項의 認可를 받은 營業의 讓渡 및 讓受로 보고, 同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合併은 第2項의 規定의 適用에 대하여는 同項의 認可를 받은 合併으로 본다.

第22條 (相續) ①都賣業者가 死亡한 경우 相續人(相續人이 2人 이상인 경우 協議에 의하여 당해 都賣業者의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承繼하여야 할 相續人을 정한 때에는 그 者)이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 被相續人이 행하고 있던 都賣業務를 계속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被相續人의 死亡 後 6月內에 農林水產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相續人이 前項의 認可申請을 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死亡日로부터 그 認可가 있었다는 趣旨 또는 그 認可를 하지 아니한다는 趣旨의 通知를 받는 날까지의 期間 동안에는 被相續人에 대하여 한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는 그 相續人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農林水產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를 경유하여 申請書를 農林水產大臣에 提出하여야 한다.

④第16條(許可의 申請) 第2項·第3項, 第17條(許可의 基準) 및 第18條(處分의 節次)의 規정은 第1項의 認可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6條 第2項 中 “第1項의 申請書” 또는 同條 第3項 中 “第1項의 申請書”는 “第23條 第3項의 申請書”로, 第17條 第1項 및 第2項 中 “第15條 第1項의 許可申請”은 “第22條 第1項의 認可申請”으로, 第18條 中 “第15條 第1項의 許可 또는 許可의 拒否處分”은 “第22條 第1項의 認可 또는 認可의 拒否處分”으로 한다.

⑤第1項의 認可를 받은 者는 都賣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23條 (兼業業務 등의 申告)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 및 이에 附帶하는 業務 이외의 業務(이하 이 項 및 다음 條에서는 “兼業業務”라 한다)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水產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兼業業務에 관한 事業計劃을 添附하여 그 趣旨를 開設者를 경유하여 農林水產大臣에 申告하여야 한다. 그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都賣業者는 다른 法人에 대한 支配關係(다른 法人에 대한 關係에서 都賣業者가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出資口座數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數 또는 金額의 株式이나 出資를 所有하는 關係 기타 그 法人의 事業活動을 實質적으로 支配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서 農林水產省令이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게 된 때에는 農林水產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趣旨를 開設者를 경유하

여 農林水産大臣에 申告하여야 한다. 그 申告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도 같다.

第24條 (名稱變更 등의 申告) 都賣業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開設者를 經유하여 農林水産大臣에 申告하여야 한다.

1.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業務를 開始, 休止 또는 再開한 때
2. 第15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業務를 廢止한 때
3. 第16條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계기하는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
4. 兼業業務의 전부를 廢止한 때
5. 다른 法人에 대한 支配關係의 전부가 없어진 때

第25條 (許可의 取消) ① 農林水産大臣은 都賣業者가 第17條(許可의 基準)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에서 규정하는 者에 해당하게 된 때(都賣業者가 法人인 경우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중 이들 各號에서 규정하는 者에 해당하게 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 農林水産大臣은 都賣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15條 第1項의 許可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1月 이내 에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는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月 이상 계속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休止한 때
- ③ 第19條(純資産額) 第5項의 規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26條 (都賣業者의 保證金) ① 都賣業者는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5條(都賣業者의 許可)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市場 및 取扱品目의 部類마다 開設者에 保證金을 預託한 후가 아니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開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前項의 保證金은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債證券, 地方債證券 기타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으로 이에 相當할 수 있다.

③ 開設者는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 都賣業者로부터 收受하는 使用料, 保管料 및 手數料에 관하여 당해 都賣業者가 預託한 第1項의 保證金에 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 都賣業者에 대하여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를 위한 販賣 또는 販賣의 委託을 한 者는 당해 販賣 또는 販賣委託에 의한 債權에 관하여 당해 都賣業者가 預託한 第1項의 保證金에 대하여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를 가진다.

⑤ 第3項의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는 前項의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에 優先한다.

第27條 (事業年度) 都賣業者의 事業年度는 4月부터 翌年 3月까지 또는 4月부터 9月까지 및 10月부터 翌年 3月까지로 한다.

第28條 (事業報告書의 提出) 都賣業者는 事業年度마다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作成하고 每事業年度經過 후 90日 이내에 이를 開設者를 經유하여 農林水産大臣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29條 (私的獨占의禁止및公正去來의確保에관한法律의 適用除外) 都賣業者간에 있어서의 過度한 競争에 의한 弊害를 防止하고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의 適正하고 健全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都賣業者가 사전에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 이러한 者들간에 행하여지는 營業의 讓受나 合併 또는 사전에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 이러한 자들간에 締結하는 都賣業務에 관계되는 去來條件에 관한 協定(都賣業者가 取扱하는 生鮮食料品 등의 價格, 品質 또는 數量에 관한 것은 除外한다) 및 이에 의거하는 行爲 또는 都賣業者와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取扱品目에 대하여 당해 中央都賣市場에 관계되는 開設區域內에 開設된 다른 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는 “다른 市場 都賣業者”라고 한다)간의 過度한 競争에 의한 弊害를 防止하고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의 적정하고 건전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都賣業者가 사전에 農林水産大臣의 許可를 받아 당해 다른 市場 都賣業者와 행하는 營業의 讓受 또는 合併에는 私的獨占의禁止및公正去來의確保에관한法律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不公正한 去來方法을 使用하고 있는 때
2. 그 認可를 받아 締結된 協定에 관하여 第32條(公正去來委員會와의 關係)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가 있는 후 1月을 경과한 때(同條 第3項의 請求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당해 協定에 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한 경우는 除外한다)

②第3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同項의 認可를 받아 締結된 協定의 規定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同項 第2號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私的獨占의禁止및 公正去來의確保에관한法律의 規定은 당해 協定 중 그 請求에 관계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 및 이에 의거하는 行爲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農林水産大臣은 第1項의 認可申請이 있는 경우 그 申請에 관계되는 營業의 讓受나 合併 또는 協定이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要件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認可하여야 한다.

1. 그 營業의 讓受나 合併 또는 그 協定의 내용이 당해 都賣業者간 또는 당해 都賣業者와 당해 다른 市場 都賣業者간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의 적정하고 건전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최소한도의 것일 것
2. 그 營業의 讓受나 合併 또는 그 協定의 내용이 부당하게 差別的이지 아니할 것
3. 그 協定에 參加 또는 그 協定으로부터 脫退를 부당하게 制限하지 아니할 것
4. 一般消費者 및 關係事業者의 利益을 부당하게 侵害할 우려가 없을 것
5. 그 營業의 讓受에 관계되는 營業의 讓渡 및 讓受 또는 그 合併(都賣業者와 다른

市場 都賣業者가 合併하여 都賣業者가 존속하는 경우는 除外한다)에 대하여 第21條(營業의 讓渡, 讓受 및 合併) 第1項 또는 第2項의 認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認可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認定되는 것일 것

④第1項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農林水産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開設者를 經유하여 申請書를 農林水産大臣에 提出하여야 한다.

⑤第16條(許可의 申請) 第2項·第3項 및 第18條(處分の 節次)의 규정은 第1項의 認可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第16條 第2項 중 “前項의 申請書”는 “第29條 第4項의 申請書”로, “申請者”는 “그 申請에 관계되는 營業의 讓受나 併合또는 協定에 대한 意見 및 申請이 營業의 讓受나 併合에 관계되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讓受人 또는 併合 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併合에 設立되는 法人”으로, 同條 第3項 중 “第1項의 申請書”는 “第29條 第4項의 申請書”로, 第18條 중 “第15條 第1項의 許可 또는 許可의 拒否處分”은 “第29條 第1項의 認可 또는 認可의 拒否處分”으로 한다. 第30條(協定の 變更命令 또는 認可의 取消) 農林水産大臣은 前條 第1項의 認可를 한 協定이 同條 第3項 第1號 내지 第4號에 계기하는 要件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당해 協定을 締結한 자에 대하여 그 變更을 명하거나 同條 第1項의 認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第31條(協定廢止의 申告) 都賣業者는 第29條(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法律의 適用除外) 第1項의 認可를 받아 締結한 協定을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開設者를 經유하여 農林水産大臣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32條(公正去來委員會와의 관계) ①農林水産大臣은 第29條(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法律의 適用除外) 第1項의 認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하여야 한다.

②農林水産大臣은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公正去來委員會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 第1項의 認可를 받아 締結된 協定이 同條 第3項 第1號 내지 第4號에 계기하는 要件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農林水産大臣에 대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趣旨를 官報에 公示하여야 한다.

第33條(中間都賣業務의 許可) ①中央都賣市場에서의 中間都賣業務(開設者가 中央都賣市場에 설치하는 店舖에서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로부터 都賣를 받은 生鮮食料品을 分類 또는 調製하여 販賣하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開設者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前項의 許可는 市場 및 取扱品目の 部類別로 행한다.

③開設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都賣業務를 행하는 者를 두지 아니한다는

趣旨의 규정이 있는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를 除外하고 市場 및 取扱品目別로 業務規程으로서 中間都賣業務를 행하는 자의 許可基準, 수의 최고한도, 保證金 기타 農林水産省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규정하여야 한다.

④開設者는 市場의 業務規模, 取扱品目的의 性質, 去來狀況 등에 비추어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中間都賣業務를 행하는 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業務規程에서 中間都賣業務를 행하는 자를 두지 아니하는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를 정할 수 있다.

第3節 都賣去來

第34條 (競賣 또는 入札의 原則)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 행하는 都賣에 있어서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정한 規格 또는 貯藏性을 가지고 있고 그 供給事情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生鮮食料品등으로서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것 또는 品目이나 品質이 특수하기 때문에 수요가 일반적이지 아니한 生鮮食料品등으로서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것(이하 "特定食品"이라 總稱한다) 중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 이외의 方法에 의하는 것이 適當한 것으로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것의 都賣를 하는 때
2. 災害의 發生 기타 農林水産省令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가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認定한 때

第35條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 이외의 販賣의 禁止) 都賣業者는 그 자가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아 都賣業務를 행하는 中央都賣市場에 관계되는 開設區域에 있어서는 당해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業務로서 행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당해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的의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의 都賣 기타 販賣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 (差別的 取扱의 禁止 등) ①都賣事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都賣業務에 관하여 出荷者 또는 中間都賣業者(第33條(中間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賣買參加者(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者로부터 都賣를 받는 것에 대하여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別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의 承認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取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都賣業者는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的의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를 위한 販賣委託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그 引受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7條 (都賣相對方의 制限)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에 대하여는 中

間都賣業者 및 賣買參加者(그 都賣業者의 당해 都賣業務에 관계되는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와 동일한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에 대하여 第33條(中間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은 中間都賣業者와 당해 동일한 市場 및 取扱品目的의 部類에 대하여 前條 第1項에서 규정하는 承認을 받은 賣買參加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는 같다) 이외의 者에 대하여 都賣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市場에 있어서의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서 殘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가 中間都賣業者 및 賣買參加者의 買收를 부당하게 制限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8條(自己計算에 의한 都賣의 禁止)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都賣業務에 대하여는 自己計算으로 都賣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特定物品 중 당해 中央都賣市場外에서의 그 去來의 상황 등에 비추어 都賣業者가 自己計算으로 都賣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것의 都賣를 하는 때
2. 出荷者의 計算으로 행하는 都賣의 방법에 의해서는 生鮮食料品 등의 出荷를 받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기타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가 都賣業務의 적정하고 건전한 運營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認定한 때

第39條(市場外에 있는 物品에 대한 都賣의 禁止)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에 대하여는 그 者가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아 都賣業務를 행하는 市場內에 있는 生鮮食料品 등 이외의 生鮮食料品 등의 都賣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中央都賣市場에 관계되는 開設區域內에서 開設者가 지정하는 場所(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당해 開設區域의 주변지역에서의 일정한 場所를 지정한 때에는 그 場所를 포함한다)에 있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條(都賣業者에 대한 都賣의 相對方으로서의 買受의 禁止) 都賣業者(그 任員 및 職員을 포함한다)는 그 者가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아 都賣業務를 행하는 市場에서 그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的의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都賣의 相對方으로서 生鮮食料品 등을 買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委託手数料 이외의 報償收受의 禁止) 都賣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를 위한 販賣委託의 引受에 대하여 그 委託者로부터 業務規程이 정하는 委託手数料 이외의 報償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42條(受託契約約款) 都賣業者는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를 위한 販賣委託의 引受에 대하여 受託契約約款을 정하고 開設者의 承認을 받

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고 하는 때에도 같다.

②開設者は 前項의 承認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受託契約約款을 農林水産大臣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43條 (競賣人の 登録) 都賣業者가 中央都賣市場에서 행하는 都賣의 競賣인은 그 자에 대하여 당해 都賣業者가 開設者의 등록을 받고 있는 者라야 한다.

②開設者は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業務規程에서 前項의 등록에 관계되는 競賣人の 資格 기타 당해 登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규정하고 그 登録을 행하여야 한다.

③開設者は 第1項의 登録에 관계되는 競賣人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의 公正을 害하거나 害할 우려가 있는 行爲를 한 때에는,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者에 관계되는 同項의 登録을 取消하거나 그 者가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의 競賣를 制限하여야 한다.

第44條 (中間都賣業者의 業務規則) 中間都賣業者는 第33條(中間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아서 中間都賣의 業務를 행하는 中央都賣市場에 관계되는 開設區域內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2號에 계기하는 行爲에 대하여는 中間都賣業者가 그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の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을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로부터 買入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業務規程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開設者가 당해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去來秩序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の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販賣委託을 引受하는 것
2. 그 許可에 관계되는 取扱品目の 部類에 속하는 生鮮食料品 등을 당해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 이외의 者로부터 買入하여 販賣하는 것

第45條 (賣買去來의 制限) 開設者は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賣買去來에 있어서 不正한 行爲가 행하여지거나 不當한 價格이 形成되어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業者, 中間都賣業者 또는 賣買參加者에 대하여 당해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賣買去來(都賣業者에 대하여는 당해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를 위한 販賣委託의 引受를 포함한다)를 制限할 수 있다.

第46條 (入荷數量 등의 公表) ①開設者は 中央都賣市場의 各市場에서 取扱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매일 都賣가 開始되는 때까지 그날의 주요한 품목의 入荷數量 기타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事項을 당해 各市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開設者は 前項의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都賣業者의 都賣의 수량 및 價格을 신속하게 公表하여야 한다.

第47條 (市況 등에 관한 報告) 開設者は 農林水産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前條 第1

項의 生鮮食料品 등에 대한 매일의 市況과 都賣業者의 都賣數量 및 金額을 農林水產大臣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4節 監督

第48條 (報告 및 檢査) 農林水產大臣은 이 法律의 施行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그 業務나 財産에 관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그 職員에게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의 事務所 기타 業務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業務 또는 財産의 狀況 또는 帳簿, 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開設者는 이 法律의 施行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都賣業者 또는 中間都賣業者에 대하여 그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그 職員에게 都賣業者 또는 中間都賣業者의 事務所 기타 業務를 행하는 場所에 出入하여 그 業務 또는 財産의 狀況이나 帳簿, 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前項의 規定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明書를 휴대하고 관계인에 提示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查를 위하여 認定되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9條 (監督處分) 農林水產大臣은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가 이 法律 또는 이 法律에 의거한 命令이나 이에 의한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당해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당해 行爲의 中止, 變更 기타 違反을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하거나 開設者에 대하여는 第1號, 都賣業者에 대하여는 第2號 또는 第3號에 계기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中央都賣市場의 開設認可를 取消하거나 1년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中央都賣市場의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하는 것

2.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의 取消 또는 1년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하는 것

3. 都賣業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의 解任을 命하는 것

② 第19條(純資産額) 第5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同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는 第19條 第5項 중 “相對方”은 “相對方 및 당해 處分에 의하여 解任되어야 하는 者”로, “그 者”는 “이러한 者”로 한다.

第50條 (同前) 開設者는 都賣業者, 中間都賣業者 또는 賣買參加者가 業務規程 또는 이에 의한 處分에 違反한 경우에는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者에 대하여 10만圓 이하의 過料를 요하거나 都賣業者에 대하여는 第1號, 中間都賣業者에 대하여는 第2號, 賣買參加者에 대하여는 第3號에 계기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1.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都賣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하는 것
2. 第33條(中間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許可에 관계되는 中間都賣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命하는 것
3. 第36條(差別的 取扱의 禁止 등) 第1項에서 규정하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中央都賣市場에의 立場의 停止를 명하는 것

第51條 (必要한 改善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는 趣旨의 勸告 또는 命令) 農林水産大臣은 中央都賣市場의 業務의 적정하고 건전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開設者에 대하여 中央都賣市場의 施設改善, 業務規程의 變更 기타 필요한 改善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勸告할 수 있다.

②農林水産大臣 또는 開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의 적정하고 健전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당해 都賣業者의 業務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改善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命하거나 당해 都賣業者가 支配關係를 가지고 있는 法人의 業務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改善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勸告할 수 있다.

③開設者는 中央都賣市場에서의 中間都賣業務의 적정하고 健전한 運營을 確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中間都賣業者에 대하여 당해 中間都賣業者의 業務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改善措置를 취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命할 수 있다.

第5節 雜 則

第52條 (都賣業務의 代行) 開設者는 都賣業者가 都賣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都賣業者(都賣業者였던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행할 수 없게 된 都賣業務에 관계되는 都賣를 위한 販賣委託의 申請이 있었던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그 都賣業務를 행하거나 다른 都賣業者에게 그 都賣業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都賣業者를 행하는 開設者에 대하여는 이 章 第2節(都賣業者 등)의 규정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3條 (報告 및 告示) 開設者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農林水産大臣에 報告하여야 한다.

1. 第19條(純資産額)第2項, 第25條(許可의 取消)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49條(監督處分)第1項 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
2. 第45條(賣買去來의 制限)의 규정에 의하여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賣買去來의 制限을 한 때
3. 第50條(開設者가 행하는 監督處分)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

4. 第52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都賣業務를 행하거나 다른 都賣業者에 都賣業務를 행하게 한 때

5.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 臨時로 開始 또는 休業한 때

②農林水産大臣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趣旨를 告示하여야 한다. 그 告示한 事項의 變更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第7條(開設區域)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指定을 한 때

2. 第8條(開設의 認可) 또는 第14條(廢止의 認可) 第1項의 認可를 한 때

3.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한 때

4. 第16條 第2項, 第3項 또는 第4項, 第25條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49條 第1項 第1號나 第2號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

第54條 (都道府縣知事の 經由) ①이 章 또는 이 章의 규정에 의거한 命令의 규정에 의하여 農林水産大臣에 대하여 하는 許可 또는 認可의 申請, 申告 또는 報告는 都道府縣知事を 経由하여야 한다. 다만, 都道府縣 또는 地方自治法 第252條의 19(指定都市의 特例) 第1項의 指定都市가 開設하는 中央都賣市場에 관계되는 許可 또는 認可의 申請, 申告 또는 報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 本文의 경우 都道府縣知事は 당해 許可 또는 認可의 申請, 申告 또는 報告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意見を 添附하여 이에 관한 書類를 農林水産大臣에 送達한다.

第 4 章 地方都賣市場

第 1 節 開設 및 都賣業務에 관한 許可

第55條 (開設의 許可)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려고 하는 者는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市場別로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6條 (許可의 申請) ①第55條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자는 業務規程 및 事業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申請書에 添附하여 都道府縣知事に 提出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業務規程에는 地方都賣市場의 位置 및 面積, 取扱品目 기타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事項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事業計劃에는 施設의 種類, 規模, 配置 및 構造 기타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事項을 규정하여야 한다.

第57條 (許可의 基準) 都道府縣知事は 第55條(開設의 許可)의 許可申請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同條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申請者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罰金 이상의 刑에 처하여져서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또는 그 刑의 執行이 免除된 날로부터 起算하여 2년을 經過하지 아니한 자인 때

2. 申請者が 第65條(許可의 取消등) 第2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을 받고 그 取消日로부터 起算하여 2년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인 때
 3. 申請者が 法人이며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中에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
 4. 申請者が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는 데 필요한 資力信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인 때
 5. 業務規程의 內容이 法令(이 章의 規定에 의거한 都道府縣의 條例를 포함한다)에 違反하는 때
 6. 事業計劃이 適切하지 아니하거나 그 遂行이 확실하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때
 7. 그 申請에 관계되는 地方都賣市場의 位置가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에 비추어 현저하게 配置의 適正을 缺如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때 또는 그 申請에 관계되는 地方都賣市場의 位置 또는 施設의 種類, 規模, 配置 또는 構造가 地方都賣市場에서의 業務의 원활한 運營을 確保하는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認定되는 때
- ② 都道府縣知事は 第55條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 그 申請者が 第65條 第2項 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을 받고 그 取消日로부터 起算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인 때에는 同條의 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8條(都賣業務의 許可) 地方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行하고자 하는 자는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市場 및 取扱品目的 部類別로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許可申請은 申請者が 당해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는 者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당해 開設하는 者를 경우하여야 한다.

③ 第16條(許可의 申請)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 同條 第2項 中 “前項의 申請書”는 “第58條 第1項의 許可申請書”로, “당해 中央都賣市場”은 “당해 地方都賣市場”으로, “農林水産大臣”은 “都道府縣知事”로 한다.

第59條(許可의 基準) 都道府縣知事は 前條 第1項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 申請者が 第57條(許可의 基準) 第1項 第1號, 第2號 또는 第3號에서 規定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 또는 申請자가 地方都賣市場에서의 都賣業務를 公正하고 適正하게 遂行하는데 필요한 知識 및 經驗 또는 資力信用을 가지고 있는 者가 아니라고 認定 하는 때에는 同項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0條(廢止의 許可) 第55條(開設의 許可)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이 章에서는 “開設者”라고 한다)는 地方都賣市場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2節 業務에 관한 規制와 監督

第61條(差別的取扱의 禁止) 開設者 또는 第58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이 章에서는 “都賣業者”라고 한다)는 地方都賣市場에 있어서의 業務의 運營에 관하여 出荷者, 買收人 기타 地方都賣市場의 利用者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取扱을 하지는 못한다.

第62條(競賣 또는 入札의 原則) 都賣業者는 地方都賣市場에서 행하는 都賣에 관하여는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去來의 상황 등에 비추어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開設者가 都道府縣의 條例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規程이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3條(入荷數量 등의 公表) 開設者는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都賣市場에서 取扱하는 生鮮食料品 등에 대하여 매일의 入荷數量 및 都賣業者의 都賣의 數量과 價格을 公表하여야 한다.

第64條(業務規程의 變更) ①開設者는 業務規程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都道府縣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知事の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第57條(許可의 基準) 第1項(業務規程에 관계되는 부분에 限한다)의 規定은 前項의 承認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65條(許可의 取消 등) 都道府縣知事は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가 第57條(許可의 基準) 第1項 第1號에서 規定하는 者에 해당하게 된 때(開設者 또는 都賣業者가 法人인 경우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중에 同號에서 規定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포함한다) 또는 業務를 행하는데 필요한 資力信用을 갖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第55條(開設의 許可) 또는 第58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②都道府縣知事は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를 명하거나 第55條 또는 第58條 第1項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이 法에 의거한 命令, 이 章의 規定에 의거한 都道府縣의 條例 또는 業務規程에 違反한 때
2. 第55條 또는 第58條 第1項의 許可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起算하여 1月 이내에 그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正當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月 이상 그 業務를 休止한 때

③第19條(純資産金) 第5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66條(報告 및 檢査) 都道府縣知事は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그 業務나 財産에 관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그 職員에게 開設者 또는 都賣業者의 事務所 기타 業務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業務나 財産의 狀況 또는 帳簿, 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48條(報告 및 檢査)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에 대하여 準用한다.

第3節 雜 則

第67條 (中央都賣市場開設區域內的 地方都賣市場) ①都道府縣知事は 第55條(開設의 許可)의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 그 申請이 中央都賣市場開設區域內的 地方都賣市場에 관계되는 것인 때에는 意見을 添附하여 農林水産大臣에 報告하고 農林水産大臣의 意見을 要請하여야 한다.

②都道府縣知事は 中央都賣市場開設區域內的 地方都賣市場에 대하여 第55條 또는 第58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許可를 한 때 또는 第65條(許可의 取消 등) 第1項이나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農林水産大臣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68條 (都道府縣의 條例가 定하는 事項)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地方都賣市場의 開設 및 地方都賣市場에 있어서의 業務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都道府縣의 條例에서 定한다.

第69條 (農林水産大臣에의 報告) 農林水産大臣은 都道府縣知事に 대하여 地方都賣市場에 관하여 필요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地方都賣市場의 行政에 관하여 필요한 助言 또는 勸告를 할 수 있다.

第5章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

第70條 削除(1991年 5月 法律 第59號)

第71條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 ①都道府縣은 都道府縣知事の 諮問에 따라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에 관한 事項 기타 都賣市場에 관한 중요사항을 調査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條例에서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를 둘 수 있다.

②第1項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都道府縣都賣市場審議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都道府縣의 條例에서 定한다.

第6章 雜 則

第72條 (助成) 國家는 第8條(開設의 認可)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地方公共 團體 또는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 있는 地方公共團體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에 의거하여 中央都賣市場의 施設改良, 造成 또는 取得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公共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範圍內에서 당해 施設 중 建物, 機械設備 등의 중요한 施設의 改良, 造成 또는 取得에 소요되는 費用의 10분의 4 이내의 범위에서 補助할 수 있다.

②國家 및 都道府縣은 中央都賣市場整備計劃 또는 都道府縣都賣市場整備計劃의 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助言, 指導, 資金融通의 주선 기타 援助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第73條 (合併 등의 경우에 대한 課稅의 特例) ①農林水産大臣은 政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는 者로서 地方公共團體 이외의 者 또는 中央都賣市場이나 地方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는 “開設者 등”이라고 總稱한다)에 대하여 그 者가 다른 法人인 開設者 등과 合併하거나 다른 法人인 開設者 등에 대하여 出資 또는 다른 開設者 등과 함께 出資하여 法人인 開設者 등을 設立함으로써, 당해 開設者 등의 事業의 生産性이 현저하게 向上되고 당해 開設者 등이 開設하는 地方都賣市場이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에서 정하여진 第4條 第2項 第2號의 基準的 指標에 適合하거나 당해 開設者 등이 都賣市場整備基本方針에서 정하여진 同項 第4號의 目標에 달하게 된다는 趣旨를 認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認定에 관계되는 合併 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당해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이나 당해 認定에 관계되는 出資를 받은 法人 또는 당해 出資에 의거하여 設立된 法人이 당해 認定에 관계되는 다음의 事項에 대하여 받는 登記에 대하여는 租稅 特別措置法(1957年 法律 第26號)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免許稅를 輕減한다.

1. 會社의 設立 또는 資本이나 出資의 增加
 2. 法人의 設立 또는 資本이나 出資에 대한 增加의 경우에 있어서의 不動產의 取得
- 第74條 (條例와의 關係) 이 法의 規定은 地方公共團體가 都賣市場에서 中央都賣市場 및 地方都賣市場 이외의 것의 開設 또는 당해 都賣市場에 있어서의 業務에 관하여 條例가 필요한 規制를 行함에 있어 이를 妨害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第75條 (許可 또는 認可의 制限 또는 條件)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認可에는 制限 또는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②第1項의 制限 또는 條件은 許可 또는 認可에 관계되는 事項의 확실한 實施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하며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 者에게 부당한 義務를 課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第76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서 規定하는 農林水產大臣의 權限은 政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都道府縣知事に 委任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第77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 併科한다.

1. 第15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中央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한 者
2. 虛僞 기타 부정한 手段에 의하여 第15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
3. 第19條(純資產額)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49條(監督處分)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5. 第75條(許可 또는 認可의 制限 또는 條件)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制限 또는 條件에 違反한 者

第78條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하거나 이를 併科한다.

1. 第55條(開設의 許可)의 規定에 違反하여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한 者
2. 虛偽 기타 부정한 手段에 의하여 第55條의 許可를 받은 者
3. 第58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地方都賣市場에서 都賣業務를 행한 者
4. 虛偽 기타 부정한 手段에 의하여 第58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
5. 第65條(許可의 取消등)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6. 第75條(許可 또는 認可의 制限 또는 條件)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55條 또는 第58條 第1項의 許可의 制限 또는 條件에 違反한 者

第79條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0條(純資産額)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者
2. 第23條(兼業業務 등의 申告) 또는 第24條(名稱變更 등의 申告)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3. 第26條(都賣業務의 保證金)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28條(事業報告書의 提出)의 規定에 의한 事務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記載를 한 事業報告書를 提出한 者
5. 第33條(都賣業務의 許可)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48條(報告 및 檢査)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 報告 또는 虛偽의 資料를 提出하거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7. 第49條(監督處分)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80條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48條(報告 및 檢査) 第2項 또는 第66條(報告 및 檢査)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報告 또는 虛偽의 資料를 提出하거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60條(廢止의 許可)의 規定에 違反하여 地方都賣市場을 廢止한 者

第81條 (同前)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77條 내지 第80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各本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第82條 (同前) 第3條(名稱의 制限)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만圓이하의 過料에 처한다.

附 則
(省 略)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1973年 10月 1日 制定 法律 第109號

1978年 11月 15日 改正法律 第105號

(大規模小賣店鋪小賣業의 事業活動調整에 관한 法律 및 小賣
商業調整特別措置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第1條에 의한
改正)

1983年 12月 2日 改正法律 第78號

(國家行政組織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의 施行에 따른 關係
法律의 整理등에 관한 法律 第126條에 의한 改正)

1991年 5月 24日 改正法律 第80號

(第1次 改正)

目 次

第1章 總則 (第1條·第2條)

第2章 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 (第3條~第14條의 2)

第3章 雜則 (第14條의 3~第17條)

第4章 罰則 (第18條~第21條)

附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消費者의 利益保護를 配慮하면서 大規模小賣店鋪에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을 조정함으로써 주변 中小小賣業의 事業活動의 機會를 適正히 확보하고 小賣業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店鋪面積”이라 함은 小賣業(飲食店業은 除外하고 物品加工修理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기 위한 店鋪用으로 제공되는 床面積을 말한다.

②이 法에서 “大規模小賣店鋪”라 함은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및 第2種大規模小賣店鋪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第1種大規模小賣店鋪”라 함은 다음 條 第2項이나 第3項 또는 第3

條의 2(種別變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産業大臣의 公示에 관계되는 建物을 말한다.

④이 法에서 “第2種大規模小賣店舖”라 함은 다음 條 第2項이나 第3項 또는 第3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都道府縣知事の 公示에 관계되는 建物을 말한다.

第2章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

第3條 (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 등) ①하나의 건물로서 그 建物內 店舖面積의 合計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의 新設(건물의 床面積을 變更하거나 기존의 建物の 全部 또는 一部の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당해 建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小賣業을 영위하기 위한 店舖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케 하기 위하여 그 건물 일부의 新設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제외하며, 小賣業을 영위하기 위한 店舖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케 하기 위하여 그 건물 일부를 設置하는 자가 있는 때는 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建물이 잘 보이는 장소에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表示를 揭示함과 동시에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건물내 店舖面積의 合計가 3,000평방미터(都의 特別區 및 地方自治法(1947年 制定法律 第67號) 第252條의 19(指定都市의 特例) 第1項의 指定都市區域內에서는 6,000평방미터. 이하 “種別境界面積”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通商産業大臣에게, 그밖의 경우에는 그 建物所在地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이하 本條 및 다음 條에서는 “都道府縣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당해 新設을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당해 表示를 揭示함과 동시에 申告를 할 수 있다.

②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同項의 規定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관하여 둘 이상의 申告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申告)가 있을 때에는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申告에 관계되는 건물에서의 小賣業事業活動에 관하여 調整이 行하여진다는 취지의 公示를 하여야 한다.

③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第1項에 規定하는 建物에 관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與否의 구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前2項의 規定의 例에 따라 表示 및 公示를 할 수 있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建物の 床面積을 變更하거나 또는 그 建物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건물내 店舖面積의 合計를 500평방미터 이하로 하는 자는 同項, 前項 또는 다음 條 第5項의 表示(이하 “店舖表示”라 한다)를 제거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그 건물에 관하여 第2項 또는 前項 또는 다음 條 第3項의 公示(이하 “調整公示”라 한다)를 한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에는 通商

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申告에 관계되는 건물에 관계되는 調整公示가 그 效力을 喪失하는 취지의 公示를 하여야 한다.

⑥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店鋪面積이 500평방미터 이하로 된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에 관하여 前項의 規定의 예에 따라 公示를 할 수 있다.

⑦第1項에 規定하는 建物を 新設하는 자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公示가 있는 후가 아니면 그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5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小賣業을 영위하기 위한 店鋪用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케하여서는 아니된다.

⑧第1項의 規定適用에 관하여는 지붕, 기둥 또는 벽을 공통으로 하는 건물(當該 建물이 公共의 용도로 이용되는 道路 기타 施設로 인하여 두개 이상의 부분으로 격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격리된 각각의 부분) 및 通路에 의하여 접속되고 기능이 일체가 되어 있는 둘 이상의 건물은 이를 하나의 건물로 하며, 그 건물에 附屬建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합한 것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한다.

第3條의 2 (種別變更) ①건물의 床面積을 變更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第1種大規模小賣店鋪內 店鋪面積의 合計를 500평방미터를 초과시켜 種別境界面積 미만으로 하거나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內 店鋪面積의 合計를 種別境界面積 이상으로 하는 자는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을 通商産業大臣 및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그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에 관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이하 “種別變更申告”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에 관하여 다음 項의 公示를 하여 지장이 없다는 취지를 都道府縣知事 또는 通商産業大臣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要하는 경우에 있어서 同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도 같다.

1. 種別變更申告時까지 種別變更申告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에서의 小賣業에 관계되는 第5條(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 第6條(開店日 早期調整의 申告) 第1項 이나 第2項 또는 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이하 “開店日 등의 申告”라 한다)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2. 種別變更申告時까지 前號에 規定하는 開店日등의 申告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開店日 등의 申告 및 그 이후에 행하여진 同號에 규정하는 開店日 등의 申告에 관하여 第7條(變更勸告) 第1項(第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第8條(變更命令) 第1項(第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第14條(營業停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때

③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가 있는 때에는 그 通知에 관계되는 건물에 관하여 前條 第2項의 規定의 예에 따라 公示를 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公示가 있는 때에는 그 公示가 행하여진 날에 당해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하여 그 公示前에 행하여진 調整公示는 그 效力을 잃는다.

⑤第1項에 규정하는 자는 第3項의 公示가 있는 때에는 當該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 揭示된 店舖表示를 제거함과 동시에 前條 第1項의 예에 따라 새로이 表示를 揭示하여야 한다.

第4條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營業開始 등의 制限) ①大規模小賣店舖에서는 그 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하여 第3條(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 등) 第2項 또는 第3項의 公示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7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누구도 새로이 小賣業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3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公示가 행하여진 당시 當該 大規模小賣店舖에서 小賣業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公示한 날부터 7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當該 大規模小賣店舖에서의 店舖面積을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 (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者의 申告) ①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서 小賣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別로 그 營業開始日(이하 “開店日”이라 한다)의 5月前까지 다음 사항을 당해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하여 調整 公示를 한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이하 단순히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그리고 法人에 있어서는 代表者의 姓名
2.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의 所在地
3. 開店日
4. 店舖面積

②第3條(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 등) 第2項 또는 第3項의 公示가 행하여진 때 當該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서 小賣業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公示한 날부터 2月 이내에 前項 第1號, 第2號 및 第4號의 事項을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는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事項을 記載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6條 (開店日 早期調整 등의 申告) ①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는 그 신고에 관계되는 開店日을 앞당기고자 하는 때에는 앞당길 開店日의 5月前까지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는 그 申告에 관계되는 店舖

面積을 증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店舖面積을 증가할 날의 5月前까지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경미한 變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前條 第3項의 規定은 前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準用한다.

第7條 (變更勸告) ①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第5條(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 또는 前條 第1項이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경우에 그 申告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주변의 인구규모 및 그 추이, 中小小賣業近代化의 전망, 他大規模小賣店舖의 配置 및 當該 他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의 現狀 등의 事정을 고려하여, 그 申告에 관계되는 사항이 實施됨으로써 그 申告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의 事業活動이 그 주변의 中小小賣業 事業活動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政令에서 정하는 審議會의 의견 또는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의 의견(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를 두지 않는 都道府縣의 都道府縣知事に 있어서는 그 申告에 관계되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의 所在地가 그 地區內에 있는 商工會議所 또는 商工會의 의견,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消費者 또는 그 團體, 小賣業者 또는 그 團體 및 學識과 經驗을 가진 자의 意見(이하 “消費者 등의 意見”이라 한다) 그밖의 자로서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를 한 자의 의견(이하 “申告者の 意見”이라 한다). 다음 條 第1項에서도 같다)을 청취하여 그 申告를 受理한 날부터 4月 이내에 그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그 申告에 관계되는 開店日을 延期하거나 또는 店舖面積을 削減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政令에서 정하는 審議會 또는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는 同項의 規定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 그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의 所在地가 그 地區內에 있는 商工會議所 또는 商工會의 의견, 消費者 등의 意見 및 申告者の 意見を 청취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當該 申告에 관하여 廣域에 걸친 調査를 행하는 것이 필요한 때 기타 同項의 期間內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할 수 없는 合理的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4月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同項의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當該 申告를 한 자에 대하여 同項의 期間內에 그 연장하는 기간 및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通知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同項의 期間이 滿了하는 날 전에 當該 申告에 관계되는 事項이 즉시 實施되어도 그 申告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의 事業活動이 그 주변의 中小小賣業 事業活動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該 申告에 관계되는 事項에 관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지 않을 것을 決定

하고 그 취지를 當該 申告를 한 자에 通知할 수 있다.

⑤前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자가 그 通知를 받은 바에 따라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계되는 開店日 또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계되는 早期調整後 開店日을 앞당기거나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계되는 店舖面積을 증가할 날을 앞당겨 店舖面積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同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은 적용하지 않는다.

第8條 (變更命令) ①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자가 그 勸告에 따르지 않는 경우 同項에 規定하는 事態가 발생하고 中小小賣業의 利益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項의 政令에서 정하는 審議會의 의견 또는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申告를 受理한 날부터 5月 이내에 그 勸告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勸告에 관계되는 開店日을 延期하거나 또는 店舖面積을 削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前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따라 同條 第1項의 政令에서 정하는 審議會 또는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가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 準用한다.

③前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同條 第1項의 期間이 延長된 경우에 있어서의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同項中 “그 申告를 受理한 날부터 5月”은 “同條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延長된 기간이 滿了하는 날부터 1月”로 본다.

第9條 (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①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서 小賣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別로 開店日까지 그 閉店時刻을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그 閉店時刻이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時刻 이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別로 開店日까지 그 休業日數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그 休業日數가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日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에서 小賣業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閉店時刻을 앞당기거나 또는 休業日數를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앞당긴 후의 閉店時刻이 第1項의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時刻 이전인 때나 短縮 후의 休業日數가 前項의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日數 이상인 때 또는 閉店時刻을 앞당기거나 休業日數를 단축하는 것이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7條(變更勸告)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前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前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前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계되는 勸告에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第7條 第1項 및 前條 第1項중 “開店日을 延期하거나 또는 店舖

面積을 削減할 것”은 “閉店時刻을 앞당기거나 또는 休業日數를 延長할 것”으로 본다.

第10條 (改善勸告) ①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그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者의 顧客送迎 기타 營業에 관한 行爲가 그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의 事業活動을 통하여 그 주변의 中小小賣業 事業活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中小小賣業의 維持育成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營業에 관한 行爲를 행하고 있는 小賣業者에 대하여 그 營業에 관한 行爲를 하지 않도록 勸告할 수 있다.

②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11條 (消費者에 대한 配慮 등)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第7條(變更勸告) 第1項(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8條(變更命令) 第1項(第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前條 第1項에 規定하는 措置의 運用에 있어서 消費者의 利益保護에 관하여 配慮하고 이와 함께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 中小小賣業의 近代化 기타 小賣業 事業活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第12條 (姓名 등의 變更申告) ①第5條(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는 第6條(開店日 早期調整의 申告)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申告에 관계되는 第5條 第1項 各號에 掲記하는 事項의 變更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경미한 變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는 그 申告에 관계되는 閉店時刻의 早期調整 또는 休業日數의 延長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단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경미한 變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 (承繼) ①第5條(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에 대하여 相續 또는 合併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따라 設立한 法人은 그 申告를 한 자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따라 第5條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9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자의 地位를 承繼한 자는 그 承繼가 있는 날부터 1月 이내에 그 취지를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4條 (營業停止) ①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그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鋪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者가 第4條(大規模小賣店鋪

小賣業의 營業開始등의 制限), 第5條(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 第6條(開店日 早期調整의 申告) 第1項 또는 第2項 또는 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또는 第8條(變更命令) 第1項(第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小賣業者에 대하여 1년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小賣業의 營業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第3條(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등) 第1項에 규정하는 건물로서 調整公示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의 小賣業者가 그 建물이 분명히 同項에 規定하는 建物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與否의 구분에 따라 그 자의 事業活動이 그 주변의 中小小賣業 事業活動에 현저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小賣業者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小賣業의 營業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14條의 2 (種別變更前의 申告) ①第3條의 2(種別變更) 第2項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한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當該 通知에 관계되는 建物에 관하여 同條 第3項의 公示가 있는 때에는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公示를 한 都道府縣知事 또는 通商産業大臣에게 그 公示日前에 行하여진 第5條(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계되는 事項을 記載한 서류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3條의 2 第3項의 公示가 있는 경우에는 그 公示日前에 同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效力을 잃게 되는 調整公示에 관계되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에 관계되는 前項에 規定하는 申告를 한 자는 第6條(開店日 早期調整등의 申告) 第1項이나 第2項, 第12條(姓名 등의 變更申告) 또는 第13條(承繼)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각각 그 公示에 관계되는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또는 第1種 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에 관계되는 前項에 規定하는 申告를 한 자로 看做한다.

第3章 雜 則

第14條의 3 (申告의 經由)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한 申告로서 通商産業大臣에게 하는 것은 當該 申告에 관계되는 建物 또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を 經由하여 行하여야 한다.

第15條(市町村長 및 商工會議所 등의 通知) 都道府縣知事は 開店日 등의 申告(當該 都道府縣知事を 經由하여 通商産業大臣에게 行하여진 것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申告에 관계되는 開店日, 店舖面積 기타 事項으로서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것을 그 申告에 관계되는 大規模小賣店舖가 所在하는 市町村의 長 및 그 所在地

가 그 地區內에 있는 商工會議所 또는 商工會에 通知한다.

第15條의 2 (都道府縣知事 등의 의견의 要請) ①都道府縣知事は 당해 都道府縣知事を 經유하여 行하여진 第1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에 관계된 開店日 등의 申告에 관계된 事項이 實施됨으로써 그 申告에 관계된 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의 事業活動이 그 주변의 中小小賣業 事業活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通商産業大臣에 대하여 의견을 要請할 수 있다.

②市町村長은 前條의 規定에 따라 通知된 事項에 관하여 그 通知를 한 都道府縣知事に 대하여 의견을 要請할 수 있다.

第15條의 3 (助言) 都道府縣知事は 第7條(變更勸告) 第1項(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함에 있어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가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助言을 구할 수 있다.

第15條의 4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 ①都道府縣知事の 諮問에 응하여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시키기 위하여 都道府縣은 條例로 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를 設置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大規模小賣店舖審議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第15條의 5 (地方自治團體의 施策) 地方自治團體는 小賣業을 영위하기 위한 店舖에 대하여 그 規模가 주변의 中小小賣商의 商業活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당해 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趣旨을 존중하여야 한다.

第16條 (報告 및 現場檢査) ①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이 法律의 施行에 필요한 한도에서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第3條(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 등) 第1項에 規定하는 建物を 設置하는 자 또는 第1種大規模小賣店舖나 第2種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者에 대하여 報告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職員에게 이들의 事務所 또는 店舖에 出入하고 帳簿, 書類 기타 物件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따라 職員이 現場檢査를 하는 경우에는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明書を 휴대하고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查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不服申請節次에서의 聽聞) ①第8條(變更命令) 第1項(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4條(營業停止)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관한 審査請求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 또는 決定(却下の 裁決 또는 決定은 제외한다)은 審査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을 두어 豫告를 한 다음 公開에 의한 聽聞을 행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豫告에서는 期日, 場所 및 事案의 內容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聽聞에 있어서 是 審査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 및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當該 事案에 관하여 證據를 提示하고 意見を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4章 罰則

第18條 (罰則) 第8條(變更命令) 第1項(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4條(營業停止)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자는 300만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3條(大規模小賣店舖에 관한 公示등) 第7項 또는 第4條(大規模小賣店舖小賣業의 運營開始등의 制限)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5條(大規模小賣店舖 小賣業者의 申告) 第1項 또는 第2項, 第6條(開店日의 早期調整등의 申告) 第1項이나 第2項 또는 第9條(閉店時刻 및 休業日數)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申告를 한 者

第20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2條(姓名 등의 變更申告) 또는 第13條(承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申告를 한 者
2. 第16條(報告 및 現場檢査)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報告를 하거나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21條 (同前)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各本條의 刑을 科한다.

附 則

(省 略)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

1959年 4月 23日 制定 法律 第155號

1962年 9月 15日 改正法律 第161號(行政不服審査法の施行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理 등에 관한 法律 第186條에 의한 改正)

1973年 10月 1日 改正法律 第109號(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附則 第13條에 의한 改正)

1977年 6월 3일 改正法律 第63號(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 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附則 第12條에 의한 改正)

1977年 6月 25日 改正法律 第75號(第1次 改正)

1978年 7月 5日 改正法律 第87號(農林省設置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附則 第13條에 의한 改正)

1978年 11月 15日 改正法律 第105號(大規模小賣店舖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 法律 및 小賣商業調整特別措置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第2條에 의한 改正)

第1條 (目的) 이 法은 小賣商의 事業活動의 기회를 通正하게 確保하고 小賣商業의 正常的인 秩序를 沮害하는 要因을 除去하며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의 2 (定義) ①이 法에서 “小賣商”이라 함은 小賣業(飲食店業을 除外한다. 第3項 第1號 나.를 除外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서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中小小賣商”이라 함은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1,000만圓 이하의 會社와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數가 50인 이하의 會社 및 個人인 小賣商(다음 項 第2號에 해당하는 것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大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者(會社 및 個人에 한한다)로서 事業을 營爲하는 者

가.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1억圓 이하인 會社와 常時 사용하는 從業員의 수가 300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工業, 鑛業, 運送業 기타 業種(나.에 揭記하는 業種은 除外한다)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營爲하는 者

나.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1,000만圓 이하인 會社와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數가 50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小賣業 또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營爲하는 者 및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3,000만圓 이하인 會社와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數가 100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都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營爲하는 者

2. 前項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會社로서 同號에 해당하는 者가 단독으로서 그 會社에 대하여 發行株式總數, 出資口座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數 또는 金額의 株式 또는 出資를 所有하는 관계 기타 事業活動에 대한 實質의인 支配가 가능한 것으로 主務省令이 정하는 關係를 갖고 있는 者

第2條 (購買會事業을 행하는 者에 대한 措置命令) ①都道府縣知事は 購買會事業(事業者가 그의 從業員의 生活에 필요한 物品을 供給하는 事業(그 者가 그의 從業員의 生活에 필요한 物品을 加工하거나 또는 修理하는 事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하는 者가 그 從業員(從業員과 同一의 世帯에 속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者에게 從業員과 同一 또는 類似한 條件으로 購買會事業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中小小賣商의 事業活動에 影響을 미치며 그 利益을 현저하게 害한다고 認定될 때에는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購買事業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從業員 이외의 者에게 購買事業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禁止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禁止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購買事業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의 措置를 취하도록 命할 수 있다.

1. 從業員 이외의 者에게는 購買事業을 利用하도록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購買會事業을 행하는 場所에 明示할 것
2. 從業員이라는 것이 불명확한 者에 대하여서는 從業員이라고 하는 취지를 나타내는 證明書を 提示하지 아니하면, 購買會事業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第3條 (小賣市場의 許可) ①政令이 指定하는 市(特別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區域(이하 “指定區域”이라 한다)內의 建物에 있어서는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라면, 小賣市場(하나의 建物에 그 建物內의 店鋪面積(小賣業을 營爲하기 위한 店鋪用으로 提供되는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부분이 50㎡ 미만의 店鋪面積으로 구분되고, 또한 10 이상의 小賣商(그의 전부 또는 일부가 政令이 정하는 物品을 販賣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店鋪用으로 提供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기 위하여 그 建物の 전부 또는 일부를 그 店鋪로 使用하는 小賣商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前項의 許可는 각각의 建物 마다 한다.

③前2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礎石, 기둥 또는 벽을 공동으로 쓰는 建物 및 동일 敷地內의 2 이상의 棟을 갖는 建物は 이를 하나의 建物로 보며, 建物에 附屬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하나의 建物로 한다.

④都道府縣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 建물이 所在하는 市の 市長(特別區에 있어서는 區長, 이하 같다)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 다만, 同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當該 市長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許可의 申請) ①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에 揭記하는 事

項을 기재한 申請書를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그 建物이 所在하는 市の 市長을 經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申請者의 姓名 또는 名稱, 住所 및 法人인 때에는 그의 事務를 執行하는 任員의 姓名 및 住所
 2.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 및 小賣商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는 바다면적
 - 2의 2. 그 建物內의 店鋪面積의 合計 및 區分
 3. 그 建物を 店鋪用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賃貸 또는 讓渡하는 小賣商의 數 및 그 小賣商이 주로 販賣하는 物品의 種類
 4. 그 建物を 申請에 관계되는 許可를 받는 날 이후에 店鋪로 使用하기 위하여 賃借하는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그 建物에 관계되는 借賃 기타 賃貸條件 또는 그 建物を 申請에 관계된 許可를 받는 날 이후에 店鋪用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그 建物에 관계되는 讓渡代金의 金額 기타 讓渡條件
- ②前項의 申請書에는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나타내는 圖面, 그 建物의 賃貸契約書案 또는 讓渡契約書案 기타 主務省令이 정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5條 (許可의 基準) 都道府縣知事は 第3條第1項의 許可의 申請이있는 경우에는, 그 申請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認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同項의 許可를 하여야 한다.

1. 當該 小賣市場이 開設됨으로써 當該 小賣市場內의 小賣商과 주변의 小賣市場內의 小賣商과의 競爭 또는 當該 小賣市場內의 小賣商과 주변의 小賣商과의 競爭이 과도하게 行하여지게 되어 中小小賣商의 經營이 현저하게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前條 第1項 第4號의 條件 또는 讓渡條件이 主務省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경우
3. 申請者가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刑에 처해지고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4. 申請者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의 전부 또는 일부가 前號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
5. 申請者가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을 받고 그 取消日로부터 1년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인 경우

第6條 (經過措置) ①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建物を 店鋪로 사용하는 小賣商에게 賃貸하는 者는 그 建物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때에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로부터 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어떤 地域이 指定地域으로 됨에 즈음하여 그 地域內에서 小賣市場으로 되는 建物. 그 地域이 指定地域으로 된 때
2. 指定地域內의 建物이 第3條 第1項의 物品을 定하는 政令이 制定되거나 改廢됨으로써 小賣市場으로 될 때에 있어 그 建物. 그 建物이 小賣市場으로 된 때

3. 그 建物內 店舖面積區分의 變更 기타 主務省令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小賣市場으로 된 指定地域內의 建物. 그 建物이 小賣市場으로 된 때

②前項의 指定에 의하여 同項 各號에 掲記하는 建物에 대하여 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者는 그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起算하여 1월 이내에 다음에 掲記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를 當該 都道府縣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第4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에 掲記하는 사항

2. 그 建物을 그 店舖로 사용하기 위하여 賃借하는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그 建物에 관계되는 借賃 기타 賃貸條件

③前項의 申告書에는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나타내는 圖面, 그 建物の 賃貸契約書의 寫本 기타 主務省令이 정하는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7條 (變更의 許可 등) ①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 및 前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者(이하 “小賣市場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都道府縣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第4條 第1項 第2號의 小賣商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는 바닥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때

2. 第4條 第1項 第4號의 賃貸條件 또는 讓渡條件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前條 第1項의 규정에 따라 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者에 대하여는 前條 第2項 第2號의 賃貸條件과 다른 條件으로 賃貸하고자 하는 때)

②都道府縣知事は 前項許可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申請에 관계되는 變更에 따라 同項 第1號에 관계되는 申請에는 第5條 第1號에, 同項 第2號에 관계되는 申請에는 同條 第2項에 해당한다고 認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그의 許可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條 第1號 중 “當該 小賣市場이 開設됨”은 申請에 관계되는 “바닥면적이 擴張됨으로써”로 대체한다.

③小賣市場開設者は 第4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사항에 變更이 있을 때(第1項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는 除外한다)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當該都道府縣知事に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4條 第4項의 규정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에 準用한다.

第8條 (賃貸契約 등을 締結하는 경우의 基準) 小賣市場開設者は 第3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建物을 小賣商에게 店舖用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賃貸 또는 讓渡하는 경우에는 第4條 第1項 第2號 및 第4號에 掲記하는 사항(第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第3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者는 第4條 第1項 第2號에 掲記하는 사항 및 그 建物을 第6條 第2項의 申告書의 제출이 있는 날 이후에 店舖로 사용하고자 賃借하는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그 建物에 관계되는 借賃 기타 賃付條件)이 記載한 內容(그의 變更에 대하여는 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

許可에 관계되는 變更 후의 內容)에 합치하도록 賃貸契約 또는 讓渡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賃貸契約 또는 讓渡契約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같다.

第9條 (承繼) ①第3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建物の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 賃貸 또는 返還을 받은 者는 政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物の 전부 또는 일부에 관계되는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小賣市場開設者에 대하여 相續 또는 合併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政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建物에 관계되는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지체없이 그의 취지를 當該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 (許可의 取消) ①都道府縣知事は 小賣市場開設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第3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建物を 10 이상의 小賣商이 店鋪로 使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者들에 賃貸 또는 讓渡를 하지 아니하는 期間이 1년 이상 계속될 때에는 그 小賣市場開設者에 관계되는 同項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②第3條 第4項의 規定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準用한다.

第11條 (經過措置의 政令에의 委任) 第6條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政令을 制定하거나 改廢하는 경우에는 그 政令에서 制定 또는 改廢에 따른 合理的으로 필요하다고 判定되는 範圍內에서 소요의 經過措置(罰則에 관한 經過措置를 포함한다)를 定할 수 있다.

第12條 (請求) ①都道府縣知事は 小賣市場에서 指定地域內에 있는 것을 店鋪로 使用하는 小賣商이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1947년 法律 第54號) 第2條 第9項에서 規定하는 不公正한 去來方法(이하 “不公正한 去來方法”이라 한다)을 使用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主務大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主務大臣은 通商産業大臣 및 當該 請求에 관계되는 小賣商의 事業을 所管하는 大臣으로 한다.

第13條 (公正去來委員會의 指示)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小賣市場에서 指定地域內에 있는 것을 店鋪로 使用하는 小賣商이 不公正한 去來方法을 使用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小賣商에 대하여 신속히 그 行위를 中止하도록 指示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를 한 경우 小賣商이 그 指示에 따른 때에는 小賣商의 지시에 관계되는 行위에 대하여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 第48條, 第49條, 第53條의 3 및 第54條(違反者에 대한 勸告, 審判節次의 開始, 審決 등)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4條 (製造業者 등의 小賣業兼業의 申告) 政令에서 指定하는 物品의 製造業者 또는

都賣業者이며 政令이 정하는 地域內에서 當該 物品의 小賣業을 經營하는 者는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都道府縣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그 小賣業을 廢止한 때에도 같다.

第14條의 2 (調査) ①中小小賣商團體(一般消費者에 대한 特定の 物品의販賣事業(이하 “特定物品販賣事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者인 것을 그 직접 또는 간접의 構成員(이하 “構成員”이라 한다)의 資格으로 하고 또 그 構成員의 대부분이 中小小賣商인 團體이며 政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大企業者가 該當 特定物品販賣事業과 同種의 事業(大規模小賣店鋪에 있어서의 小賣業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한法律(1973년 法律 第109號) 第2條 第2項에서 규정하는 大規模小賣店鋪(이하 “大規模小賣店鋪”라 한다)에 있어서 행하는 것은 除外한다)에 대하여 當該 中小小賣商團體의 構成員인 相當數의 中小小賣商의 經營의 安定에 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事業의 開始 또는 擴大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知事에 대하여 當該 計劃의 內容에 관하여 그 開始 또는 擴大의 始期, 規模 기타 主務省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調査하도록 申請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當該 申請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當該 申請에 관계되는 사항에 필요한 調査를 행하고 그 結果를 當該 中小小賣商단체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15條 (斡旋 또는 調停) 都道府縣知事は 다음 各號의 1. 에 掲記하는 紛爭에 대하여 그 紛爭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斡旋 또는 調停의 申請이 있는 경우 物品의 流通秩序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신속히 斡旋 또는 調停을 행한다.

1. 製造業者가 그의 製造에 관계되는 物品에 대하여 행하는 一般消費者에 대한 販賣事業에 관하여 그 物品과 同種의 것을 販賣하는 中小小賣商과 그 製造業者間에 발생한 紛爭
2. 都賣業者가 그의 都賣에 관계되는 物品에 대하여 행하는 一般消費者에 대한 販賣事業에 관하여 그 物品과 同種의 것을 販賣하는 中小小賣商과 都賣業者間에 발생한 紛爭
3. 前2號에서 掲記하는 것 외에 中小小賣商 이외의 者가 행하는 一般消費者에 대한 物品의 販賣事業에 관하여 그 者와 中小小賣商間에 발생한 紛爭
4. 小賣市場에서 指定地域內에 있는 것을 店鋪로 사용하는 小賣商의 販賣事業에 관하여 當該 小賣市場開設者 또는 이들 小賣商과 當該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의 周邊地域內의 中小小賣商間에 발생한 紛爭

第16條 (調停員 등) ①都道府縣知事は 前條의 調停을 調停員에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調停員은 1사건마다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公益을 代表하는 者 및 當該 紛爭當事者의 事業에 관하여 學識·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都道府縣知事が 委

囑한다.

③第1項의 調停員은 前條의 調停을 행하는 경우에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이를 當事者 雙方에게 提示하여 受諾을 勸告한다.

④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가 있는 경우 物品의 流通秩序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勸告에 關係되는 調停案의 理由를 添附하여 公表할 수 있다.

⑤前 各號에서 정하는 것 외에 調停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에서 정한다.

第16條의 2 (調整의 申請) ①中小小賣商團體는 大企業者가 當該 中小小賣團體의 構成員의 資格에 關係되는 特定物品 販賣事業과 同種의 事業(大規模小賣店舖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除外한다)에 대하여 事業을 개시 또는 확대하는 것에 關하여 當該 大企業者와 當該 中小小賣商團體의 構成員인 中小小賣商間에 第15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紛爭이 발생한 경우(그의 紛爭에 대하여 同條의 斡旋 또는 調停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는 除外한다) 當該 事業을 開始 또는 擴大하는 것이 當該 中小小賣商團體의 構成員인 相當數의 中小小賣商이 현재 販賣하고 있는 物品에 대한 需要의 減少를 가져오므로써 이들 中小小賣商의 經營의 安정에 현저하게 影響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知事に 대하여 다음 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도록 申請할 수 있다.

②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當該 申請에 關係되는 大企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의 3 (調整勸告) ①都道府縣知事は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當該 申告를 한 中小小賣商團體 및 當該 申請에 關係되는 大企業者間에 同項에서 規定하는 사태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當該 事態의 발생을 회피함으로써 中小小賣商의 事業活動의 기회를 적정하게 確保할 需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大企業에 대하여 當該 事業의 개시 또는 확대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當該 事業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의 內容은 前條 第1項에서 規定하는 사태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 一般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의 利益을 부당히 害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都道府縣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中小小賣商團體 및 當該 申請에 關係되는 大企業者 및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一般消費者, 關聯事業者 기타의 利害關係者의 意見を 청취하여야 한다.

④都道府縣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한 경우 大企業者가 그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公表할 수 있다.

⑤都道府縣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한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勸告의 內容을, 同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취지 및 이유를, 前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請을 한 中小小賣商團體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6條의 4 (一時停止勸告) ①都道府縣知事は 第16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請에 관계되는 大企業者가 當該 申請에 관계되는 事業의 開始 또는 擴大에 관한 計劃을 實施함으로써 前條 第1項에서 규정하는 措置를 執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大企業에 대하여 同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가 행하여질 기간 동안 應急措置로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當該事態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當該 計劃의 實施를 一時的으로 停止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 期間內에 同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當該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前條 第4項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에 準用한다.

第16條의 5 (調整命令) ①都道府縣知事は 第16條의 3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를 받은 大企業者가 同條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그 勸告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공포한 후에, 또 정당한 이유없이 그의 勸告에 관계되는 措置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第16條의 2 第1項에서 규정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同項의 규정에 의한 申請을 한 中小小賣商團體의 構成員인 中小小賣商의 상당부분의 事業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當該 大企業者에 대하여 當該 勸告에 관계되는 措置를 執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6條의 3 第3項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準用한다.

第16條의 6 (主務大臣에 의한 調整措置) ①主務大臣은 第16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請에 관계되는 紛爭에 대하여 都道府縣知事로부터의 申請이 있는 경우 스스로 當該 紛爭의 解決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第16條의 3 내지 前條의 규정의 例에 의하여 當該 申請에 관계되는 大企業者의 事業活動의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執行할 수 있다.

②主務大臣은 前項의 규정에 따라 그 예의 의한 것이 되는 第16條의 3 第1項 또는 前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勸告를 하고자 하는 때 또는 命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通商産業大臣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6條의 7 (商店街振興組合 등에 의한 調査의 申請 등) 商店街振興組合,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 事業協同組合 또는 協同組合聯合會이며 商店街振興組合 또는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의 設立의 要件에 準하는 것으로서 政令이 정하는 要件에 해당하는 者 및 第3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하나의 小賣市場內의 小賣商人 者를 그 組合員의 資格으로, 또 當該 小賣市場內의 小賣商의 대부분이 組合員인 事業協同組合 및 當該 事業協同組合인 者를 그 直接 또는 間接의 會員의 資格으로 하는 協同組合聯合會(이하 이 條에서는 “商店街振興組合 등”이라 한다)는 이 法の 適用에 관하여 中小小賣商團體로 본다. 이 경우 第14條의 2 第1項 중 “特定物品販賣事業과 同種의 事業”, “中小小賣商團體의 構成員의 資格에 관계되는 特定物品販賣事業과 同種의 事

業”으로 되어 있는 것은 “商店街振興組수 등의 構成員인 中小小賣商이 현재 販賣하는 物品과 同種의 物品의 販賣事業”으로, 第14條의 2 第1項 중 “中小小賣商의 經營”으로 되어 있는 것은 “中小小賣商(當該 同種의 物品의 販賣事業을 행하는 中小小賣商을 말한다. 이하 第16條의 2 第1項, 第16條의 3 第1項 및 第16條의 5 第1項에서 같다)의 經營”으로 한다.

第17條 (勸告) 都道府縣知事は 第15條 各號의 1.에 掲記하는 紛爭(第16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관계되는 것 및 大規模小賣店鋪에서 小賣業을 營爲하는 者와 그 周邊의 中小小賣商間에 발생한 것은 除外한다. 다음 條 第1項에서 같다)이 發生한 경우(그의 紛爭에 있어 第15條의 斡旋 또는 調整을 행하는 경우를 除外한다) 物品의 流通秩序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紛爭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에 대하여 그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第18條 ①主務大臣은 第15條 各號의 1.에 掲記하는 紛爭(同條의 斡旋 또는 調整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除外한다)에 대하여 都道府縣知事로부터의 申請이 있는 경우 物品의 流通秩序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紛爭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에 대하여 그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勸告를 할 수 있다.

②主務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하고자 할 때에는 通商産業大臣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9條 (報告要求 및 出入檢査) ①都道府縣知事は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限度內에서 購買會事業을 행하는 者, 小賣市場開設者 또는 第3條 第1項의 許可에 관계되는 建物內의 小賣商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報告를 요구하거나 그 職員에게 이들의 事業所 또는 事業所에 出入하여 事業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主務大臣 또는 都道府縣知事は 第16條의 3 내지 第16條의 6의 規定의 施行에 필요한 한도內에서 第1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申請과 관계되는 大企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報告를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職員은 그의 身分을 提示하는 證明書を 휴대하고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의 權限은 犯罪搜查를 위하여 認定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0條 (不服申請)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하는 者는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審査請求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 또는 決定(却下の 裁決 또는 決定은 除外한다)은 審査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을 두고 豫告하고 公開에 의한 聽聞을 行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豫告에 있어서는 期日, 場所 및 事業의 內容을 明示하여야 한다.

④聽聞에 즈음하여서는 審査請求人 또는 異議申請人 및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當該事件에 있어서 證據를 提示하고 意見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20條의 2 (主務大臣) 第16條의 6, 第18條 및 第19條 第1項의 主務大臣은 第16條의 6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의 例에 의한 것인 第16條의 3 내지 第16條의 5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 第18條 第1項의 勸告의 對象인 者의 當該事業을 소관하는 大臣(그 勸告의 對象인 者가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聯合會인 때에는 勸告의 對象인 者의 當該事業을 所管하는 大臣 및 그 組合 또는 聯合會에 所管하는 大臣)으로 한다.

第21條 (主務省令) 第1條의 2 第3項 第2號, 第2條, 第4條 第2項, 第5條 第2號, 第6條 第1項 第3號 및 第3項, 第14條, 第14條의 2 第1項, 第16條의 2 第1項 및 第16條의 3 第3項(第16條의 5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主務省令은 大藏省令, 厚生省令, 農林水産省令, 通商産業省令으로 한다.

第2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만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 第1項의 규정에 違反한 者
2. 第8條의 규정에 違反하여 貸貸契約 또는 讓渡契約을 締結하거나 이것을 變更한 者
3. 虛僞 또는 不正의 事實에 기초하여 第3條 第1項 또는 第7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
4. 第16條의 5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 또는 第16條의 6 第1項의 규정에 따라 그의 例에 의한 것인 第16條의 5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23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만엔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2項, 第7條 第3項 또는 第9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者
2. 第1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3. 第19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24條 法人의 代表者, 法人,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的 業務에 관하여 前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 각 本條의 刑을 科한다.

第25條 第2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禁止에 違反하거나 同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法人에 있어서는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는 5만圓 이하의 過料에 處한다.

附 則
(省 略)

中小小賣商業振興法

1973년 9월 29일 制定 法律 第101號
1991년 5월 24일 法律 第84號
(第1次 改正)

第1條 (目的) 이 법은 商店街의 整備, 店舖의 集團化, 共同店舖 등의 事業實施를 원활히 하고 中小小賣商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촉진함으로써 中小小賣商業의 振興을 도모하고, 이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1억圓 이하인 會社 및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수가 300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工業, 鑛業, 運送業 기타 업종(第2號에 揭記하는 業種 및 第3號의 政令에서 정하는 業種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
2.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1천만圓 이하인 會社 및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수가 50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小賣業 또는 서비스業(第3號의 政令에서 정하는 業種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 및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3천만圓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都賣業(第3號의 政令에서 정하는 業種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
3.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이 그 業種別로 政令에서 정하는 金額 이하인 會社 및 常時 사용하는 從業員의 數가 그 業種別로 政令에서 정하는 數 이하인 會社 및 個人으로서 그 政令에서 정하는 業種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
4. 企業組合
5. 協業組合
6. 事業協同組合, 事業協同小組合·協同組合聯合會, 商工組合·商工組合聯合會 및 商店街振興組合·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이하 “組合 등”이라고 한다)

②이 법에서 “中小小賣商業者”라 함은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로서 前項 第2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振興指針) ①通商産業大臣은 中小小賣商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中小小賣商業者에 대한 일반적인 指針(이하 “振興指針”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振興指針에는 다음에 揭記한 事項에 관하여 정한다.

1. 經營近代化의 目標에 관한 事項
2. 經營管理의 合理化에 관한 事項
3. 施設 및 設備의 近代化에 관한 事項
4. 事業의 共同化에 관한 事項

5. 中小小賣業 從事者의 福利厚生에 관한 事項

6. 기타 中小小賣商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

③通商産業大臣은 振興指針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소관하는 大臣과 協議하고 또한 中小企業近代化協議會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通商産業大臣은 振興指針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要旨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4條 (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①商店街振興組合 또는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 事業協同組合, 事業協同小組合 또는 協同組合聯合會 또는 中小企業團體의 組織에 관한 法律(1957년 法律 第185號) 第9條(設立) 단서에서 規定하는 商店街組合 또는 이를 會員으로 하는 商工組合聯合會(第6條(減價償却의 特例) 第1號에서 “商店街振興組合 등”이라고 한다)는 주로 中小小賣商業者인 組合員 또는 所屬員의 經營近代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商店街의 區域에서 店鋪, 아케이드, 街路燈 기타 施設 또는 設備을 設置하는 事業에 관하여 商店街整備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通商産業大臣에게 제출하여 당해 商店街整備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事業協同組合, 事業協同小組合 또는 協同組合聯合會(第6條 第1號에서 “事業協同組合 등”이라고 한다)는 주로 中小小賣商業者인 組合員 또는 所屬員의 經營近代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店鋪를 1개단지에 집단으로 설치하는 事業(당해 事業에 병행하여 아케이드, 街路燈 기타 施設 또는 設備을 設置하는 事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店鋪集團化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通商産業大臣에게 제출하여 당해 店鋪集團化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第1號 또는 第2號에 掲記하는 組合은 당해 各號에 정하는 事業에 관하여, 第3號에 掲記하는 中小小賣商業者는 당해 合併 또는 出資를 하고자 하는 다른 中小小賣商業者와 공동으로 同號에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 第4號에 掲記하는 會社는 同號에 정하는 事業에 관하여 각각 共同店鋪等整備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通商産業大臣에게 제출하여 당해 店鋪等整備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事業協同組合 또는 事業協同小組合 : 中小小賣商業者인 組合員을 위한 共同店鋪 또는 休憩所, 集會場 기타 共同店鋪와 併設되는 施設 또는 共同店鋪의 設備(이하 本項 및 第8條에서 “共同店鋪 등”이라 한다)의 設置事業

2. 協業組合 : 組合의 店鋪 또는 休憩所, 集會場 기타 店鋪와 併設되는 施設 또는 店鋪의 施設(다음 號에서 “店鋪 등”이라 한다)의 設置事業

3. 다른 中小小賣商業者와 合併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中小小賣商業者와 함께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의 대부분을 出資하여 會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中小小賣商業者 : 다음에 掲記하는 事業

가. 合併 또는 出資에 의하여 設立되는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會社(合併後 존속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店鋪 등의 設置事業

나. 出資에 의하여 設立되는 會社 및 그 會社에 出資하고자 하는 中小小賣事業者를 위한 共同店舖 등의 設置事業

4. 2인 이상의 中小小賣事業者가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의 대부분을 出資하고 있는 會社: 당해 會社 및 당해 會社에 出資하고 있는 中小小賣事業者를 위한 共同店舖 등의 設置事業

④第1號에 揭記하는 組合 등은 同號에 정하는 事業에 관하여, 第2號에 揭記하는 組合 등 또는 中小小賣事業者는 당해 출자를 하고자 하는 다른 組合 등 또는 中小小賣事業者와 공동으로 同號에 정하는 事業에 관하여, 第3號에 揭記하는 會社는 同號에 정하는 事業에 관하여 각각 電子計算機利用經營管理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主務大臣에게 제출하여 당해 電子計算機利用經營管理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組合 등: 電子計算機를 利用하여 中小小賣事業者인 組合員 또는 所屬員의 經營管理를 合理化할 目的으로 提供되는 施設 또는 設備의 設置事業

2. 다른 組合 등 또는 中小小賣事業者와 함께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의 대부분을 出資하여 회사를 設立하고자 하는 組合 등 또는 中小小賣事業者: 電子計算機를 利用하여, 당해 會社에 出資하고자 하는 組合 등의 中小小賣事業者인 組合員이나 所屬員 또는 中小小賣事業者의 經營管理를 合理化하는 事業目的으로 이용할 施設 또는 設備의 設置事業

3. 2개 이상의 組合 등 또는 中小小賣事業者가 資本額 또는 出資總額의 대부분을 出資하고 있는 會社: 電子計算機를 利用하여, 당해 會社에 出資하고 있는 組合 등의 中小小賣事業者인 組合員이나 所屬員 또는 中小小賣事業者의 經營管理를 合理化하는 事業目的으로 이용할 施設 또는 設備의 設置事業

⑤連鎖化事業(주로 中小小賣事業者에 대하여 定型的인 約款에 의한 契約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商品을 販賣하거나 또는 販賣를 앞선하고 經營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連鎖化事業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倉庫 그밖의 施設 또는 設備를 設置하는 事業에 관하여 連鎖化事業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主務大臣에게 제출하여 當該 連鎖化事業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⑥中小企業자가 出資하고 있는 會社로서 政令에서 정하는 要件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特定會社”라고 한다) 또는 民法(1896년 法律 第89號) 第34條(公益法人의 設立)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法人(以下 “公益法人”이라고 한다) 또는 特定會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は 商店街의 區域, 團地 또는 建物内部에서 集團으로 事業을 영위하는 中小小賣事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共同店舖, 아케이드, 休憩所 기타 施設 또는 設備를 設置하는 事業에 관하여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을 작성하고 이를 通商産業大臣에게 제출하여 당해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이 政令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⑦商店街整備計劃, 店鋪集團化計劃, 共同店鋪等整備計劃, 電子計算機利用 經營管理計劃, 連鎖化事業計劃 또는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以下 “高度化事業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에 掲記하는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第1項 또는 第2項에서 規定하는 事業, 第3項 또는 第4項 각호에서 정하는 事業 또는 前2項에 規定하는 事業(이하 “高度化事業”이라 한다)의 目標 및 內容
2. 高度化事業의 實施時期
3. 高度化事業의 實施에 필요한 資金의 額 및 그 調達方法

⑧通商産業大臣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는 同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정하는 事業에 關係되는 共同店鋪等整備計劃에 있어서는 당해 共同店鋪等整備計劃에 關係되는 組合을 所管하는 大臣에게, 同項 第3號 또는 第4號에 정하는 事業에 關係되는 共同店鋪等整備計劃에 있어서는 당해 共同店鋪等整備計劃에 關係되는 店鋪 또는 共同店鋪에서 行하여지는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所管하는 大臣에게, 共同店鋪 등의 設置事業에 關係되는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에 關係하여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에 關係되는 共同店鋪에서 行하여지는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所管하는 大臣과 協議하여야 한다. 前各項에 規定하는 것 외에 高度化事業計劃의 인정 및 그 取消에 關係하여 필요한 사항은 政令에서 정한다.

第5條 (資金의 確保) 國家는 前條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高度化事業計劃(以下 “認定計劃”이라 한다)에 의거한 高度化事業의 實施 기타 中小小賣商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위한 事業의 實施에 필요한 資金의 確保 또는 그 融通의 斡旋에 노력한다.

第5條의 2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の 特例)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1956년 法律 第115號) 第3條(中小企業設備近代化資金의 貸付事業을 행하는 都道府縣에 대한 國家의 助成 등) 第1項에 規定하는 中小企業設備近代化資金의 貸付事業에 關係되는 貸付金으로서 認定計劃에 의거하여 設置되는 設備에 關係되는 것에 關係하여는, 同法 第5條(利率 및 償還期間)의 規定에 關係없이, 그 償還期間은 7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이 정하는 期間으로 한다.

第5條의 3 (中小企業信用保險法の 特例) ①中小企業信用保險法(1950년 法律 第264號) 第3條(普通保險) 第1項에 規定하는 普通保險(이하 “普通保險”이라 한다), 同法 第2條의 2(無擔保保險) 第1項에 規定하는 無擔保保險(이하 “無擔保保險”이라 한다) 또는 同法 第3條의 3(特別少額保險) 第1項에 규정하는 特別少額保險(이하 “特別少額保險”이라 한다)의 保險關係로서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同法 第3條 第1項, 第3條의 2 第1項 또는 第3條의 3 第1項에 規定하는 債務의 保證으로서 第4條(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高度化事業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同條 第5項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連鎖化事業計劃에 關係되는 連鎖化事業에 加盟하는 자(이하 “加盟者”라 한다)가 實施하는 事

業으로서 당해 連鎖化事業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實施에 필요한 資金에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中小企業者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다음 表의 上欄에 掲記하는 同法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이들 規定 가운데 同表의 中欄에 掲記하는 字句로 代替한다.

第3條 第1項	第3條의 2 第1項, 第3條의 3 第1項	第3條의 2 第3項, 第3條의 3 第2項	
保險價格의 合計額이	保險價格의 合計額이	當該 保證을 행한	當該 債務者
中小小賣商振興法 第5條의 3 第1項에 規定하는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이하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保險關係의 保險價額合計額과 기타 保險關係의 保險價額의 合計額이 각각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에 保險關係의 保險價額合計額과 기타 保險關係의 合計額이 각각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 및 기타의 保證別로 각각 當該保證을 행한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 및 기타의 保證別로, 當該債務者

②普通保險의 保險關係로서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中小企業信用保險法 第3條 第2項 및 第5條(保險金)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同法 第3條 第2項 중 “100분의 70” 및 同法 第5條 중 “100분의 70(無擔保保險, 特別少額保險, 公害防止保險, 에너지對策保險, 海外投資關係保險 및 新事業開拓保險에 관하여는 100분의 8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③普通保險, 無擔保保險 또는 特別少額保險의 保險關係로서 中小小賣商業關聯保證에 관계되는 것에 관한 保險料의 額은 中小企業信用保險法 第4條 “保險料”의 規定에 관계없이 保險金額에 年 100분의2 이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率을 곱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第5條의 4 (高度化事業의 認定 등) 第4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公益法人(그 出資金額 또는 據出된 金額의 2분의 1 이상이 中小企業者에 의하여 出資 또는 據出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인정을 받은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의 實施에 필요한 資金에 관계되는 中小企業信用保險法 第3條(普通保險) 第1項 또는 第3條의 2(無擔保保險) 第1項에 規定하는 債務의 保證을 받은 法人에 관하여는, 당해 公益法人을 同法 第2條(定義) 第1項의 中小企業者로 간

주하여 同法 第3條, 第3條의 2 및 第4條 내지 第8條(保險料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同法 第34條 第1項 및 第3條의 2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관하여는 이들 規定中 “借入”은 “中小小賣商業振興法 第4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商店街整備等支援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의 實施에 필요한 資金의 借入”으로 본다.

第6條 (減價償却의 特例) 다음에 揭記하는 者は 租稅特別措置法(1957년 法律 第26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認定計劃에 관계되는 減價償却資産에 관하여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1. 第4條(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商店街振興組合등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받은 事業協同組合 등 또는 그 組合員이나 所屬員(中小小賣商業者 또는 中小서비스業者(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을 주된 事業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第2條(定義) 第1項 第2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에 한한다)
2.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事業協同組合, 事業協同小組合 또는 協業組合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에 관계되는 同項 第3號 가에 規定하는 會社
3. 第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組合 등
4. 第4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者
5. 第4條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에 관계되는 同項에 規定하는 特別會社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公益法人

第7條 (調査) 國家는 中小小賣商業者가 地域의 條件을 고려하여 經營近代化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에서의 小賣商業의 實態 및 그 經濟的 社會的 條件에 관한 調査를 행하고 地域에서의 小賣商業의 장래 전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第8條 (研修事業의 實施 등) ①國家는 中小小賣商業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研修事業의 實施, 經營指導擔當者의 養成 기타 措置를 강구한다.

②國家는 中小小賣商業者의 依賴에 따라 그 經營近代化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 및 助言을 한다.

第9條 (小規模企業者에 대한 配慮) 國家는 中小小賣商業者의 經營近代化를 위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 小規模企業者에 대한 特別配慮를 하여야 한다.

第10條 (地方公共團體의 施策) 地方公共團體는 國家의 施策에 準하여 施策을 강구한다.

第11條 (特定連鎖化事業運營의 適正化) ①連鎖化事業으로서 當該 連鎖化事業에 관계되는 約款에 加盟者에게 特定の 商標, 商號 기타 表示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 및 加盟者로부터 加盟時 加盟金, 保證金 기타 金錢을 징수하는 취지의 正함이 있는 事業(이하 “特定連鎖化事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者는 當該 特定連鎖化事業에 加盟하

고자 하는 者와 契約을 締結할 때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記載한 書面을 交付하고 그 記載事項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加盟時 징수하는 加盟金, 保證金 기타 金錢에 관한 事項
2. 加盟者에 대한 商品의 販賣條件에 관한 事項
3. 經營指導에 관한 事項
4. 사용하는 商標, 商號 기타 表示에 관한 事項
5. 契約期間 및 契約의 更新과 解除에 관한 事項
6. 前各號에 掲記하는 것 외에 通商産業省令에서 정하는 事項

②通商産業大臣은 前項의 通商産業省令을 制定 또는 改廢하고자 하는 때는 小賣業에 속하는 事業을 所管하는 大臣에게 協議하여야 한다.

第12條 (同前) ①主務大臣은 特定連鎖化事業을 행하는 者가 前條 第1項의 規定을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 同項의 規定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主務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한 경우에 特定連鎖化事業을 행하는 者가 그 勸告에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公表할 수 있다.

第13條 (報告의 要求) ①通商産業大臣은 第4條(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高度化事業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을 實施하는 者에 대하여 當該 事業의 實施狀況에 관하여 報告를 요구할 수 있다.

②主務大臣은 第4條 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을 받은 高度化事業計劃에 의거한 高度化事業을 實施하는 者에 대하여는 當該 事業의 實施狀況에 관하여, 特定連鎖化事業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前條의 規定의 施行에 필요한 限度에서 그 業務에 관하여 報告를 요구할 수 있다.

第14條 (主務大臣) 이 法律에서의 主務大臣은 다음과 같다.

1. 第4條(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第4項에 規定하는 電子計算機利用 經營管理計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通商産業大臣 및 同項 各號에 정하는 事業에 의하여 經營管理를 合理化하는 中小小賣商業者가 販賣하는 주된 商品의 流通을 所管하는 大臣
2. 第4條 第5項에 規定하는 連鎖化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및 特定連鎖化事業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는 通商産業大臣 및 連鎖化事業에 관계되는 주된 商品의 流通을 所管하는 大臣

第15條 (權限의 委任)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大臣, 主務大臣 및 第4條(高度化事業計劃의 認定 등) 第8項에 規定하는 所管大臣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은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都道府縣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6條 (罰則) ①第13條(報告의 要求)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

의 報告를 한 자는 10만圓 이상의 罰金에 처한다.

②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事業에 관하여 前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同項의 刑을 科한다.

附 則

(省 略)

商店街振興組合法

1962年 5月 17日 制定 法律 第141號
1965年 3月 31日 改正法律 第36號
(所得稅法및法人稅法의施行에따른關係法令의整備등에
관한法律 第63條에 의한 改正)
1974年 4月 2日 改正法律 第23號
(商法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등의施行에따른關係法律의
整備등에관한法律 第35條에 의한 改正)
1980年 6月 9日 改正法律 第79號
(中小企業등協同組合法등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 第6條에
의한 改正)
1981年 6月 9日 改正法律 第75號
(商法등의一部를改正하는法律의施行에따른關係法律의
整備등에관한法律 第40條에 의한 改正)

目 次

- 第1章 總則(第1條)
- 第2章 商店街振興組合 및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
 - 第1節 通則(第2條~第12條)
 - 第2節 事業(第13條~第19條)
 - 第3節 組合員 및 會員(第20條~第33條)
 - 第4節 設立(第34條~第41條)
 - 第5節 管理(第42條~第71條)
 - 第6節 解散 및 清算(第72條~第78條)
- 第3章 助成措置(第79條)
- 第4章 雜則(第80條~第89條)
- 第5章 罰則(第90條~第94條)
- 附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商店街가 형성되어 있는 地域에서 小賣商業 또는 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 기타 事業을 영위하는 者 등이 協同하여 經濟事業을 행함과 동시에 當該 地域還境의 整備改善을 도모하기 위한 事業을 행함에 필요한 組織 등에 관하여 規定함으로써 이들 事業者의 事業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과 아울러 公共福祉의 增

進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章 商店街振興組合 및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

第1節 通則

第2條 (人格 및 住所) ①商店街振興組合 및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이하 “組合”이라 總稱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②組合의 住所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둔다.

第3條 (登記) ①組合은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登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따라 登記하여야 하는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이를 가지고 第3者에 對抗할 수 없다.

第4條 (基準 및 原則) ①組合은 이 法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1. 組合員 또는 會員의 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 組合員 또는 會員이 任意로 加入하고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3. 組合員 또는 會員의 議決權 및 選舉權은 出資座數에 관계없이 平等할 것
4. 組合의 剩餘金 配當은 주로 組合事業의 利用分量에 따라 행하며, 出資額에 따라 配當할 때는 그 限度를 정하고 있을 것

②組合은 그 행하는 事業에 의하여 그 組合員 또는 會員에게 직접 奉仕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特定한 組合員 또는 會員의 利益 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事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組合은 特定한 政黨을 위하여 利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5條 (名稱) ①組合은 그 名稱中에 商店街振興組合 또는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組合 이외의 者는 그 名稱中에 商店街振興組合 또는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組合의 名稱에 관하여는 商法(1899年 法律 第48號) 第19條 내지 第21條(商號)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 (商店街振興組合地區) ①商店街振興組合地區는 小賣商業 또는 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 30人 이상이 近接하여 그 事業을 영위하는 市(都의 區를 포함한다. 第11條 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의 區域에 속하는 地域으로서 그 대부분에 商店街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단, 小賣商業 또는 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 30人 이상이 近接하여 그 事業을 영위하는 地域으로서 그 대부분에 商店街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市의 區域과 當該 市에 隣接하는 町村의 區域에 걸쳐있는 경우는 當該 商店街가 형성되어 있는 地域의 대부분이 當該 市의 區

域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當該 町村의 區域에 걸쳐 있는 부분의 地域을 그 地區에 포함할 수 있다.

②商店街振興組合地區는 2개 이상의 都府縣의 區域에 걸쳐서는 아니된다.

第7條 (同前) 商店街振興組合地區는 다른 商店街振興組合地區와 重複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條 (商店街振興組合 組合員의 資格) 商店街振興組合의 組合員인 資格을 갖는 者는 그 地區內에서 小賣商業 또는 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 기타 事業을 영위하는 者 및 定款에서 정한 때에는 이들 이외의 者로 한다.

第9條 (商店街振興組合의 設立) 商店街振興組合은 組合員인 資格을 갖는 者 3분의 2 이상이 組合員이 되고, 總組合員 2분의 1 이상이 小賣商業 또는 서비스業에 속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가 아니면 設立할 수 없다.

第10條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 會員의 資格) 商店街振興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의 會員資格을 갖는 者는 그 地區의 一部를 地區로 하는 組合으로서 定款에서 정하는 組合으로 한다.

第11條 (聯合會의 設立) ①聯合會는 會員資格을 갖는 組合 2분의 1 이상이 會員으로 되지 아니하면 設立할 수 없다.

②市(地方自治法(1947年 法律 第67號) 第252條의 19 第1項의 指定都市를 제외한다. 이하 本項에서는 같다)의 區域에 속하는 地域의 全部를 그 地區로 하는 聯合會 또는 市의 地域에 속하는 地域의 一部를 地區로 하는 商工會議所가 設立되어 있는 경우에는 當該 市의 區域에 속하는 地域內의 當該 商工會議所의 地區인 地域의 全部를 그 地區로 하는 聯合會는 設立할 수 없다.

第12條 (事業利用分量配當의 課稅特例) 組合이 組合事業의 利用分量에 따라 配當한 剩餘金의 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法人稅法(1965年 法律 第34號)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組合의 同法에 規定하는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의 計算上 損金에 算入한다.

第2節 事業

第13條 (商店街振興組合의 事業) ①商店街振興組合은 다음 事業의 全部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販賣, 購買, 保管, 運送, 檢査 기타 組合員의 事業에 관한 共同施設
2. 組合員을 위한 商品券의 發行, 割賦購入斡旋 기타 販賣方法에 관한 共同事業
3. 組合員에 대한 事業資金의 貸付(어음割引을 포함한다) 및 組合員을 위한 그 借入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施設
5. 組合員의 事業에 관한 經營 및 技術의 改善向上 또는 組合事業에 관한 知識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敎育 및 情報의 제공에 관한 施設

6. 組合員の事業에 관계되는 休日, 開店 또는 閉店の時刻 등에 관한 指導
7. 組合員の 從業員の 集團의 雇傭 및 그 從業員에 관계되는 貨金, 勤勞時間, 寄宿舍 등 勤勞條件의 改善에 관한 事業
8. 街路燈, 아케이드, 駐車場, 物品保管所, 休憩所 등 組合員 및 一般公衆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施設
9. 組合員の 事業發展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商店街振興組合地區內 土地의 合理的 利用에 관한 計劃의 設定 및 그 實行에 관한 組合員에 대한 助言
10. 組合員이 建築協定을 締結하는 경우에서의 斡旋
11. 前各號의 事業에 附帶하는 事業

②商店街振興組合은 前項 第4號의 規定에 따라 締結하는 共濟契約으로서 火災에 의하거나 또는 火災 및 破裂, 爆發, 落雷 기타 通商産業令이 정하는 우연한 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共濟事故로 하고 이들 가운데 어떠한 것에 의하여 財産에 발생한 損害를 填補하기 위한 契約에서는, 共濟契約者 1인에 관하여 共濟契約에 관계되는 共濟金額 總額을 通商産業 省令이 정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것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商店街振興組合은 組合員の 利用에 支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組合員 이외의 者에게 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이들 事業에 附帶하는 同項 第11號의 事業을 포함한다)을 이용케 할 수 있다. 단, 당해 事業年度의 組合員 이외의 者의 이들 事業의 利用分量總額은 당해 事業年度의 組合員의 이들 事業의 利用分量總額의 100분의 20을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同前) ①保管事業을 행하는 商店街振興組合은 運輸大臣의 許可를 받아 組合員の 寄託物에 대하여 倉庫證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前項의 許可를 받은 商店街振興組合은 組合員인 寄託者의 請求에 따라 寄託物의 倉庫證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倉庫證券에 관하여는 商法 第627條 第2項(預證券의 規定 準用) 및 第628條(倉庫證券에 의한 質權設定)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관하여는 倉庫業法(1956年 法律 121號) 第6條 第2項, 第8條 第2項, 第12條, 第22條 및 第27條(監督)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同法 第12條中 “第5條 第4號의 基準”은 “運輸省令에서 정하는 基準”으로 본다.

第15條 (同前) 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商店街振興組合이 작성하는 倉庫證券에는 그 商店街振興組合의 名稱을 붙인 倉庫證券이라는 文字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16條 (同前) ①商店街振興組合이 倉庫證券을 발행한 寄託物의 保管期間은 寄託한 날로부터 6月 이내로 한다.

②前項의 寄託物 保管期間은 6月을 限度로 하여 更新할 수 있다. 단 更新 당시 所持人이 組合員이 아닌 때는 組合員の 利用에 支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第17條 (同前) 商店街振興組合이 倉庫證券을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商法 第616條

내지 第619條 및 第624條 내지 第626條(寄託者 또는 證券所持人の 權利 및 倉庫營業者の 責任)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8條 (同前) ①商店街振興組合이 商品券을 발행한 때는 組合員은 이에 대하여 그 取扱商品에 대하여 相換義務를 부담한다.

②商店街振興組合이 商品券을 발행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商品券을 相換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相換을 정지한 때는 그 商店街振興組合이 商品券의 所有者에 대하여 券面に 표시한 金額을 限度로 하여 辨濟의 責任을 부담 한다.

第19條 (聯合會의 事業) ①聯合會는 다음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會員인 組合의 組織 및 事業의 指導 및 連絡
2. 販賣, 購買, 保管, 運送, 檢査 기타 聯合會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성하는 者(이하 “所屬員”이라 한다)의 事業에 관한 共同施設
3. 所屬員을 위한 商品券의 발행, 割賦購入斡旋 기타 販賣方法에 관한 共同事業
4. 會員에 대한 資金의 貸付(어음割引을 포함한다) 및 會員을 위한 그 借入
5. 會員인 商店街振興組合 組合員의 事業에 관한 企業診斷
6. 所屬員 및 그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施設
7. 第1號의 事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所屬員의 事業에 관한 經營 및 技術의 改善向上 또는 組合事業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教育 및 情報의 제공에 관한 施設
8. 會員이 행하는 第13條 第1項 第6號의 事業指導
9. 會員인 商店街振興組合 組合員의 從業員의 集團的 雇傭 및 그 從業員에 관계되는 賃金, 勤勞時間, 寄宿舍 등 勤勞條件의 改善에 관한 事業
10. 會員의 意見을 總合하여 이를 公表하거나 또는 國會, 行政廳 등에 알리거나 建議하는 것
11. 前各號에 附帶하는 事業

②聯合會의 事業에 관하여는 第13條 第2項 및 第3項 그리고 第14條 내지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節 組合員 및 會員

第20條 (出資) ① 組合員 또는 會員(이하 “組合員”이라 總稱한다)은 出資 1座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出資1座의 金額은 均等하여야 한다.

③1組合員(組合員 1人)의 出資座數는 出資總座數의 100분의 25를 超過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⑤組合員은 出資의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할 수 없다.

第21條 (議決權 및 選舉權) ① 組合員은 各 1個의 議決權 및 任員의 選舉權을 갖는다.

② 組合員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前에 通知가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書面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議決權 또는 選舉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員의 親族이나 使用人 또는 다른 組合員이 아니면 代理人이 될 수 없다.

③ 前項의 規定에 따라 議決權 또는 選舉權을 행사하는 者는 出席者로 본다.

④ 代理人은 5人 이상의 組合員을 代理할 수 없다.

⑤ 代理人은 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을 組合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2條 (經費의 賦課) ① 組合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經費를 賦課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前項의 經費支給에 관하여는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할 수 없다.

第23條 (使用料 및 手數料) 組合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및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24條 (加入의 自由) 組合員資格을 갖는 者가 組合에 加入하고자 하는 때는 組合은 正當한 理由가 없음에도 그 加入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加入에 관하여 現在의 組合員이 加入 당시 받았던 것보다 곤란한 條件을 附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 (加入) 組合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加入에 관하여 組合의 承諾을 얻고 引受出資座數에 따른 金額의 納入 및 組合이 加入金を 徵收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支給을 완료한 때 또는 組合員의 持分 전부 또는 일부를 承継한 때에 組合員이 된다.

第26條 (同前) ①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으로 組合員資格을 갖는 者가 組合에 대하여 定款에서 정하는 期間內에 加入申請을 한 때는 前條의 規定에 관계없이 相續開始時에 組合員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相續人인 組合員은 被相續人의 持分에 관하여 死亡한 組合員의 權利義務를 承継한다.

②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는 相續人의 同意로써 選定된 1人의 相續人에 한하여 前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27條 (持分の 讓渡) ① 組合員은 組合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고자 하는 때는 加入의 例에 따라 행한다.

③ 持分の 讓受人은 그 持分에 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継한다.

④ 組合員은 持分을 共有할 수 없다.

第28條 (自由脫退) ① 組合員은 3月前까지 豫告하고 事業年度末에 脫退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豫告期間은 定款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期間은 1年을 超過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9條 (法定脫退) ① 組合員은 다음의 事由에 따라서 脫退한다.

1. 組合員資格의 喪失

2. 死亡 또는 解散

3. 除 名

②除名은 다음에 揭記하는 組合員에 대하여 總會의 議決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은 總會會日 10日前까지 그 組合員에 대하여 그 취지를 通知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出資의 納入, 經費의 支給 기타 組合에 대한 義務를 해대한 組合員

2. 기타 定款에서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는 組合員

②除名은 除名한 組合員에게 그 뜻을 通知하지 않으면 이로써 그 組合員에 對抗할 수 없다.

第30條 (脫退者持分の 還給) ①組合員은 脫退한 때에는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の 全部 또는 一部の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持分은 脫退한 事業年度末의 組合財産에 따라 정한다.

③前項의 持分을 計算함에 있어서, 組合의 財産으로써 그 債務를 完濟함에 부족한 때는 組合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脫退한 組合員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第31條 (時效) 前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脫退한 때로부터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32條 (還給의 停止) 脫退한 組合員이 組合에 대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 組合은 持分の 還給을 停止할 수 있다.

第33條 (出資座數의 減少) ①組合員은 事業을 休止한 때, 事業의 일부를 廢止한 때 기타 불가피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末에 그 出資座數를 減少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30條 및 第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節 設 立

第34條 (發起人) 商店街振興組合을 設立함에 있어서는 그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7人 이상의 者가, 聯合會를 設立함에 있어서는 會員이 되고자 하는 2個 이상의 組合이 發起人이 될 것을 要한다.

第35條 (創立總會) ① 發起人은 定款을 작성하고 이를 會議의 日時 및 場所와 함께 公告하여 創立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公告는 적어도 會議開催日 2週前까지 하여야 한다.

③發起人이 작성한 定款의 承認, 事業計劃의 設定 기타 設立에 필요한 事項의 決定은 創立總會의 議決에 따라야 한다.

④創立總會에서는 前項의 定款을 修正할 수 있다. 단, 地區 및 組合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創立總會의 議事는 組合員의 資格을 갖는 者로서 그 會日까지 發起人에 대하여 設立의 同意를 表示한 者의 半數 이상이 出席하여 그 議決權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⑥創立總會에 관하여는 第21條 및 商法 第243條(總會의 延期 또는 續行의 決議), 第244條 第1項 및 第2項(株主總會의 議事錄) 및 第247條 내지 第252條(株主總會決議의 取消 또는 不存在나 無效確認의 訴)의 規定(이들 規定中 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 第243條中 “第23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商店街振興組合法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로, 同法 第244條 第2項中 “理事”는 “發起人”으로 본다.

第36條 (設立의 認可) ①發起人은 創立總會終了後 지체없이 定款 및 事業計劃, 任員의 姓名 및 住所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行政廳에 提出하여 組合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行政廳은 前項의 組合設立認可의 申請이 第6條 및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要件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要件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行政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申請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認可 또는 不認可의 처분을 하고 當該 發起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行政廳은 不認可 通知를 하는 때 그 理由를 함께 通知하여야 한다.

第37條 (理事에 대한 事務引繼) 發起人은 前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事務를 理事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38條 (出資의 第1回 納入) ①理事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引繼를 받은 때 지체없이 出資의 第1回 納入을 시켜야 한다.

②前項의 第1回 納入金額은 出資1座에 대하여 그 金額의 4분의 1에 未達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現物出資者는 第1回 納入期日에 出資의 目的인 財産의 전부를 給付하여야 한다. 단, 登記, 登錄 기타 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으로써 第3者에게 對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爲는 組合의 成立後에 하여도 무방하다.

第39條 (成立時期) 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40條 (成立申告) 組合은 成立한 날로부터 2週 이내에 行政廳에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41條 (商法の 準用) 組合의 設立에 관하여는 商法 第428條(株式會社設立의 無效) (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節 管理

第42條 (定款) ①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事 業
2. 名 稱
3. 地 區
4.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
6. 組合員의 加入 및 脫退에 관한 規定
7. 出資1座의 金額 및 그 納入方法
8. 經費의 分擔에 관한 規定
9. 剩餘金의 處分 및 損失의 處理에 관한 規定
10. 準備金의 額數 및 그 積立方法
11. 任員의 定數 및 그 選舉 또는 選任에 관한 規定
12. 事業年度
13. 公告의 方法

②組合의 定款에는 前項의 事項 이외에 組合의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는 그 時期 또는 그 事由를, 現物出資를 하는 者를 정한 때는 그 者의 姓名, 出資의 目的인 財産 및 그 價格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出資座數, 組合의 成立後에 讓受할 것을 약정한 財産이 있는 때는 그 財産, 그 價格 및 讓渡人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43條 (規約) 다음 事項은 定款에서 정하여야 할 事項을 제외하고는 規約에서 정할 수 있다.

1. 總會에 관한 規定
2. 業務執行 및 會計에 관한 規定
3. 任員에 관한 規定
4. 組合員에 관한 規定
5. 기타 필요한 事項

第44條 (任員) ① 組合에 任員으로서 理事 및 監事를 둔다.

②理事의 定數는 3人 이상으로 하고 監事의 定數는 1人 이상으로 한다.

③任員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서 選任한다. 단, 設立 當時의 任員은 創立總會에서 選任한다.

④理事定數의 적어도 3분의 2는 組合員 또는 組合員인 法人의 任員이어야 한다. 또 設立 當時 理事 定數의 적어도 3분의 2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 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法人의 任員이어야 한다.

⑤理事 또는 監事中 그 定數의 3분의 1을 넘는 數가 缺員인 때는 3日 이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⑥任員의 選任은 無記名投票로 한다.

⑦投票는 1人當 1票로 한다.

⑧任員の選任은 出席者 가운데 異議가 없는 때 第6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指名推薦의 方法에 따라 行할 수 있다.

⑨指名推薦의 方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被指名人을 當選人으로 定할 것인지의 與否를 總會(設立當時의 任員은 創立總會)에 상정하여 出席者 全원의 同意가 있는 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⑩하나의 選舉로써 2人 이상의 理事 또는 監事를 選任하는 경우에는 被指名人을 구분하여 前項의 規定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⑪第3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任員은 定款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會(設立 當時의 任員은 創立總會)에서 選任할 수 있다.

第45條 (任員變更의 申告) 組合은 任員의 姓名 또는 住所에 變更이 있는 때는 그 變更의 날로부터 2週 이내에 行政廳에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46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 이내에서 定款에서 定하는 期間으로 한다.

②設立 當時 任員의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創立總會에서 定하는 期間으로 한다. 단, 그 期間은 1年을 초과할 수 없다.

第47條 (理事會) 組合의 業務執行은 理事會가 결정한다.

第48條 (同前) ①理事會의 議事는 理事 過半數가 出席하여 出席過半數로 결정한다.

②組合은 定款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가 書面으로 理事會의 議決에 參加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第49條 (監事의 兼職禁止) 監事는 理事 또는 組合의 使用人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0條 (理事의 自己契約)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組合과 契約할 수 있다. 이 경우 民法(1896年 法律 第89號) 第108條 (自己契約)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1條 (理事의 責任) ①理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다.

②理事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는 그 理事는 第3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다. 重要한 事項에 관하여 第53條 第1項에 揭記하는 書類에 虛偽記載를 하거나 또는 虛偽의 登記 또는 公告를 한 때에도 같다.

③第1項의 理事의 責任에 관하여는 商法 第266條 第2項, 第3項 및 第5項(理事의 責任)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2條 (定款 기타 書類의 備置 또는 閱覽 등) ①理事는 定款 및 規約을 各 事務所에, 組合員名簿를 주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을 10年間 주된 事務所에, 그 謄本을 5年間 중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組合員名簿에는 各組合員에 관하여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2. 加入年月日
3. 出資座數, 納入金額 및 그 納入年月日

④組合員 및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理事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3條 (決算關係書類의 提出, 備置 및 閱覽 등) ①理事는 定期總會日 1週前까지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處理案을 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理事는 監事の 意見書를 첨부하여 前項의 書類를 定期總會에 제출하고 그 承認을 구하여야 한다.

③組合員 및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에 대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理事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 (會計帳簿 등의 閱覽 등) 組合員은 總組合員 10분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언제든지 理事에 대하여 會計帳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理事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5條 (任員의 改選) ①組合員은 總組合員의 5분의 1 이상의 連署로써 任員의 改選을 請求할 수 있으며. 그 請求에 관하여 總會에서 出席者 過半數의 同意가 있을 때는 그 請求에 관계되는 任員은 그 職을 喪失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改選의 請求는 理事 全員 또는 監事 全員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法令 또는 定款이나 規約의 違反을 理由로 改選을 請求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選의 請求는 改選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에게 提出하여 請求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選의 請求가 있을 때는 理事는 그 請求를 總會議事に 上정하고, 總會의 會日로부터 7日前까지 그 請求에 관계되는 任員에게 前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을 送付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前項의 경우에 관하여는 第58條 第2項 및 第5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6條 (商法등의 準用) 理事 및 監事に 대하여는 商法 第254條 第3項(理事와 會社의 關係), 第258條 第1項(缺員인 경우의 措置) 및 第267條 내지 第268條의 3(理事에 대한 訴)의 規定을, 理事에 대하여는 民法 第55條(代表權의 委任), 商法 第254條의 3(理事의 義務), 第261條, 第262條(會社代表) 및 第272條(株主의 留止請求權) 및 株式會社의 監査등에 관한 商法의 特例에 관한 法律(1974年 法律 第22號) 第24條 第1項 및 第2項(會社와 理事間의 訴에 관한 會社代表)의 規定을, 監事に 대하여는 第51條, 商法 第278條 (理事와 監事の 連帶責任) 및 株式會社의 監査등에 관한 商法의 特

예에 관한法律 第22條 第2項 및 第3項(報告請求·調査權限)의 規定을, 理事會에 대하여는 商法 第259條 내지 第259條의 3(第259條의 2 및 第259條의 3 가운데 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理事會의 召集), 第260條의 2 第2項 및 第3項(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 및 第260條의 4 第1項 및 第2項(監事に 관계되는 부분은 제외한다)(理事會의 議事錄)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商法 第260條의 2 第2項중 “前項”은 “理事會”로, 同條 第3項중 “第1項”은 “商店街振興組合法 第48條 第1項”으로, 同法 第261條 第3項중 “第258條”는 “第258條 第1項”으로 본다.

第57條 (總會의 召集) 定期總會는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每事業年度에 1回 召集하여야 한다.

第58條 (同前) ①臨時總會는 필요한 때는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召集할 수 있다.

②組合員이 總組合員 5분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事項 및 召集理由를 記載한 書面을 理事會에 提出하여 總會召集을 請求한 때는 理事會는 그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臨時總會를 召集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59條 (同前) 前條 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組合員은 同項의 請求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理事가 總會召集節次를 행하지 않는 때는 行政廳의 承認을 얻어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理事의 職務를 행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 組合員이 總組合員 5분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은 때에도 같다.

第60條 (總會召集節次) 總會의 召集은 會日의 10日前까지 會議의 目的事項을 표시하고 定款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第61條 (通知 또는 催告) ①組合의 組合員에 대한 通知 또는 催告는 組合員名簿에 記載된 그 者의 住所(그 者가 따로 通知 또는 催告를 받는 場所를 組合에 通知한 때는 그 場所)로 하면 된다.

②前項의 通知 또는 催告는 通常 도달할 時期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62條 (總會의 議決事項) ①다음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規約의 設定, 變更 또는 廢止
3. 每事業年度의 收支豫算 및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4. 經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
5. 기타 定款에서 정하는 事項

②定款의 變更는 行政廳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그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前項의 認可에 관하여는 第36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3條 (總會의 議事) ①總會의 議事는 이 法律 또는 定款이나 規約에 特別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出席者의 議決權 過半數로 결정하며, 可否同數인 때는 議長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議長은 總會에서 選任한다.

③議長은 組合員으로서 總會의 議決에 參加할 權利를 갖지 않는다.

④總會에서는 第60條의 規定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事項에 관하여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단, 定款에서 別個의 정함을 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4條 (特別議決) 다음 事項은 總組合員 半數 이상이 出席하고 그 議決權의 3분의 2 이상의 多數에 의한 議決을 필요로 한다.

1. 定款의 變更
2. 組合의 解散 또는 合併
3. 組合員의 除名

第65條 (商法の 準用) 總會에 관하여는 商法 第231條(總會召集의 決定), 第243條(總會의 延期 또는 續行의 決議), 第244條 第1項 및 第2項(株主總會의 議事錄), 그리고 第247條 내지 第252條(株主總會決議의 取消 또는 不存在나 無效確認의 訴)의 規定(이들 規定 중 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商法 第243條 중 “第232條”는 “商店街振興組合法 第60條”로 본다.

第66條 (出資1座金額의 減少) ①組合은 出資1座金額의 減少를 議決한 때는 그 議決의 날로부터 2週 이내에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組合은 前項의 期間內에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期間內에 이를 陳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公告하고,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各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一定期間은 1월에 未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7條 (同前) ①債權者가 前條 第2項의 一定期間內에 異議를 陳述하지 않은 때는 出資1座金額의 減少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債權者가 異議를 陳述한 때는 組合은 辨濟하거나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거나 또는 債權者에게 辨濟를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信託會社나 信託業務를 經營하는 銀行에 相當한 財産을 信託하여야 한다.

③組合의 出資1座金額의 減少에 관하여는 商法 第380條(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株式會社의 資本減少)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8條 (準備金 및 移越金) ①組合은 定款에서 정하는 額에 達할 때까지는 每事業年度의 剩餘金의 10분의 1 이상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定款에서 정하는 準備金의 額은 出資總額의 2분의 1에 未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의 準備金은 損失을 充當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3條 第1項 第5號 또는 第19條 第1項 第7號의 事業을 행하는 組合은 그 事業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每事業年度의 剩餘金의 20분의 1 이상을 次期事業年度로 移越하여야 한다.

第69條 (剩餘金의 配當) ①組合은 損失을 充當하고 前條 第1項의 準備金 및 同條 第4項의 移越金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剩餘金을 配當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剩餘金の配當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組合의 事業을 이용한 分量에 따라서 또는 年 1割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納入出資額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第70條 (同前) 組合은 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出資의 納入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組合員에게 配當할 剩餘金을 그 納入에 充當할 수 있다.

第71條 (組合員의 持分取得 등의 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또는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受領할 수 없다.

第6節 解散 및 清算

第72條 (解散理由) ①組合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解散한다.

1. 總會의 決議
2. 組合의 合併
3. 組合의 破産
4. 定款에서 정하는 存立時期의 滿了 또는 解散事由의 發生
5. 第86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

②組合은 前項 第1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따라 解散한 때에는 解散한 날로부터 2週 이내에 그 취지를 行政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73條 (合併節次) ①組合이 合併하려면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組合의 合併에 관하여는 第66條 및 第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合併은 行政廳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前項의 認可에 관하여는 第36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4條 (同前) ①合併에 의하여 組合을 設立하려면 各組合이 각각 總會에서 組合員中에서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작성하고 기타 設立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任期는 最初의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의 選任에 관하여는 第6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選任에 관하여는 第44條 第4項 本文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5條 (合併의 時期 및 效果) ①組合의 合併은 合併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併에 의하여 成立하는 組合이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을 발생한다.

②合併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併에 의하여 成立한 組合은 合併에 의하여 消滅한 組合의 權利義務(그 組合이 그 행하는 事業에 관하여 行政廳의 許可, 認可 기타 處分に 의거하여 갖는 權利義務를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第76條 (商法 등의 準用) 組合의 合併에 관하여는 商法 第104條 내지 106條, 第108

條 내지 第111條(合名會社の 合併無效) 및 非訟事件節次法(1898년 法律 第14號) 第135條의 8(債務負擔部分의 決定)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7條 (清算人)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合併 및 破産으로 인한 解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理事가 그 清算人이 된다. 단, 總會에서 他人을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8條 (商法 등의 準用) 組合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하여는 商法 第116條, 第124條, 第125條, 第129條 第2項 및 第3項, 第131條, 第417條 第2項, 第418條, 第419條, 第421條 내지 第424條, 第426條 및 第427條(合名會社 및 株式會社의 清算) 및 非訟事件節次法 第36條, 第37條의 2, 第135條의 25 第2項 및 第3項, 第136條, 第137條, 第138條 및 第138條의 3(法人清算의 監督)의 規定을, 組合의 清算人에 관하여는 第47條 내지 第54條, 第58條 第2項 및 第59條, 商法 第254條 第3項(理事와 會社의 關係), 第254條의 3(理事의 義務), 第258條 第1項(缺員인 경우의 措置), 第259條 내지 第259條의 3(第259條의 2 및 第259條의 3 가운데 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외한다)(理事會의 召集), 第260條의 2 第2項 및 第3項(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 第260條의 4 第1項 및 第2項(監事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理事會의 議事錄), 第261條(代表理事), 第267條 내지 第268條의 3(理事에 대한 訴) 및 第272條(株式의 留止請求權) 및 株式會社의 監査 등에 관한 商法의 特例에 관한 法律 第24條 第1項 및 第2項(會社와 理事間의 訴에 관한 會社代表)의 規定을 준용한다. 이 경우 第53條 第1項중 “事業 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處理案”은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로, 商法 第260條의 2 第2項 중 “前項”은 “清算人會”로, 同條 第3項중 “第1項”은 “商店街振興組合法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48條 第1項”으로, 同法 第261條 第3項중 “第258條”는 “第258條 第1項”으로, 同法 第417條 第2項중 “前項”은 “商店街振興組合法 第77條”로, 同法 第426條 第2項중 “6월전부터 계속하여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지는 株主”는 “總組員 5분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은 組員”으로 본다.

第 3 章 助成措置

第79條 (補助金의 交付) 政府는 組合事業의 維持發展을 도모하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第 4 章 雜 則

第80條 (私的獨占禁止 및 公正去來確護에 관한 法律의 適用 除外) 私的獨占禁止 및 公正去

來確保에 관한法律(1947년 法律 第54號)의 規定은 組合이 第13條 第1項 또는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不公正한 去來方法을 사용하는 때 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함으로써 不當하게 對價를 引上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1條 (檢査의 請求) ①組合員은 總數의 10분의 1 이상의 同意를 얻어 그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또는 定款이나 規約에 違反할 嫌疑가 있음을 이유로 行政廳에 그 檢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行政廳이 그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을 檢査하여야 한다.

第82條 (決算關係書類의 提出) 組合은 每事業年度 定期總會의 終了日로부터 2週 이내에 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및 剩餘金處分 또는 損失處理의 方法을 記載한 書面을 行政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83條 (報告의 要求) 行政廳은 每年 1회를 한도로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限度內에서 組合으로부터 그 組合員, 任員, 使用人, 事業分量 기타 組合의 일반적 상황에 관한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第84條 (檢査 등) 行政廳은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할 혐의가 있거나 또는 組合의 運營이 현저히 不當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組合으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報告를 要求하거나 또는 그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第85條 (行政廳의 命令) 行政廳은 前條의 規定에 따라 報告를 要求하거나 또는 第81條 第2項 또는 前條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한 경우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 또는 定款이나 規約에 違反하거나 또는 組合의 運營이 현저히 不當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組合에 대하여 期間을 정하고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86條 (組合에 대한 解散命令) ①行政廳은 組合이 第36條 第2項에 規定하는 設立要件을 缺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組合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②行政廳은 組合이 前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또는 組合이 正當한 이유 없이 그 成立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事業을 開始하지 않거나 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事業을 停止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組合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第87條 (辯明機會의 供與) 行政廳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組合에 대하여 事前에 命令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通知하고 辯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그 組合의 代表權을 가지는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所在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7條의 2(解散命令通知의 特例) ①行政廳은 組合의 代表權을 가지는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所在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第86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의 通知에 대신하여 그 要旨를 官報에 掲載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當該 命令은 官報에 掲載한 날로부터 20일을 經過한 날에 그 효력

을 발생한다.

第88條 (所管行政廳) 이 法律中 “行政廳”은 第19條 第1項 第10號 및 第75條 第2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商店街振興組合에 관하여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로 한다.
2. 聯合會에 관하여는 그 地區가 都道府縣의 區域을 넘지 않는 경우에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都道府縣知事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通商産業大臣으로 한다.

第89條 (實施規定) 이 法律에 規定하는 것 외에 이 法律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省令으로 정한다.

第5章 罰 則

第90條 (罰則) 組合의 任員이 어떠한 名義로써 행하는지에 관계없이 組合의 事業範圍外에서 貸付를 하거나 어음을 割引하거나 또는 投機去來를 위하여 組合財産을 處分한 때에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圓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또는 이를 併科한다. 단, 刑法(1907년 法律 第45號)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同法에 의한다.

第91條 (同前) ①第14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倉庫業法 第27條 第2項 또는 이法律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하거나, 또는 第14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倉庫業法 第27條 第1項 또는 이 法律 第81條 第2項 또는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자는 3천만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組合의 代表者 또는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組合의 業務에 관하여 前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외에 그 組合에 대하여 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92條 (同前) 組合이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組合의 理事는 2만圓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93條 (同前) 다음의 경우 組合의 發起人, 任員 또는 清算人은 1천만圓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이 法律의 規定에 의거하여 組合이 행할 수 있는 事業 이외의 事業을 행할 때
2.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한 政令에서 정하는 登記를 懈怠하거나 또는 부실한 登記를 한 때
3. 第13條 第3項(第19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4. 第24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5. 第29條 第2項 또는 第55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35條 第6項 또는 第65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44條 第1項 또는 第2項, 第56條 또는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1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議事錄 또는 財

- 産目錄 또는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이들 書類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않거나 또는 不실한 記載를 한 때
7. 第40條, 第45條 또는 第72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8. 第44條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9. 第49條(第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10. 第52條 또는 第53條(이들 規定을 第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를 備置하지 않거나, 그 書類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않거나, 不實한 記載를 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그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拒否한 때
 11. 第54條(第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56條에서 準用하는 株式會社의 監査등에 관한 商法의 特例에 관한 法律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正當한 理由없이 帳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拒否한 때
 12. 第56條에서 準用하는 株式會社의 監査등에 관한 商法의 特例에 관한 法律 第22條 第3項 또는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방해한 때
 13.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14. 第66條 第2項(第73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21條 第1項에 規定하는 公告를 懈怠하거나 또는 不正한 公告를 한 때
 15. 第66條 또는 第67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出資 1座의 金額을 減少하거나 또는 第73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66條 또는 第67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組合의 合併을 한 때
 16. 第68條 또는 第69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17. 第7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또는 質權의 目的으로서 이를 받은 때
 18.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13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組合의 財産을 分配한 때
 19.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21條 第1項의 期間을 不當하게 정한 때
 20. 第78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21. 第8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虛僞의 書類를 제출한 때
 22.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報告를 한 때
- 第94條 (同前) 不正競争의 目的으로 登記된 組合의 名稱과 同一 또는 類似한 名稱을 사용한 者는 1만圓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5條 第3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도 같다.

附 則
(省 略)

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중 競爭政策關聯部分

流通

I. 基本認識

日本政府는 日本의 流通의 效率化 提高, 市場參入 確保, 物理的 基盤整備 등을 추진 하여 國民消費生活의 充實을 도모한다는 基本認識下에 諸般施策을 추진한다.

II. 對應策

3. 規制緩和

1) 大店法(省略)

2) 景品 및 廣告規制

公正競爭規約을 포함한 景品表示法의 景品規制는 市場에서의 公正한 競爭의 確保와 消費者利益의 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同制度는 外國事業者를 포함한 新規參入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아니며,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러한 參入을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同制度를 運營하여 왔고 금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景品에 관계된 現行의 모든 公正競爭規約에 대하여는 外國事業者를 포함한 新規參入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檢討가 行하여지고 있으며, 外國貿易과 投資에 관한 規約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完化조치를 完료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 일환으로서 초콜렛업계의 景品에 관한 公正規約에 대하여 金년 7월에 第2次 規制緩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金년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8개 規約의 規制內容을 緩和하도록 하며, 이 중 新聞業의 쿠폰附 廣告는 金년 여름을 목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檢討時에는 外國事業者의 意見을 聽取하는 한편, 公正去來協議會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逸脫한 行爲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3) 酒類販賣 등에 관한 規制(省略)

4. 商慣行의 改善

1) 6월 21일 學者 및 實務者로 구성된 “流通·去來慣行 및 競爭政策에 관한 檢討委

* 이 報告書는 1990年 6月 28日 日本政府가 公표한 것이다.

員會”의 提言을 淸취하였다. 提言內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公正去來委員會는 消費財의 流通分野에 있어서 제조업자등의 流通業者에 대한 마케팅정책 및 流通業者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마케팅정책에 관하여 대상이 되는 事業者의 행위에 대한 競爭政策上의 長·短點을 충분히 분석 한 후 獨占禁止法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 A. 去來處事業者의 사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개선하고 事業者의 활발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할 것
- B. 특히 事業者間의 價格競爭을 촉진할 것
- C. 新規로 參入하는 内外國의 事業者가 자유로운 參入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市場의 開放性을 提高할 것

-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야 할 行爲類型 등으로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再販賣價格의 拘束
- B. 再販賣價格을 拘束하는 製造業者의 希望小賣價格, 希望都賣價格
- C. 불공정한 去來方法이 되는 非價格制限行爲(競爭品·輸入品の 取扱制限, 販賣地域의 制限, 去來處의 制限, 販賣方法의 制限), 流通業者의 經營에 대한 關與, 리베이트의 供與, 返品, 派遣店員, 大規模小賣業者의 購入體系의 시스템化, 強制販賣, 協贊金의 負擔要請

D. 一定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私의 獨占 또는 不當한 去來制限이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去來方法이 되는 競爭事業者나 去來處事業者의 공동보이코트

E. 母子會社間의 去來에 관한 不公正한 去來方法의 적용

(2) 輸入總代理店은 輸入品の 參入手段으로서 重要性을 갖지만 國內流通에 대하여 競爭制限의 機能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規制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現行 認定基準을 검토하고 製造業者의 輸入, 國內에서의 高價格販賣, 並行輸入의 不當阻害行爲의 문제점에 관하여 사고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外國事業者나 輸入總代理店이 競爭制限의 行爲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獨占禁止法을 엄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개개의 事業者 특히 大企業은 法務部門을 충실히 하고 獨占禁止法 違反行爲를 예방하기 위하여 遵守規則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提言에 입각하여 流通去來에 있어서의 公正한 競爭이 저해되지 않도록 獨占禁止法의 運用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1990년도 말까지 作成·公表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事前에 國內외의 關係機關 등이 가이드라인의 完成前에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原案을 開示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獨占禁止法의 運用을 엄정하게 수행한다.

또한 獨占禁止法違反行爲에 관계되는 情報收集活動을 강화함과 동시에 違反行爲를 積極的으로 排除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體制를 강화 확충하였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성실한 정비·충실에 노력한다.

排他的 去來慣行

I. 基本認識

公正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유지·촉진하는 것은 消費者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外國企業을 포함하여 新規參入의 機會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극히 중요한 政策課題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政府는 이를 위한 諸般施策을 추진하고 있다.

II. 對應策

1. 獨占禁止法 및 그 運用의 強化

日本政府 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및 그 運用의 강화와 관련하여 本件 最終報告에 規定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적당한 立法措置를 포함한 아래의 措置를 취한다.

1) 公式決定의 적극적인 活用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體制를 확충·강화하고 違反行爲에 대한 證據收集能力을 향상 시킴으로써 法的 措置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違反行爲를 배제한다. 또한 특히 價格카르텔, 供給量制限카르텔, 市場分割協定, 入札談合, 그룹보이코트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違反行爲가 인정되면 法的 措置를 취한다. 또한 금년 6월 8일 外國事業者의 獨占禁止法 등에 관한 相談, 苦情 및 獨占禁止法違反事案에 관한 申告를 용이하게 하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이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토록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外國事業者의 相談, 苦情窓口를 設置하고 專任擔當官(外國事業者相談苦情處理擔當官)을 두었다.

2) 透明性 向上的 確保

行政의 透明性을 확보하고 抑止效果를 가일층 향상시키며, 동일한 違反行爲의 事前防止를 위하여 勸告나 課徵金納付命令 등의 法的 措置를 취하는 경우 違反한 者의 姓名, 名稱, 違反形態 및 違反에 관계된 狀況을 포함한 그 措置內容을 公表함과 동시에 警告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公表한다.

3) 豫算의 擴充

금년 6월 公正去來委員會 審議部門의 대폭적인 增員 및 機構의 擴充이 이루어졌다.

- (1) 25名, 20% 増員(129명→154명)
- (2) 違反探知機能增強을 위하여 1개 組織 増設(1개 組織→2개 組織)
- (3) 違反審査機能增強을 위하여 2개 組織 増設(6개 組織→8개 組織)
- (4) 地方事務所의 審査機能增強을 위하여 大阪地方事務所에 1개 組織 増設(1개 組織→2개 組織)

금후 계속하여 그 정비·충실에 노력한다.

4) 課徵金

違反行爲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카르텔에 관계되는 課徵金이 獨占禁止法 違反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도록 그 引上에 관한 獨占禁止法 改正法案을 次期 定期國會에 提出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課徵金引上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內閣官房長官 주재로 學者 기타 專門家으로 구성된 懇談會를 개최한다. 또한 그룹보이코트에 대하여는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카르텔로서 規制하고, 對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課徵金의 부과 대상으로 한다.

5) 刑事罰의 活用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에 대하여 刑事處罰을 요구하는 告發을 행함으로써 금후에는 刑事罰의 活用을 도모한다.

이에 관계기관인 法務省, 檢察當局 및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事件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연락·협조關係를 정비하기로 하였는 바, 그 구체적 措置로서 금년 4월 法務省과 公正去來委員會 간에 告發에 관한 節次 등을 검토하기 위한 連絡協議會를 설치하고 연내에 結論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후 告發에 관하여 檢察當局과 公正去來委員會 간에 개개 事件의 구체적 문제점 등에 관한 意見 情報를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금후

- 1) 일정한 去來分野에서의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價格카르텔, 供給量制限카르텔, 市場分割協定, 入札談合, 共同보이코트 기타 違反行爲로서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고 고려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事案
- 2) 違反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事業者·業界, 排除措置에 따르지 않는 事業者 등에 관계되는 違反行爲 중 公正去來委員會가 행하는 行政處分으로는 獨占禁止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고려되는 事案

에 관하여 刑事處罰을 요구하는 告發을 적극적으로 행할 방침이며, 이 방침을 금년 6월 20일에 公表한 바 있다.

다른 한편 法務大臣은 금년 6월 20일에 개최된 檢察長官會同에서 檢察長官에 대하여 搜查 등의 과정에서 獨占禁止法 違反事犯의 告發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는 방침을 하달하였으며, 이 訓示는 公表되었다.

6) 損害賠償制度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의 被害者가 損害賠償請求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現行 獨占禁止法 第25條의 활용방법에 관한 公正去來委員會에 설치된 研究會가 금년 6월 25일 檢討結課를 公表한 바 있다. 現行 損害賠償制度가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즉시 研究會의 提言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

- (1) 獨占禁止法 違反行爲로 인한 損害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填補함으로써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의 抑止를 도모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2) 公正去來委員會는 原告(被害者)의 違反事實 및 損害에 관한 立證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강구한다.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審決書에서 違反事實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記述한다.
 - ② 第84條에 의거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意見에는 違反行爲와 損害의 關聯性 내지 因果關係, 損害額 및 그 算定方法에 관한 判斷方法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記述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그 根據가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法院의 요청에 따라 違反行爲의 存在 또는 損害의 額이나 因果關係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原告(被害者)는 당해 資料가 法院에 제출된 경우 民事訴訟節次에 따라 閱覽이 인정된다.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審決이 결정된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관계된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가운데 당해 違反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의 違反行爲 또는 損害의 額이나 因果關係의 立證에 관련된 자료의 原本 또는 寫本을 保持한다.
- (3)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訴訟制度에 관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을 행한다.
- (4)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團體가 獨占禁止法에 違反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損害賠償請求訴訟의 효과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上記(2)에 揭記한 것과 동일한 措置를 포함한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 또한 法務省 및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訴訟에 관한 提訴費用問題에 대하여는 改善의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

7) 談合에 대한 效果的 抑止

- (1) 日本政府는 금후 政府出資의 研究用役事業에 관하여 담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점에 관하여 發注機關은 談合事案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談合行爲의 抑止에 效果的인 行政上 措置(指命停止를 포함한다)를 당해 談合에 참여한 사실이 발각된 企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發注機關은 금후 談合行爲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談合行爲에 관한 關聯情報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공한다.
- (2) 公正去來委員會는 모든 產業에서의 談合에 대하여 獨占禁止法을 엄정하게 적용한

다.

- (3) 指命停止에 관한 中央公共工事契約制度運用連絡協議會의 모델을 改正하고, 獨占禁止法 違反事案 등에 대하여 指命停止期間의 延長 및 對象地域의 확대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指命停止期間의 下限이 종래 기준의 2배가 되었고 또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었다.
- (4) 中央省廳, 公團 등에 있어서는 위의 모델의 改正을 받아들여 금년 6월 이후 指命停止措置要領을 개정하고 있다. 法務省은 刑法의 罰金刑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談合罪의 罰金刑에 관하여도 그 上限을 引上하는 方向에서 검토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이와 같은 취지의 法改正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政府慣行

- 1) (省略)
- 2) 行政指導

日本政府는 行政指導에 대한 政府 전체의 포괄적인 원칙으로서, 透明性 및 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指導의 내용이 市場閉鎖的이지 않고 또 공정한 경쟁을 阻害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政府의 의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증한다. 또한 行政指導는 가능한 한 文書로 행하도록 하고, 그것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예컨대 安全保障에 관계된 경우와 같이 이를 公表하면 營業秘密의 漏洩 등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등 公表하지 않는 유력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知得할 수 있도록 한다.

- 3) 審議會(省略)

4)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는 獨占禁止法의 一般的 規制를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 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그 例外的 取扱은 지금까지도 必要最小限으로 한정하도록 운용되어 왔다.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制度에 관하여는 필요최소한도의 것으로 운용하고, 競爭政策의 추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그 필요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同制度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輸入去來 및 投資를 阻害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발로 하는 適用除外制度의 適用對象範圍에 관한 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재 獨占禁止法에 의거한 不況카르텔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없다. 公正去來委員會는 輸入阻害에 이용되는 不況카르텔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民間企業의 調達慣行

1) 日本政府는 民間企業의 調達活動이 市場에서의 자유로운 競爭下에서의 調達者의 判斷과 納入者의 노력에 맡겨져야 하며, 獨占禁止法에 반하는 企業行動에 의하여 市場

競爭이 阻害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2) 더우기 日本企業의 調達活動이 內外無差別的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3) 이상의 관점에서 日本政府는 4월 24일에 經團連이 발표한 “購買去來行動指針”을 産業界에서의 자주적인 對處方案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위의 指針을 지지한다. 또한 日本政府는 企業의 調達活動에 관하여 國際的 觀點에 입각하여 그 節次가 가급적 透明하고 內外無差別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 報告의 公表後 3년간 매년 1회 이들 節次的 統計的 調査를 행한다.

系列關係

I. 基本認識

系列關係의 존재는 일정한 經濟合理性을 갖는다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그룹內去來를 선호하게 하고 對日直接投資를 阻害하며 反競爭의 去來慣行을 초래하는 측면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政府로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系列關係가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며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系列關係를 배경으로 하는 事業者間의 去來가 公正한 競爭을 阻害하고 그 결과로서 日本에 輸出, 市場開拓 또는 投資하고자 하는 外國企業에 대하여 排他的 效果를 주지 아니하도록 競爭政策上의 대응을 도모하면서, 獨禁法의 運用을 엄정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外國企業에 의한 日本市場에의 參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諸般施策을 실시한다.

II. 對應策

1. 公正去來委員會의 檢討 등

1) 株式의 相互保有關係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系列關係에 있는 事業者間 去來에 있어서 公正한 競爭을 阻害하는 去來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監視를 강화한다. 監視의 결과, 株式의 相互保有에 따라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違法狀態의 解消를 위하여 株式相互保有의 制限이나 株式의 讓渡 등 적절한 措置를 강구한다. 그 밖에 反競爭的 慣行의 存在가 명백한 경우, 反競爭的 慣行을 抑止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監視의 결과 및 강구한 措置를 年次報告에 掲載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事業者間去來의 繼續성과 排他性에 관하여 금년 6월 21일 學者 및 實務者로 구성된 “流通去來慣行 등과 競爭政策에 관한 檢討委員會”의 提言을 받았

다. 주된 提言事項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事業者間去來의 繼續性에 관하여는, 그것이 형성되어 온 그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新規參入의 장벽이 되는 등 競爭沮害에 결부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是正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繼續的 去來·株式保有關係에 있는 事業者間去來와 排他性에 관하여 獨占禁止法 違反行爲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의 行爲類型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競爭者間의 去來處制限카르텔이나 市場分割카르텔
- ②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私的獨占 또는 부당한 去來制限이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不公正한 去來方法이 되는 競爭者나 去來處의 공동보이코트
- ③ 不公正한 去來方法이 되는 單獨的 去來拒絶, 排他條件附去來, 去來強制·互惠의 相互去來行爲 및 繼續的인 去來關係를 배경으로 하는 기타의 競爭沮害行爲
- ④ ①~②의 行爲의 實效性確保手段으로서 株式의 保有가 이용되거나 株式保有의 有無를 이유로 하여 去來拒絶 등을 행하면, 不公正한 去來方法의 관점에서 規制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 또한 排除措置로서 株式의 處分을 명하지 아니하면 不公正한 去來方法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命할 수 있을 것

(2) 개개의 事業者 특히 大企業은 法務部門을 충실히 하고, 獨占禁止法違反行爲 기타 排他的 慣行을 예방하기 위하여 遵守規則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企業集團에서의 社長團의 會合에 관하여는 그 활동내용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透明度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러한 提言에 입각하여 系列그룹에 속하는 事業者間의 去來慣行이 공정한 경쟁을 沮害하는 일이 없고, 또 内外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한층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도록, 事業者間 去來慣行의 繼續성과 排他性에 관하여 獨占禁止法의 運用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1990년도 말까지 작성·공표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작성에 있어서는 事前에 國內外的 關係機關 등 또는 排他的 慣行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의 완성전에 公正去來委員會에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原案을 開示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獨占禁止法의 運用을 엄정하게 수행한다.

2) 公正去來委員會는 供給者·顧客間去來, 그룹企業間融資 및 人的結合 등에 관계되는 系列그룹에 관한 조사를 약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調査에 있어서는 綜合商事가 달성하는 역할에 특히 중점을 둔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조사에 의하여 명백해진 反競爭의 慣行 또는 排他的 慣行에 대하여 獨占禁止法의 보다 엄격한 適用 등의 措置를 강구한다. 또한 個別業種의 事業者間去來에 관하여 去來關係에 있는 事業者間의 株式相互保有가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實態調査를 실시한다.

3) 內閣官房長官은 系列關係가 公正한 競爭 및 去來의 透明性을 沮害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外國企業에 의한 日本市場에의 參與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諸般施策을 실시함과 동시에 系列企業에도 協력을 요청하는 취지의 談話를 발표한다.

4. 開示制度의 改善

1) 株券 등의 大量保有狀況에 관한 開示制度, 이른바 5%룰에 관하여는 그 도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TOB制度의 개선과 아울러 證券去來法 改正案을 國會에 제출 同改正法案은 6월 15일에 可決·成立하였다. 同룰에 따라서 5%를 초과하는 株券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및 일단 보고한 者가 그 후 1% 이상의 株券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각각 報告義務를 부담한다.

2) 系列問題에 관계된 開示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改善事項을 수행한다.

- (1) 關聯當事者間의 去來에 관하여 情報의 開示範圍를 美國財務會計基準書와 동일한 基準에 의하도록 하고, 現行의 母會社나 任員 등과의 去來에 추가하여 關聯會社, 主要株主(10% 이상 株主) 기타 중요한 關聯當事者와의 去來로 擴充한다. 당해 情報에는 당해 企業과의 관계내용, 거래의 종류 및 금액이 포함된다.
 - (2) 證券去來法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連結財務諸表를 現行의 有價證券報告書 등의 첨부서류로서 이것을 本體로 추가시킨다.
 - (3) 단편정보로서, 금년 4월 1일 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事業別 賣出額 및 營業損益, 國內·國外別 賣出額의 開示를 행한다.
 - (4) 個別財務報告에 있어서, 去來明細로서 現行의 信用賣出金, 信用買入金 등에 추가하여 總收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主要顧客別 賣出額을 開示한다.
- 上記(1), (2) 및 (4)의 措置에 관하여는 1991년 4월 1일 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開示措置에 따라 企業間去來 등의 透明性이 더욱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5. 會社法の 再檢討

商法에 의한 開示制度 및 株主의 權利擴充 그리고 合併의 彈力化 등에 관하여 금후의 法制審議會에서 검토한다.

價格메커니즘

I. 基本認識

日本政府로서는 큰 폭의 불합리한 内外價格差가 長期에 걸쳐 존재하는 것은 풍요한 국민생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内外價格是正을 위한 施策을 推進하고 있다.

II. 對應策

4. 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에 의거한 措置

이상의 措置에 추가하여 日本政府는 本美·日構造問題協議最終報告에서 지적된 構造問題에 관하여 구체적 조치를 강구한다. 이들 措置중 몇개는 아래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들 措置의 실시에 따라 日本市場에서 價格機能이 더욱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措置는 1989년 12월 및 1990년 1월에 政府·與黨内外價格差對策推進本部에서 결정된 정책의 6개 주요항목 및 52개 소항목과 함께 실시된 것이다.

- 1) 大規模小賣店鋪調整法, 酒類의 販賣, 트럭運送 등의 流通에 관한 規制緩和(省略)
- 2) 獨占禁止法 및 그 運用의 강화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市場競爭의 촉진
 - (1) 違反行爲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카르텔에 관계된 課徵金이 獨占禁止法 違反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도록 그 引上에 관하여 獨占禁止法 改正法案을 次期 定期國會에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2)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에 관하여 刑事處罰을 요구하는 告發을 함으로써 금후 刑事罰의 활용을 도모한다.
 - (3) 現行 損害賠償請求制度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4) 公正去來委員會는 輸入沮害에 이용되는 不況카르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省略)
- 4) (省略)

美·日構造問題協議 第1回 年次報告*중 競爭政策關聯部分

流 通

日本の流通에 관하여 效率化 提高, 市場參入의 確保, 物理的 基盤의 整備 등을 추진함으로써 國民消費生活의 充實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SII最終報告에 포함된 措置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進展이 있었다.

4. 商慣行의 改善

1)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運用의 透明性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輸入總代理店制를 포함한 日本의 流通·去來慣行에 관한 獨占禁止法上의 運用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미 그 原案을 國內外의 關係機關에 開示하고 코멘트를 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日本의 流通·去來慣行에 관한 獨占禁止法上의 사고방식을 명백히 하고 内外의 事業者, 事業者團體, 消費者 등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獨占禁止法違反行爲의 抑止와 적절한 事業活動의 전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公正去來委員會에서는 多數가 보내온 코멘트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가이드라인의 成案을 작성·공표하고, 공표한 후에는 그의 周知·徹底를 도모할 예정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獨占禁止法을 엄정하게 運用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日本市場에서의 公正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로써 一般消費者의 이익을 확보하며, 日本市場을 국제적으로 보다 개방화 시킨다는 日本競爭政策의 基本的 思考方式에 의거하여 策定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 및 公正去來委員會의 運用이 外國企業 또는 外國商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排他的 去來慣行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유지·촉진하는 것은 事業의 效率性을 提高함과 동시에 消費者의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外國企業을 포함하여 新規參入機會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극히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政府로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다음의 4개 분야에서 諸般措置를 추진하고 있다. 最終報告의 公表 이후 다음에 기술하는 進展이 도모되어

* 이 報告書는 1991年 5月 22日 日本政府가 공표한 것이다.

은 바,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日本市場에서의 보다 더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1. 獨占禁止法 및 그 運用의 強化

1) 公式決定의 積極적인 活用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法的措置에 의거하여 그 排除를 積極的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0년도에는 22件的 勸告를 행하였다. 또한 11件에 관하여 총 175명에 대하여 총액 125억 6,214만圓의 課徵金納付命令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가 1989년도의 수치(勸告件數 7件, 課徵金納付命令: 事件數 6件, 事業者數 54名, 總額 8억 349만圓)를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課徵金納付命令은 事件數나 課徵金 總額에 있어서도 과거 최고수준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금후에도 公式決定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透明性 向上의 確保

行政의 透明性을 확보하고 抑止效果를 더욱 提高하여 동일한 違反行爲의 未然防止를 도모하기 위하여 勸告나 課徵金納付命令 등의 法的 措置에 관하여는 모두 違反한 者の 姓名·名稱·違反行態 및 違反에 관계된 狀況을 포함한 그 措置의 內容을 公표하고 있다.

한편 警告에 관하여도 1990년 10월 이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公표하고 있으며, 同月 이래 1991년 3월까지 행한 警告 17件 가운데 16件에 대하여 對象이 된 者の 姓名 名稱 및 警告의 內容을 公表하였다.

3) 外國事業者의 相談·苦情窓口를 설치하고, 專任擔當者(外國事業者相談苦情處理擔當官)을 두었다. 公正去來委員會에서는 外國事業者의 獨占禁止法에 관한 相談 苦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바, 1990년도에는 11件的 문제가 있었다.

4) 公正去來委員會의 豫算·定員

1990년도, 1991년도의 2년간에 審査部門의 強化를 중심으로 公正去來委員會의 豫算 및 定員을 정비·확충하였다. 특히 審査部門에 있어서는 두해에 걸쳐 本局과 地方事務所를 합하여 職員數가 129명에서 165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약 30% 증가), 機構도 5個 組織이 增設되었다. 계속적으로 審査部門의 強化를 중심으로 組織의 扎实的 정비 充實에 노력한다.

5) 課徵金

課徵金의 引上에 관하여는 1990년 12월 21일 內閣官房長官의 私的 懇談會인 “課徵金에 관한 獨占禁止法改正問題懇談會”에서 現行 課徵金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상하여야 한다는 檢討結果가 나왔으며 이는 報告書로 작성되었다.

政府는 이 報告書에 입각하여, 카르텔에 대한 抑止效果를 강화하기 위하여 課徵金算定率을 원칙적으로 4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獨占禁止法 改正法案을 금년 定期

國會에 제출하였다. 改正法은 1991년 4월 19일에 성립하여 同月 26일에 公布되었다. 同改正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 刑事罰의 活用·強化

“① 일정한 去來分野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價格카르텔, 供給量制限카르텔, 市場分割協定, 入札談合, 共同보이코트 기타 違反行爲로서 國民生活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事案 및 ② 違反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事業者·業界, 排除措置에 따르지 않는 事業者 등에 관계된 違反行爲 중 公正去來委員會가 행하는 行政處分에 의하여서는 獨占禁止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事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刑事處罰을 구하는 告發을 행하기로 하고 1990년 6월에 이 방침을 공표하였다.

한편 法務省도 同年 同月 개최된 檢察長官會同에서 檢察長官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獨占禁止法 違反事犯의 告發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法務省 및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事件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獨占禁止法違反에 관계된 刑事罰의 活用에 관한 連絡協議會”를 설치하였다. 同協議會는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대한 刑事告發節次를 둘러싼 諸般問題에 관하여 協議·檢討하고 同年 12월에 이를 종료하였다. 同協議會는 獨占禁止法 違反事件을 刑事告發함에 있어서 원활성·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개별사건에 관계된 구체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機構이다. 또한 法務省은 1990년 12월 公正去來委員會와 檢察當局이 搜查 등의 과정에서 얻은 獨占禁止法 違反에 관한 情報를 同法の 規定에 의거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通報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령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종래의 情報收集活動에 추가하여 위의 要領에 의거하여 通報된 違反關聯情報 및 告發問題 協議會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엄격하고 기동력있는 告發權限의 행사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대한 抑止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獨占禁止法의 刑事罰 強化에 관하여 금년 1월 이래 關係專門家로 구성된 “獨占禁止法에 관한 刑事罰研究會”를 개최하고, 法務省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근본적 검토를 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에 同研究會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中間報告로서 공표하였다. 日本에서는 일반적으로 事業者에 대한 罰金刑과 從業員 등에 대한 罰金刑의 각각의 上限을 동일하게 하는 規定形式을 취하고 있고 獨占禁止法에서도 동일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中間報告에 따르면 전형적인 企業犯罪인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대한 抑止效果를 높이기 위하여는 이들 각 上限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과 事業者에 대한 罰金刑을 충분한 抑止力을 갖는 수준까지 引上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同研究會는 금후 中間報告에 입각하여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행하고 금년 가을을 목표로 結論을 도출할 예정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同研究會의 結論이 내려진 후 關聯機關과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검

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7) 損害賠償請求訴訟制度

(1) 公正去來委員會는 確定審決이 결정된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관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이 제기된 경우에는 違反行爲로 인한 損害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填補함으로써 違反行爲의 抑止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確定審決이 결정된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관하여 損害賠償請求訴訟制度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諸措置를 취하고 있다.

① 違反行爲에 관한 資料의 提供 및 保存方針의 公表

公正去來委員會는 違反行爲로 인한 被害者가 獨占禁止法 第25條 또는 民法 第709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용이하게 提起할 수 있도록 審決書에서 違反事實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獨占禁止法 第25條 또는 民法 第709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의 立證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確定審決이 결정된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관한 資料의 提供 및 保存에 관하여 금년 5월 15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공포하였다.

- A. 訴訟提起前에 있어서는 違反行爲로 인한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인 辯護士 등의 요청에 따라 審決書 또는 課徵金納付命令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제공한다. 또한 確定審決이 同意審決 또는 審判審決인 경우에는 獨占禁止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으면 事件記錄의 閱覽 또는 謄寫에 응한다.
- B. 訴訟提起後에는 法院의 요구에 따라 確定審決이 존재하는 獨占禁止法 違反行爲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그 審査過程에서 취득한 자료 중 違反行爲의 存在 또는 損害額이나 因果關係의 立證에 관련되는 것은 가능한 한 제공한다.
- C. 審判節次中인 사건에 관하여는 獨占禁止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으면 事件記錄의 閱覽 또는 謄寫에 응한다.
- D. 公正去來委員會는 違反行爲의 存在 또는 損害額이나 因果關係의 立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審決確定後 3년간 보존한다.

한편 警告에 관하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公表하고 있으나, 公表한 사건에 관하여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인 辯護士 등의 요청에 따라 警告書의 寫本을 제공한다.

② 法院으로부터의 損害額에 관한 意見要求에 대한 對應의 充實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 第84條에 의거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意見에서 違反行爲와 損害와의 關聯性 내지 因果關係, 損害額 및 그 算定方法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이래 關係專門家로 구성된 “損害額算定方法에 관한 研究會”를 개최하고 檢討를 행하여 왔으며 금년 5월 15일 이 研究會가 報告書를 작성·공표하였다.

이 報告書에는 다음 事項이 제시되어 있다.

- A. 違反行爲와 損害와의 關聯性 내지 因果關係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방법 및 금후

損害賠償請求訴訟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價格引上카르텔, 入札談合, 보이코트,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있어서 違反行爲와 損害와의 關聯性 내지 因果關係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B. 損害額의 산정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방법 및 ①에 기재된 行爲類型에 있어서의 損害額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方式

公正去來委員會는 금후 法院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서는 위의 報告書를 참고로 하여 違反行爲와 損害와의 關聯性 내지 因果關係, 損害額 및 그 算定方法에 관한 고찰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그 根據가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損害賠償請求訴訟制度의 弘報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制度에 대한 企業 및 消費者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는 制度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왔다. 전술한 ① 및 ②의 방침에 관하여도 금년 5월 15일에 신문지상에 발표하였으며 금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2) 法務省 및 公正去來委員會는 提訴手數料와 관련하여 獨占禁止法의 違反行爲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提起의 實態 및 그 實態와 提訴手數料의 關係,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서 특별한 法的 費用을 지급하는 것의 합리성 등에 관하여 총 13회의 會合을 열어 검토를 행하였으나, 獨占禁止法 第25條에 의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의 提訴手數料만을 면제·경감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法務省은 訴訟目的의 價額이 高額에 달하는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訴訟手數料의 額이 現行대로가 좋은지의 여부 및 당해 手數料가 경감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美國側의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日本의 民事訴訟 전반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法務省은 이 문제에 관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개시하였던 바, 가능한 한 조속히 당해 연구를 완료하고 그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8) 談合에 대한 效果的 抑止

(1) 日本政府는 政府出資의 研究用役事業에서 談合을 排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發注機關은 談合行爲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談合行爲에 관한 關聯情報을 公正去來委員會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中央公共事業契約制度運用連絡協議會 등에서는 發注機關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를 周知·徹底토록 한 바 있다.

(2) 法務省은 刑法의 罰金刑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談合罪의 罰金刑 上限에 관하여도 引上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그와 같은 취지에 따른 法改正에 노력하기로 하였던 바, 同罪에 대하여는 그 罰金上限을 現行 100만圓에서 250만圓(刑法의 罪 가운데 최고의 罰金刑 上限이다)으로 인상하기로 刑法改正案을 완성하고 1990년 9월 이를 法務大臣의 諮問機關인 法制審議會의 諮問을 요청하였는데, 同年 12월 同審議會

로부터 적당하다는 취지의 答信을 얻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금년 定期國會에 同法改正案을 제출하여 1991년 4월 11일 可決·成立하였다. 同改正法은 同年 5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2. 政府慣行

4) 獨占禁止法の 適用除外制度

獨占禁止法適用除外制度는 관하여는 獨占禁止法の 일반적 規制를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하에서 除外하는 것으로서 그 예외적 취급은 지금까지도 필요최소한도로 한정하도록 운용되어 왔다. 獨占禁止法適用除外制度에 관하여는 필요최소한도의 것으로 하고 競爭政策의 추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그 필요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輸入去來 및 投資를 阻害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발로 하여 適用除外制度의 適用對象範圍에 관한 개선을 진행한다.

公正去來委員會에서는 오늘날의 經濟·社會情勢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獨占禁止法適用除外制度 전반에 관하여 制度의 필요성, 타당성, 개선할 방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고 금년 가을을 목표로 그 검토결과를 公表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獨占禁止法에 의거한 不況카르텔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

系列關係

日本政府는 系列關係의 존재가 일정한 經濟合理性을 갖는다는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系列關係가 反競爭的 去來慣行을 발생시키고 對日直接投資를 阻害하며 그룹내去來를 선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系列關係를 보다 開放的이고 투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한다는 의도를 재확인한다. 日本政府는 系列關係를 배경으로 하는 事業者間의 去來가 공정한 競爭 및 去來의 투명성을 阻害하는 일이 없고 또 가까운 장래에 外國企業에 의한 日本市場에의 參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諸般施策을 실시한다.

1. 公正去來委員會에서의 檢討 등

1) 公正去來委員會는 株式의 相互保有關係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系列關係에 있는 事業者間去來에서 공정한 競爭을 저해하는 去來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監視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의 결과 이들 去來가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株式相互保有의 制限을 포함하여 違反狀態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채택한 法的 措置를 公表함과 동시에 그 監視의 結果 및 法的 措置의 概要를 年次報告

에 掲載한다.

2)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占禁止法適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日本의 流通去來慣行에 관한 獨占禁止法上的 運用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하고, 이미 그 原案을 國內外의 關係機關에 開示하여 코멘트를 요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日本의 流通去來慣行에 관한 獨占禁止法上的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內외의 事業者, 事業者團體, 消費者 등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獨占禁止法違反行爲의 抑止와 적절한 사업활동의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公正去來委員會에서는 다수의 코멘트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가이드라인의 成案을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공표한 후에는 그 周知·徹底를 도모하도록 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株式의 相互保有關係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系列機關에 있는 事業者間去來에서 공정한 경쟁을 阻害하는 행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違反行爲에 대하여는 獨占禁止法の 엄정한 운용을 수행한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日本市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되도록 하고 이로써 一般消費者의 이익을 확보하며, 日本市場을 국제적으로 보다 개방되도록 한다는 日本競爭政策의 기본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策定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 및 公正去來委員會의 運用이 外國企業 또는 外國商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3) 公正去來委員會는 1990년에 6大企業集團을 대상으로 한 實態調査 및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繼續的去來 등의 實態調査에 착수하였다. 6大企業集團調査는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4개 업종의 조사에 대하여는 곧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個別業種을 대상으로 한 實態調査에 관하여는 금후에도 새로운 業種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번 조사를 1991년도 말까지 開始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번 調査의 調査對象業種의 선정에 있어서 外國政府에 의해 표명된 外國貿易이나 投資에 관련된 업종 중 몇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4) 內閣官房長官은 最終報告에 따라 1990년 8월 3일에 “系列關係에 관한 內閣官房長官談話”를 발표하고 各企業에 이해와 협력을 호소하였다. 日本에서는 內閣官房長官에 의한 談話의 발표는 國民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지의 표명을 의미한다.

研究報告 92-4

日本の 流通環境과 法制分析

1992年 9月 20日 印刷

1992年 9月 25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産業(株)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400원

